

정책자료 2008-11-3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장조사자료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기초보장·자활정책평가센터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현황조사자료

정책자료 2008-11-3

발행일 2008년 12월
저자 이태진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록 제8-142호(94.7.1)
주소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전화 02-380-8000(대표)
팩스 02-352-9129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가격 7,000원
인쇄처 대명기획(02-2263-129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ISBN 978-89-8187-568-8 93330

편저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평가센터장

김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목 차

I. 조사개요	1
1. 기초보장평가센터 소개	1
2. 조사의 목적 및 활용도	1
3. 조사 방법	3
4. 조사대상자 특성	4
5. 조사문항	7
II. 조사결과	1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01	1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02	69
사회복지전담공무원 03	9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04	118
사회복지전담공무원 05	15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06	183

1. 기초보장평가센터 소개

☐ 설립목적

- 기초보장·자활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전 국민에 대한 기초보장과 함께 자활정책의 역동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 12월 설립

☐ 사업내용

- 기초보장 및 자활사업의 효율적 제도운영과 예산운용을 위한 모니터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정책에 관한 심층 연구 및 빈곤통계 연보 발간
- 빈곤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 및 대안 모색을 위한 포럼 운영
-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 및 관련정책에 대한 심층 연구 진행

2. 조사의 목적 및 활용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활보장과 자활기반조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평가 작업이 필요함.

- ☐ 이에 기초보장평가센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 위치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최저생활보장과 자활기반조성에 대한 목적 달성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2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장조사자료

문제점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작업을 수행해오고 있음.

- ☐ 2008년도에는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기반조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주제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수급가구와 공급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를 대상으로 한 질적조사를 실시하였음.
- ☐ 질적조사 결과는 녹취록의 형태로 정리하여 동 연구 수행의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리된 녹취록 원 자료를 별도로 엮어서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게 되었음.
 - 정책자료는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수도권·광역시',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중소도시·농어촌',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장조사자료'로 구성됨.
 - 본 정책자료는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현장조사자료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음.
- ☐ 본 정책자료는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통상적인 평가들에는 담겨지기 어려운 제도시행 현장의 상황을 다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의 의의를 가지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니터링 및 평가의 질적인 지평과 깊이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본 자료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와 그 개선방안을 위한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
 - 제도의 일선 담당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수급자에

대한 태도, 업무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제도 시행주체의 인식 및 태도가 제도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3. 조사방법

- 본 조사는 연구자가 반구조화 된 개방형 질문으로 연구참여자와 2시간 정도의 심층 면담을 통해 진행함.
 - 면담은 연구진 2명 이상이 방문면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연구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연구참여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함.
 - 연구참여자의 표현을 생생하게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해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기, 연구메모 등을 사용하였으며, 후에 녹음된 내용을 필사하여 사용함.
 - 면담 방법은 연구참여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도록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연구자는 면접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질문을 함. 이 과정에서 본 연구 주제와 부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질문함.
- 면담 장소는 수급자의 경우 주로 조사 대상자의 집에서, 공급자의 경우 업무 공간인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내 상담실에서 이루어짐.
 - 수급자의 경우 이러한 면접 장소는 조사 대상자들의 생활공간을 직접 볼 수 있어 이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공급자의 경우에는 업무환경, 조직분위기를 볼 수 있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행정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였음.
- 면담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하였고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하였으며, 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면담하거나 전화할 경우가 있음을 알려줌.

4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장조사자료

□ 면접은 1차 조사의 경우 2008년 8~9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추가조사는 9~10월 까지 실시하였음.

4. 조사대상자 특성

□ 조사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나누어 수급자 18가구 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개 사례를 대상으로 함.

- － 수급자는 수도권 6가구, 광역시 6가구, 중소도시 5가구, 농어촌 1가구로 구성 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도권 2개, 광역시 2개, 중소도시 2개, 농어 촌 1개로 구성함.

〈표 1〉 수급자 조사 대상 가구의 지역별, 가구 특성별 배분

구분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계 조사
	서울 노원	인천 부평	대전 동구	부산 북구	전북 전주	경북 안동	전남 영광	강원 횡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 ¹⁾	1	1	1	1	1	0	1	7
①조건부수급			한부모1			단독1	일반1		3
②현재취업창업	한부모1	한부모1		한부모1					3
③가구여건곤란	한부모1				한부모1				2
④환경적응필요			단독1						1
⑤조건제시유예		단독1			한부모1				2
⑥자활특례	한부모1			단독1					2
⑦치료요양필요			한부모1						1
⑧65세이상	단독1			단독1	조손1	조손1			4
계	4	2	3	3	3	2	1		18
비고	장애2 노인1 근로1	장애1 근로2	장애1 근로1	노인1 근로2	노인1 장애2	장애1 노인1 근로1	장애1 근로1		

주: 1) 녹음기기의 문제로 인해 녹취록으로 기록하지 못했음.

가. 수급자 특성

- 조사대상 수급자의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일반가구 1가구, 한부모가구 9가구, 조손가구 2가구, 단독가구 6가구의 분포를 보임.
- 수도권·광역시 가구유형은 한부모가구 7가구, 단독가구 5가구로 구성되며, 중소도시·농어촌 가구유형은 일반가구 1가구, 한부모가구 2가구, 조손가구 2가구, 단독가구 1가구로 구성됨.
- 가구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장애인가구가 8가구, 노인가구가 4가구로 나타났으며, 응답가구 중 근로가구는 응답자 18가구 중 8가구임.
- 수도권·광역시는 장애인가구가 4가구, 노인가구가 2가구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12가구 중 근로가구는 6가구임. 중소도시·농어촌 가구원 특성은 장애인가구가 4가구, 노인가구가 2가구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6가구 중 근로가구는 2가구임.

〈표 2〉 수급자 조사 대상 가구의 특성

사례	연령	지역	가구유형 (가구원수)	가구원특성	수급유형
01	50대	수도권	한부모가구(3)	편모, 아들1 딸1/ 자활근로	자활특례
02	50대		한부모가구(2)	편모/아들1/ 복지관에서 근로	조건부과제외 (현재취업창업)
03	70대		단독가구(1)	노인단독가구/장애2급	일반수급 (65세이상)
04	50대		한부모가구(4)	편모/아들3/ 아들이 신장장애인	조건부과제외 (가구여건곤란)
05	40대		한부모가구(2)	편부/ 간헐적 근로활동	조건부과제외 (현재취업창업)
06	50대		단독가구(1)	시각장애 6급	조건제시유예

〈표 2〉 수급자 조사 대상 가구의 특성(계속)

사례	연령	지역	가구유형 (가구원수)	가구원특성	수급유형
07	30대	광역시	한부모가구(3)	편모/자활사업	조건부수급
08	40대		단독가구(1) * 실제와 다름	근로안함/장애4급 인근 아파트에 이혼한 부인과 자녀2	조건부과제외 (환경적응필요)
09	30대		한부모가구(3)	편모/근로안함	조건부과제외 (치료요양필요)
10	20대		한부모가구(2)	편모가구/복지관에서 근로	조건부과제외 (현재취업창업)
11	60대		단독가구(1)	단독가구/자활사업 참여	자활특례
12	60대		단독가구(1)	노인단독가구	일반수급 (65세 이상)
13	60대	중소도시	조손가구(3)	부인과 손자1	일반수급 (65세 이상)
14	50대		단독가구(1)	장애6급/자활사업참여	조건부수급
15	50대		한부모가구(2)	편부/ 근로 안함/ 호흡기장애 2급	조건제시유예
16	40대		한부모가구(2)	편부/ 근로 안함/ 지체장애 1급	조건부과제외 (가구여건곤란)
17	70대		조손가구(4)	노인과 손자3	일반수급
18	40대	농어촌	일반가구(4)	장애 6급 본인과 아들2/자활사업	조건부수급

주: 연령은 응답자의 연령대를 의미한다.

나. 공급자 특성

- ☐ 총 7개의 사례 중 수도권 2개, 광역시 2개, 중소도시 2개, 농어촌 1개의 지역 분포를 나타내며, 수도권의 경우 면접 중간에 연구 참여자가 교체되어 1개 지역에서 2명이 참여함.
- ☐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공급자 3명, 여성 공급자 4명이었으며, 모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음.

〈표 3〉 조사 대상 공급자의 특성

사례	연령	성별	지역	근속기간	자격증 여부
01	-	남	수도권(서울)	-	사회복지직
02	30대	남	수도권(인천)	2년 2개월	
	30대	여		3년 10개월	
03	30대	여	광역시	약 12년	
04	40대	남	광역시	약 19년	
05	30대	여	중소도시	-	
06	40대	남	중소도시	약 16년	
07	30대	여	농어촌	약 4년	

5. 조사문항

가. 수급자 조사문항

- ☐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내용은 ‘기초보장수급자들의 근로의욕 및 실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자립과 자활 내용’ 수립에 관한 것임.

8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장조사자료

- 따라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 내용은 제도의 모니터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이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룸. 제도의 모니터링 대상인 수급자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급여 신청 사유

- 가구 유형별로 상이한 원인 파악

2) 일상생활의 모습들

- 단순 생계유지에 급급한지, 수급 탈피의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한 달에 쓰는 생활비의 구체적인 내역, 예기치 않은 지출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방식, 궁핍의 결과

3) 일

- 직업력, 일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 하고 싶은 일, 현재 하는 일 등

4)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에 대한 생각

- 수급을 탈피하고자 하는지, 수급의 효과 등

5)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행에 대한 수급자의 평가

-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보를 얻는 주요 원천, 제도에서 가장 좋은 부분과 가장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의견

〈표 4〉 수급자용 쟁점 및 질문 내용

구 분	질 문 내 용
일반현황	- 가족상황(가구원 수, 가구원 특성) - 원가족 배경 및 관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초 수급 내용 및 접근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이력
근로능력판정	- 근로능력 판정과정에 대한 이해 - 수급자 근로 이력 및 근로 의욕
조건부과제외 판정	- 조건부과제외 판정 과정에 대한 수급자의 평가 - 현재취업창업자: 근로 및 소득은닉 여부와 사유 - 조건제시유예자: 진단서 부정 발급 - 환경적응필요자: 진단서 부정 발급
자활사업 참여 vs 불참	- 자활사업 불참 사유 - 자활사업 한계 및 개선방안 - 조건부과제외자의 비공식 근로 - 자활사업 배치과정 및 현재 근로 실태 - 자활사업 사후관리 실태 -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 - 일반노동시장과 자활사업 비교
조건부 수급자 근로의욕	- 근로 및 수급탈피 의욕과 원인 - 통합급여체계에서의 근로 의욕 - 취업활동 및 취업환경 - 인적자본개발 활동 및 미래계획
조건불이행/ 부정수급 제재	- 부정수급 인식 및 갈등발생 여부 - 조건 불이행 판정 여부
추정소득 부과	- 추정소득부과 회피를 위한 소득 은닉 여부 - 추정소득부과 회피를 위한 진단서 부정 발급 - 추정소득 부과 경험 및 개선방안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조사문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주요 조사내용은 주로 ‘근로능력판정 및 자활사업배치, 사후관리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와 관련됨.

10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장조사자료

- 따라서 질문의 내용은 제도 실행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근로능력판정관련 업무수행 과정 및 평가

- 근로능력 유무 판정관련 업무
-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지침 상 기준의 한계
- 수급자와의 갈등
- 진단서로 인한 근로능력 판정 기준의 객관화 방안
- 근로능력 판정 체계에 관한 개선사항

2) 조건부과제외 판정관련 업무수행 과정 및 평가

- 조건부과제외 판정관련 업무
- 선정방식에 있어서의 상담과정 대체에 관한 논의
- 진단서 등 제출서류의 신뢰성
- 조건부과제외자 사후관리

3) 조건부 수급자 자활프로그램 선정과정 및 사후관리

- 자활프로그램 선정 기준의 적절성
- 자활프로그램 배치 시 수급자 욕구 고려
- 자활프로그램 참여자 사후관리
- 조건불이행, 부정수급 제재
- 자활 초기 목표에 대한 성과 및 한계

4) 추정소득 부과

- 추정소득 부과 기준 및 사례
- 수급자 신고 소득 및 제출한 진단서의 신뢰성
- 추정소득 부과 시 소명기회 제공 여부 및 갈등 사례

〈표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용 쟁점 및 질문내용

구 분	질 문 내 용
일반 현황	- 지역특성(수급가구 수, 수급자 구성, 정서적 특성) - 공무원 주요 업무 및 기초보장제도관련 업무 - 관내 조건부 수급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수
근로능력판정	- 근로능력 판정과정 및 시기에 대한 수급자 안내 -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판정절차 및 업무내용 - 판정결과 고지 및 수급자와의 갈등사례 - 진단서로 인한 근로능력 판정 기준의 객관화 방안 - 근로능력 판정 지침의 한계 및 개선방안
조건부과제외 판정	- 조건부과제외 판정과정 및 제출서류의 신뢰성 - 선정방식에 있어서의 상담 대체에 관한 논의 - 조건부과제외자 비공식 근로실태 및 조사관리방법 - 조건부과제외자의 탈수급 의지 - 조건부과제외자의 근로활동 지원 방법 - 조건부과제외자 사후관리
자활프로그램 선정 및 사후관리	- 자활프로그램 선정 기준 및 적절성 - 자활프로그램 배치 시 수급자 욕구 고려 여부 - 자활프로그램 참여자 관리 - 조건불이행 및 부정수급 제재 - 부정 근로 수급자의 소득부과 비율 논의 - 자활 초기 목표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 정도 - 현 자활프로그램 내용의 한계 - 자활관련 기관 및 담당자 네트워크 실태
추정소득 부과	- 추정소득 부과 기준 및 사례 - 추정소득 부과 시 소명기회 제공 여부 및 갈등

Ⅱ 조사결과

□ 본 자료집(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장조사자료)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고 있음.

사례	연령	성별	지역	근속기간	자격증 여부
01	-	남	수도권(서울)	-	사회복지직
02	30대	남	수도권(인천)	2년 2개월	
	30대	여		3년 10개월	
03	30대	여	광역시	약 12년	
04	40대	남	광역시	약 19년	
05	30대	여	중소도시	-	
06	40대	남	중소도시	약 16년	
07	30대	여	농어촌	약 4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

- 조사지역 : 수도권
- 응답자 개인사항

성별	연령	학력	근속기간	자격증 여부
여			3년 10개월	사회복지직
남			2년 2개월	사회복지직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 여	: 조사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였으며 다른 직원들이 기초보장 관련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풍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장시간(1시간 40분 정도 진행)가량 진행된 조사에 침착하게 잘 응대해 주었음. 전반적인 면접상황을 고려해 보면 본 공무원의 답변은 신뢰할 만함.
- 남	: 첫 발령지이자 현 근무지인 이곳, 임대아파트 지역인지라 공무원은 면접 시 본인의 정해진 틀(기초보장제도 관련 지침, 규정 등)에 관하여 설명 후 본인의 의견을 첨언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음. 본인이 규정 및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노력들이 인터뷰 내용 중 엿볼 수 있었음.
- 두 명의 응답자 모두	진단서를 통한 근로능력 판정 방식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진단서 제출자의 대부분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판단된다 하였음. 근로능력판정 시 진단서 제출 외 다른 대책이 강구되길 바라고 있음.

Q: 몇 분이 여기 계신 거죠?

A: 팀장님까지 5분이요.

Q: 다섯 분이, 그러면 팀장님도 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신가요?

A: 그렇죠.. 여기는 네....

Q: 그렇죠,여기는 특수하니까. .

A: 6급이잖아요. 팀장님이. 6급 팀장님이 사회복지직이 더 많지 않은데 여기는 영구임대단지고 하니까 좀 특정케이스고. 팀장님도 사회복지직이 계시는 거고, 한분이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신 상태고, 그래서 정원보다는 지금 조금 적게 일하는 거예요. 원래 여기가 제가 여기 한달 정도 밖에 안 되가지고, 온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여기가 원래 6명인가 그렇거든요, 정원은. 근데 한명이 지금 빈 거죠.

Q: 아, 그래서 한분 들어가지고 나서 육아휴직 관련해서 대체하거나 그런거는 전혀 없죠?

A: 행정직 쪽은 그래도. 발급 이런 거는 조금만 (교육)되면은 할 수 있으니까 대체 인력이 채워지는데, 사회복지 쪽은 솔직히 육아휴직 들어가면 대체인력이 들어오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 이예요.

Q: 그럼 기존에 나눠서 하시던 동의 일들을 조금씩 나눠서 그냥 하시는 거네요.

A: 네

Q: 저희가 엇그제 듣기로는 병가 내셨다고 들었는데.

A: 네, 병가 내셨어요. 길게는 아니고 이번 달까지만 병가를 내시긴 했는데, 그런거 있을 때도 나눠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한분은 워크숍 가고 이래 버리면..

Q: 그러면 어쨌든 지금 5분이고, 병가내신 분 포함해서, 5분이 그냥 라인을 나누시는게 아니라.

A: 그니까, 일단 수급자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업무가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뭐 장애인 업무 노인업무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보잖아요. 그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자 관리를 하는 거는 라인을 나누고, 일반 통도 있으니까 통별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구요. 그게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복지 그런 업무들은 각각 담당을 정해서 업무를 하는 거죠.

Q: 그러면 그 장애인 이런 각 분야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이 동에 계신 분을 다 하시는 거예요?

A: 네, 제 예를 들으면, 제가 국민기초 일반 103동, 105동 이렇게 보고, 장애인 복지 보고, 의료급여 보고, 사회복지 일반 보고.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봐요.

Q: 그러면 다른 동에, 예를 들어서 맡으신 동에서 지금 장애인이나 이쪽 업무 아니라 그쪽 업무다 이러면 선생님께서 그냥 그 분야 쪽에 있는 선생님한테 정보를 주시고, 업무는 그 쪽 분이,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계신거구요?

A: 네, 그렇죠.

Q: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거부터 먼저, 선생님 두 분이시니까, 선생님은 이쪽에 계신지는 많이 되신 건 아니구요?

A: 여기에 온지는 1 개월 반 정도.

Q: 전체적으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A: 3년 10개월 정도 됐어요.

Q: 그럼 2 번째?

A: 3번째요.

Q: 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A: 여기에 2년 2개월 정도 계셨고요. 여기가 첫 발령지세요.

Q: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분이) 비슷한 나이가 되시겠네요.

A: 안주사님이 조금 많으세요. 나이는.

Q: 조금 늦게 시작하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이 좀 보시는 것처럼 많기는 많은데, 여기서 간단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구요.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거 순서 대로, 이걸 순서를 정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근로능력 판정에 있어서 지침 상에 보면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대로 내용을 쭉 구분을 한 거고, 마지막에 조금 특수하게 한 가지 더 추가를 시킨 게 추정소득부과 관련된 건데, 추정소득부과는 작년에 자산조사 할 때도 좀 얘기가 되긴 됐었는데, 올해는 특히 근로능력자 관리하고 관련 되서 추정소득 부과가 좀 더 세밀하게 다루어져야 돼서 따로 했구요. 이 부분 관련해서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선생님 어차피 이전에 근무하셨던 데도 동에 계셨던 거죠?

A: 네. 동에 있었어요.

Q: 그럼 이제 동에 계셨으면 어차피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거나 똑같으니까, 여기에 오신지 얼마 안됐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문제될 상황은 아니군요.. 일반적인 업무 수행 상에서 경험하셨던 거나 이런 것들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네요. 안선생님은 지금 현재 자활 쪽을 보고 계신 거니까 그러면 이쪽에 주공 수급자관리라든지 집금 관련된 거는 안선생님하고 같이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지역특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보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어쨌든 여기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 단지. 지역이니까. 영구임대 지역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구요, 대략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가구수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이야기 해주시면.

A: 수급자가 1400 한 90여세대정도, 1500세대 되구요. 인원수로 따지면 2600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Q: 그런 거기에 특별한, 그러니까 좀 특수한 형태의 수급자가 있나요? 새터민.

A: 네 있죠, 북한인, 새터민 있고. 사할린 이주자 등 다 있어요.

Q: 그럼 실제 1500가구면, 5분이?

A: 팀장님은 근데 동 관리는 따로는 안하세요. 그러니까 4 명이서 수급자, 대상자 관리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사람 당 거의 400명, 400세대 정도 되는 거죠.

Q: 여기는 복지부에서 파악하는 평균이랑은 비교가 안 되네요. (육아휴직하신) 한분이 오신다고 해도 다섯 분이시니까, 300세대니까 훨씬 많은 거구요, 이쪽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여기 삼산지구 생겨나면서 생긴 건가요? 아니면 원래 영구임대아파트가 먼저?

A: 삼산지구 라는게, 어디?

Q: 이쪽 주변에 새로 아파트단지.

A: 여기가 훨씬 먼저 있었죠.

Q: 그러면 여기는 예전부터 있었던 지역이고, 저 아래쪽에 최근에 들어온 거네요.

A: 2동이랑 얼마 전에 분동된 거고, 삼산 2동이랑. 신개발 된 쪽이.

Q: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온 지는 꽤 오래전에 있었던 거네요. 그럼 거의 보통 다른 영구임대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나 이런 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 세대 중에도, 영구임대지역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전체 수급세대 중에서 영구임대 쪽에 어느 정도 있고,

영구임대 아닌 일반 통 쪽에 어느 정도 있는 거죠?

A: 글썄요. 그 비율은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80~90% 이상은 영구임대일 거 같아요.

Q: 그럼 영구임대 쪽하고 주변 아파트단지들 하고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거나 그런 특성이 있거나 그렇지 않나요?

A: 아무래도 좀 그렇죠, 영구임대아파트단지들은 대부분 다 수급자시고, 본인들 끼리의 정보교환이나 결속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좀 하나 있으면 와가지고 요구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많으시고. 근데 확실히 많이 이렇게 좀 단절되어 있는 것 같아요.

Q: 보통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학교문제나 이런 건데. 여기도 학교 배정이나 이런데서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A: 학교배정은 그건 제가 정확히 그건..(모르겠어요.)

Q: 네. 알겠습니다. 업무관련된 거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동별로 나눠가지고 수급관리를 하시는 거고, 다른 업무는 다른 업무대로 맡아서 하시는 거고. 그런 업무분장에 관련된 거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업무 비중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수급관리하고, 선생님이 지금 담당하신다고 했던 장애인하고 일반 이렇게 보면, 거기서 수급관리라는 건 주로 어떤 내용이고, 그 비중은 어느 정도, 전체 선생님 업무 중에서,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좀.

A: 수급자 관리가. 뭐..

Q: 수급자 관리라는 거는 지금 업무를 나눈 영역의 것 빼고 다하시는 거죠?

A: 네, 그렇죠. 크게 장애인 빼고는 거의.

Q: 다 하시는 거고, 그 중에서 특별히 장애인하고 이쪽 맡아서 하시는 거죠?

A: 네.

Q: 그럼 혹시 다른 동에서 이렇게 장애인 업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쪽 업무도 꽤 많으실 거 같은데, 지금 맡아서 하시는 수급자 관리 쪽하고, 의료급여나 이쪽 업무하고 어느 정도 비중이 될까요? 하시는 일이?

A: 원래대로라면 수급자 관리하는 비중이 더 커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워낙에 새로 시작한 업무들도 많고, 장애인이나 의료급여 이런 거는 바로바로 처리를 해줘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수급자 관리하는 업무보다는 주로 다른 업무에 더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수급자 관리라는 건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희가 찾아내서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누가 와서 상담을 하고, 조정을 해드리고 이런 업무도 있지만, 내가 체크를 해서 이 사람은 진단서를 낼 기간이다, 아니면 소득이 얼마지 다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솔직히 연간조사 이런 거 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 기간에 제가 찾아다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업무인데, 그런 걸 할 시간 자체가 많지 않다보니까 솔직히 신경을 많이 못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Q: 대개는 수급자 관리 관련해서 초기에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 초기상담해서.

A: 그쵸, 네. 그거 하고.

Q: 근데 이제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렇게 순환이 많이 되는 곳은 아니잖아요.

A: 그쵸.

Q: 계속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래 계시고.

A: 네, 나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Q: 신규 수급자분들이 예전 근무하셨던 동이랑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A: 그건 비슷한 거 같아요. 근데 수급자 신청 수 자체는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차상위 의료나 차상위 장애집단이나 그 기타 신청이 많이 또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신규 상담 받고 이런 것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Q: 그럼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그 동의 세대는 몇 세대 정도예요?

A: 제가 담당하는 데요? 한 380~90개. 390 정도 되요.

Q: 그게 동수로 몇 개예요?

A: 1동 반이구요, 동으로 하면. 그다음에 일반동이 섞여있고.

Q: 1동 반인데 그렇게 많아요?

A: 네, 거의 다 수급자니까.

Q: 거의 수급자예요? 그 한동이?

A: 그렇죠, 다 영구임대아파트고. 수급자 아닌 세대들도 기존에 수급자였다가 중지된 세대들이거나, 국가유공자거나 이런 세대들이지,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건 아니니까.

Q: 그러면 선생님이 관리하시는 쪽만 보면, 380세대 정도, 그중에서 지금 조건부 수급자로 되어있는 세대수가.

A: 조건부 수급자가, 한 10세대 좀 넘을 거 같아요.

Q: 아, 그정도 밖에 안되요?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A: 네, 많아야 10세대고 20세대. 명수로 체크는 안 해봤지만. 조건부수급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Q: 거의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아서?

A: 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근로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연령에 있잖아요?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진단서 내시고 일 안 하실려고 하지 솔직히 자활사업

참여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Q: 거의 근로능력이 있다고 해도 제외자로.

A: 그쵸, 진단서 내고.

Q: 그럼 진단서 내시거나 아니면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거나 그렇겠네요.

A: 네.

Q: 지금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제외된 분들이 많나요?

A: 그것도 별로 많지 않아요.

Q: 대부분 진단서.

A: 네, 그게 진짜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Q: 그러면 일반적인 것은 됐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진단서 관련해서 그냥 조금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업무 흐름대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들어왔을 때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 위주로 처음에 신청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초기상담하시면서 가구상황도 파악하시고 여러 가지 하실 텐데, 수급신청절차라든지 필요한 서류라든지, 어떻게 선정되었고 그런 것들 대략 설명 하시잖아요. 그런 다른 것들 설명 하시면서 그 중에서 근로능력판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정보를 어느 정도나 주시는지, 주면 어느 정도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안내 하시는지,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근로능력판정이라는게 있다라는 것도 얘기 안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왜 판정하고, 절차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진단서 같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라든지, 판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해주시는지?

A: 오시면 일단 가구원 확인하고, 그중에 나이를 보고 근로능력자가 있는 세대는

물어보죠. 일단 장애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 건강이 안 좋아서 특별히 일을 못하는 사유가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고, 아파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한다면은 진단서를 같이 첨부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셔야지만 그 조건으로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Q: 그럼 그 처음에 근로능력 판정을 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은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기보다는 바로 가구 상황부터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A: 그 얘기는 하죠. 근로가 가능한 연령이라서 수급자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수급자로 선정은 하기는 어렵고 그런 얘기는 하면서 진단서나 이런거 제출을 하라고 하죠.

Q: 그러면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연령 가지고는 먼저 가구원 사항 체크 하시면서 일단 연령 가지고 65세 기준으로 해서 일단 걸러내시는 거죠?

A: 네, 그렇죠.

Q: 그쪽 분들은 아예, 연령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고려 대상의 분들이 아닌 거죠? 처음부터?

A: 거의 그렇죠.

Q: 예를 들면 연령대가 조금 넘어 가는데, 사실 노인일자리나 그런 여러 가지 하잖아요. 여기서 판정하는 절차상 보면, 65세 이상이다 그러면, 우선은 근로능력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A: 지금 절차상으로는 솔직히 그렇죠. 65세 이상이 넘었는데 제가 보기엔 건강하다고 해서 그분 수급자는 안돼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Q: 그분한테 다른 걸 요구할 필요도 없게 되어 있구요. 사실 연령과 관련된 거

는 조금 뒤에 있는 질문이긴 한데 먼저 말씀(하신거구요) 들어가야 하는게 실제로도 실제 연령기준을 벗어난 분은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거고 혹시 보시기에 근로능력이 있을 것 같이 보이더라도, 예를 들면 연령에서 연령이 초과가 되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근로능력 판정이라든지 조건부과라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A: 상담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연령이 있으셔도 건강해 보이시고 일을 하시는지 여부는 물어는 보지만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 하시라거나 서류를 제출하라고는 특별히 하지 않아요.

Q: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소득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후에 관리하실 때, 실제로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신청하러 왔을 때 육십몇 센데, 이분이 보시기에는 좀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쨌든 연령에서 제외가 되니까 서류상에서 어떤걸 내라고 하거나 조건부과와 관련해 분류를 하거나 이런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A: 그렇죠.

Q: 근데 혹시 나중에 수급자가 되셨어요, 수급자가 되시고 나서 활동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근로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로서 어떻게 체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죠?

A: 그게 절대 불가능할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 어디서. 그분이 일을 하신다더라. 이런 식으로 와서 얘기를 하지 않는 한은. 그분들이 뭐 어디 그렇다고 고용보험 들어가는 회사를 다니시거나 그렇지도 않고, 대부분 어디 가서 하루 잠깐 일해주고 일당 받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파악하는 것 자체가.

Q: 그리고 지금 보통 확인조사대상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연령이 근로능력에서 일단 무능력자로 판정되는 연령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거의 대상으로 잘 안 내려오죠?

A: 확인조사 할 때도, 그쵸, 좀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확인조사 철에 전체적으로 안내문을 보내서 한번씩 다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솔직히 좀 어려우니까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65세 넘어가거나 이런 분들은. 일단은 특별히 서류나 이런 걸 재신고 하거나 그래야 될 만한 건 특별히 많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제외하고 하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Q: 그럼 근로무능력자로 일단 판정이 되신 건데, 이후에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소득이 잡히거나 그런 경우는 무능력자여도 소득으로 잡게 되어있죠?

A: 소득으로 잡게 해요.

Q: 소득으로 잡게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A: 소득신고를 거의 안하시고,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저희가 불러서 상담을 하고 이런 일을 하시지 않느냐, 소득이 있으시면 신고를 하시라고 해도 대부분 안하신다고 우기시고, 인제 그만 둘 거다, 안 할 거다, 힘들어서 더는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Q: 그렇게 나오시면 실제 근로 가능한 연령대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더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기 어렵겠네요.

A: 어렵죠, 그리고 확인할 방법도 솔직히 없으니까.

Q: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안내해주시는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개 그 수급자들이 신청서 서류를 내잖아요, 그럼 여기서 해가지고 보내시는 건데, 그럼 근로능력판정과 관련된 서류들도 초기에 접수하실 때 다 가져 오시도록 하죠?

A: 네, 다 같이 하죠.

Q: 혹시 예를 들면, 진단서는 나중에 따로 구청에 보낸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A: 그렇진 않구요. 저희가 상담을 해서 먼저 그거를 다 취합을 해서 보내구요.
혹시 저희가 안 보냈는데 추후에 구청에서 상담을 했는데, 추가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얘기 하셔서 간혹 추가로 내는 경우는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다 받아서 보내요.

Q: 그러면 통합조사 팀에서 별도로 방문해서 면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 추가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 읍면동으로
가져 오시나요?

A: 저희한테 주시고 저희가 갖다드려요.

Q: 진단서는 신규라도 선생님이 다 확인하시고?

A: 네, 그렇죠.

Q: 그럼 대략은 어떤 분이 어떤 진단서를 내시고 기간은 몇 개월 짜리고 이런
것들은 기존수급자들은 좀 더 확인을 하셔야 되지만, 초기에 와서 신청 받
으신 분들은 다 확인이 되시겠네요.

A: 네

Q: 그럼 근로능력하고 조건부과라든지, 조건부과제외라든지 이런 판정은 여기
서 하시나요, 아니면 통합조사팀에서 하시나요?

A: 기본적으로 왜 조건부수급자로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할 사업에 참여해야
할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거의 기본적인 것은 거기서 하죠. 구에서. 통
합조사팀에서.

Q: 여기서는 진단서랑 그런 필요한 서류들만 갖추어서 올리시는 건가요?

A: 그렇죠. 초기상담만 하고.

Q: 예를 들면 근로능력자, 무능력자, 뭐.. 조건부과 제외자도 여러 가지 구분이

있잖아요.

A: 저희가 일단 상담을 할 때 한번 다 받으니까요. 만약, 임신부다. 이래서 일을 못한다 그러면 초기 상담지에 써서 보내는 거죠, 임신부라서 일을 못하고, 양육이나 간병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것은.

Q: 그런 상담내용으로 적어서 보내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딱 판정이 되는 거는 구에서 그러면 수급결정통지 할 때.

A: 근데 그런 거는 나오지는 않아요. 통지서를 보낼 때 조건부과제외자다 뭐다 이렇게는 안 나가고, 그냥 수급대상자다, 됐다, 그렇게만 통지서에 나가죠.

Q: 어쨌든 여기서는 주로 초기상담, 서류 다 취합해서 제출하시면, 판정은 어쨌든 구에서.

A: 그렇죠. 대부분 부양의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는 거죠.

Q: 주로 처음에 근로능력판정에서 보시는 거는 표에 보면 중증장애인 있고, 임신부 있고, 3개월 이상 질병,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거는 가구상황 파악하다보면 다 들어오는 거고, 기타라고 해서 중증장애인이 아닌 4급 이내라고 해서 되어있는데, 어쨌든 요런 항목별로 다 체크는 하시는 거죠?

A: 저희가 해보는 거죠. 한번은 다.

Q: 초기에 요정도는 다 체크를 하시는 거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장애인 업무를 보시고 하는 거니까 그건 바로 확인이 되는.

A: 네, 전산 상 확인이 다 되죠, 다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Q: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중증장애인과 임신부, 공익근무요원은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 다음에. 문제는 3개월 이상하고,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지금까지 하시면서 혹시 기타 범주에 들어가서 무능력자로 배제

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나요?

A: 대부분 3~4급 이면 거의 기타 무능력으로 많이 봐주죠.

Q: 그럼 실질적으로는 3~4급은 거의 무능력으로 빠져 나가는 거네요?

A: 네

Q: 어쨌든 지금 장애인판정 체계를 바꾼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3~4급은 중
중은 아닌 건데, 이분들 3~4급들 보시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근로능
력이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지 않나요?

A: 많죠. 많은데 저희가 또 육안 상으로 판단을 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장애인단을
받아오라고 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우니까. 대부분 3~4급들이시면 근데 와서 무
조건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난 장애 때문에 못한다고.

Q: 그럼 기준을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하실건데, 3~4급이면 이게 기타범주에 들어가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설명은 안 하시는데도 그분들이 먼저 그냥 3~4급 정도 되시
면.

A: 네, 일 안하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냥 장애 때문에 못하신다고 그러세요.

Q: 여기 3개월 이상 치료 때문에 진단서 받으실 때는 가구상황 파악하실 때
어디 특별히 아픈데가 있으세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시는지.

A: 먼저 물어보죠, 일을 하시는 게 있으신지,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아니라고 얘기
를 하면은 왜 일을 못하시는지 물어보죠. 장애가 있으세요, 아니면 질병이 있으
세요, 이런 거 물어보죠.

Q: 그렇게 나오면 선생님께서 판단을 해보시고, 진단서를 내셔라.

A: 그렇죠.

Q: 그 과정에서 궁금한 거는 어디 아파서 일을 못한다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몇 개월 기준인지는 정확히 알고 계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받아 오시라고 하실 때에는 그거를 얘기를 하시나요?

A: 근데 기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게, 그거를 기간 명시를 안 해와 버리면, 조건부 수급자로 잡아야 되고. 관리가 일단은 안 되니까. 근로무능력으로 뺄 수도 없고.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그렇다고 조건부 수급자로 넣기에는 애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Q: 기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안내를 하실 때 치료기간을, 그 기간을 꼭 확인 받아 오세요 라고 안내하실 수도 있고, 3개월을 기준으로 분류가 달라진다고 그것까지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A: 앞으로 치료할 기간에 대해서 써오라고 해요. 치료 할 기간이 너무 짧게 나왔을 경우에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Q: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기간을 받아오시는 건가요?

A: 여기는 대부분 다들 알고 해오세요.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더 그런게 있더라구요. 다른 동네 있을 때는 잘 모르시던데 여기는 더 잘 알고 그렇게 해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안내는 하기는 해요.

Q: 아마도 여기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구임대 쪽은 정보발파가 빠르고 학습효과도 있어서 그런게 나타날 것 같기도 하구요. 그리고 아마 동사무소 주변에도 병원이 몇 개 있고 그런데 아파트 주변에 있는 병원들이 주로 진단서 발급을 주로 하겠죠. 그러면 그쪽에서 알아서 해주는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A: 많아요. 실제로도 여기도 근처에 있는 병원인데, 수급자들 대부분 진단서를 끊어오면 거기서 많이 끊어 오세요. 근데.

Q: 잘 끊어주는 곳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병원이 있어요?

A: 네, 암암리에 본인들끼리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이라고 꼭 3개월로 명시가 되어 오고, 질병명도 거기가 그냥 일반가정의학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의원이에요. 우울증, 관절염, 위염 이런 거 있죠.

Q: 그 코드에 들어있는?

A: 알아서 해주세요. 진짜 만약 거기서 진단서 발급 안 해준다면, 여기 있는 수급자 진단서로 인해 근로무능력자 판정되어있는 대부분은 조건부수급자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걸 규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Q: 진단서 비용은?

A: 본인부담하시는 거죠.

Q: 그럼 그 병원은 진단서가 사실은 진단서가 비급여라서 제가 알기로는 1만원 인데 여러 가지로 잘 끊어주는 부분도 있고, 본인 수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거고, 수급자가 잘 적절하게 잘 맞는 거네요?

A: 근데 여기는 아니 었고, 예전에 있던 동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진료기간을 명시 해 달라고 하면은 진단서를 안 끊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동사무소에서 해달라고 그 진단기관을 명시를 해와야지 그 진단서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한 병원에서는 안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동사무소꺼는 안 해준다고.

Q: 기본적으로 진단서 제출할 때 그 병원명이 안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A: 아뇨, 당연히 들어 가야죠. 병원이름 다 들어가는데. 근데 안 해줬어요, 거기는 수급자 진단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면 안 해줬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수급자분들이 기간 되어서 끊어오라고 하면 똑같은 질병으로 똑같은 기간으로 그대로 띄어오잖아요. 그래서 담당자가 얘기를 했나봐요. 병원에. 그때 안 좋게 언성이 높아졌나봐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수급자 상대로 안 해줬다고

하더라구요. 동사무소에서 싫은 소리 듣기 싫다고 안 해줬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의사선생님이 좋은 거 같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병원만 다니는데 안 해주겠다고 하면 난감해지는 거죠.

Q: 진단서가 주 진료기관에서 끊어오도록 되어있죠?

A: 그렇죠, 네.

Q: 그럼 지금 보통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3개월 이상이면 무능력자로 들어가고, 그럼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끊고 갱신기간이 되면 또 3개월, 3개월 끊고. 그럼 3개월 끊는 분은 1년에 4번. 그럼 혹시 처음에 그런 정보 잘 모르고 신청하러 왔다가 서류를 취합하시는 시점에서 갈등이 일어날건 없는 거잖아요. 근로능력판정에서는 14일 30일 기준이 있으니까 결정통지를 받았어요. 거기에 그분이 근로능력자, 조건부수급자라는 그런 식의 판정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 문제제기하거나 다시 진단서를 끊어오겠다고 하거나 그런 경우가.

A: 많죠

Q: 그런 경우가 발생될 때 어떤 흐름에서 발생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지서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건 선생님이 먼저 확인하시는 거죠?

A: 그쵸, 구청에서 결정이 되면 통지서가 민원에도 가고, 저희한테도 통지가 오고.

Q: 선생님께 오는 통지에는 거기에 근로능력, 무능력.

A: 그렇게 까진 안와요, 저희한테도. 일반수급자다, 조건부 수급자다, 이렇게만 오는 거고. 상담내역이나 이런 건 전산 상으로 따로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다 하려면 조건 맞는 자활기관이나 이쪽에 의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보는 거죠.

Q: 선생님들도 그냥 일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일반 조건부 그 정도만 아는 거고.

A: 네. 그렇죠.

Q: 저희가 DB상에 보면 근로무능력도 다 거기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조건부과제외의 경우에는, 조건제시유예의 경우에는 분류를 해서 입력을 하잖아요. 저희도 그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수급자들은 거기에 보면 환경적응 때문에 제외자고, 이런 분류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그건 선생님이 보시고 판단해 넣는 건가요?

A: 그쵸, 책정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책정을 하고, 추후에 그걸 저희가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Q: 그럼 구에서 선정될 때,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조건부과 제외 중에서 무슨 사유, 이렇게 꼬리표를 달고 오는게 아니라, 상담 내역의 대략적인 걸 보고, 만약에 이분이 근로능력은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걸로 되었다면 선생님이 보시고서 조건부과 제외 중에서 뭐 또는 조건제시유예자 이렇게 그냥 분류를 해서 넣으시는 거네요. 그럼 수급자가 측정되고 나서 알게 되는 거는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되겠네요.

A: 대부분 일반 수급자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가 따로 조건제시, 이행에 대해서, 자활참여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거나 그런게 없으니까. 그냥 대부분 본인이 조건부과제외자다, 유예자다 이렇게 아시고 계시는 분은 별로 없을거 같구요. 일반 수급자다 아니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다 그 정도 아실 것 같아요.

Q: 그러면 근로능력자, 무능력자에 대한 것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A: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활사업 참여하는거, 안하는거 이정도 밖에 모르지.

Q: 그럼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이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여기서는 무

능력자로 분류되어 있다.

A: 그런건 모르실 것 같아요.

Q: 일반 수급자 중에서 조건부과제외인데, 조건제시유예다 이런거 전혀 모르시는.

A: 모르시죠. 그냥 나는 수급자다, 조금 더 알면 조건부 수급자다. 그냥 이정도지, 그냥 본인 특별히 북한인, 새터민이다, 사할린. 이거 외에는 특별히 그런 거 모르실 거예요.

Q: 그러면 사실은 아까 추정소득 말씀 드렸는데, 추정소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취업자들 같은 경우에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분류상으로는 일반 수급자로 되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본인이 왜 일반수급자로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면 당연히 추정소득 부과할 때.

A: 전혀 이해 못하죠, 당연히 이해 못하죠.

Q: 그 분류를 본인이 알아서, 사실은 당신이 근로능력이 있어서 조건부과 제외고, 당신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조건부과 제외를 시키면서 일을 하고 있는 만큼의 제대로 소득을 부과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추정소득을 부과 한다는 논리 잖아요.

A: 그렇죠.

Q: 근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네요?

A: 네. 얘기는 하죠. 그치만 그게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라고 선정되는 기준 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분류해서 선정하고, 이런 것 까지는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Q: 그러면 사실 수급여부 결정된 걸 통지할 때 본인들이 기억하든 못하든, 그 분류를 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일반 수급자. 조건부과제외인데, 내가 왜 제외 받았는지, 그게 본인 상황하고 연결이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끝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알려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경우에 추정소득부가를 하는 경우는 수급자 선정 책정되고 나서, 선생님이 중간에서도 부과 하실 거잖아요.

A: 그렇죠.

Q: 그럼 급여 나가는 첫 달부터 부딪히겠네요. 그분들은.

A: 대부분 근데 첫 달부터 그렇게 추정소득 바로 부가를 하진 않죠. 산정하면서는 어느 정도는 사적의존이라든지, 추정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정할 때 한번은 해서 내려오는 거고, 몇 개월이 지났을 때 그거에 대해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 때.

Q: 추정소득은 어차피 구에서 처음에 책정 할 때, 현재 취업으로 되어서 신규로 책정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이미 부가를 해서 내려오니까.

A: 신규책정자로는 그렇죠. 근데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은 추정소득이라고 잡진 않고요.

Q: 네 그렇죠, 소득파악 되는 분들은 최소기준으로 해서 부과해서 내려가면 그런 경우에 몇 달 급여를 받다가 그다음에 문제제기 하러 오시는 거죠?

A: 대부분 근데 추정소득은 일단 산정할 때요. 근로능력이 있으시면 조건부수급자로 잡아서 내려 보내고, 추정소득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Q: 현재 취업으로 있는 분들. 그러니까 조건부과제외 중에 현재 취업이나 지금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조건부과제외가 된 분들은 위에서 소득부분이 전혀 안 잡힌다면?

A: 안 잡힐 수는 없죠. 당연히 잡죠, 그 부분은. 소득파악을 해서.

Q: 보통 그렇잖아요. 일용근로. 본인이 일을 한다 그랬는데, 전산 상으로라든지 뭐라든지 소득이 안 잡히거나, 적게 잡히거나 그러면 이분들은 조건부과에서 제외시키는 대신에 기준선까지 추정소득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A: 대부분이 본인 소득신고를 하시게끔 하구요.

Q: 아 그래요? 초기부터 추정소득은.

A: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사적의존은 좀 있어도 추정소득은.

Q: 그런데 나중에 그 부분이 좀 정확해지지 않거나 그러면.

A: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시 하죠.

Q: 그건 주로 동에서?

A: 네 많이.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Q: 그러면 보통 근로능력판정과 관련 되어서는 수급자랑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근로능력판정에 대해서 갈등이 나는 건 아니겠네요. 모르니까 본인들이. 그쵸? 그것 땀에 찾아오시는 경우는 일반과 조건부의 경우에 자활사업을 해야 되는 조건부라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거겠네요. 근로능력자나 무능력자나 그 단계에서 오는게 아니고.

A: 네

Q: 대개는 조건부과 했을 때 오시는 거죠?

A: 그쵸.

Q: 반대로, 자활사업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A: 있기는 있어요.

Q: 예전에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노인 분들이 자활사업을

하겠다.

A: 그런 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분들 배제시키고, 가능하면 배제시키고.

Q: 그러면 연령대 되시는 분들 중에서 자활사업 하겠다 라고.

A: 와도 솔직히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예전에는 근로유지형이 그래도 그런 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축소를 시키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일반 수급자 참여 제한하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그분들은 할 일이 없고요. 46~7년생 이런 분들은 좀 애매하시잖아요. 있다고 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없다고 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무능력자로 빼줄 순 없고. 이런분들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은 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할 게 없어요. 그런분들도.

Q: 그럼 그 분들은 뭘 하세요? 일단 조건부과가 되어있다는 거는 뭔가.

A: 어쩔 수가 없어요. 근로유지형 이런 거를 해서, 자활사업에서는 의뢰를 해달라고 하는데, 특히 남자 분들은 또 더 일자리가 없거든요. 막상 의뢰를 해도 연결은 안 되고. 그냥 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 안 시킬 순 없으니까. 뭔가를 시키긴 해야죠.

Q: 그런 분들은 그냥 동으로 나오시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세요?

A: 네, 그런 식으로 근로유지형으로 해서 사업을 하나를 만들거나.

Q: 그런 한정되어 있다는 거는 동에서 구 전체적으로 볼 때 근로유지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는 거잖아요

A: 그쵸. 구 쪽에서는 점점 축소시켜야 하고, 예산이 많지가 않으니까 참여를 제한시키라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Q: 동에서 그냥, 그거를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A: 그쵸. 근로 의존으로 넣거나. 동에서 청소하시고 관리하니까.

Q: 원래 배정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 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해서 어쩔 수 없이 근로유지형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냥 동에서 관리 하시면서 조건 이행하는 걸로 그냥?

A: 그러니까 근로유지형이라거 자체가요. 인원자체가 몇 명이라고 딱 구 전체에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필요에 의해서 추가도 할 수 있고 탈락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지, 아예 안 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Q: 제한한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배정하지 마라?

A: 그쵸. 정 어쩔 수 없이 어디 좀 아프시면 그럴 땐 진단서 내시라고.

Q: 그런 진단서 내시라는 건 내서 무능력자로 다시 전환시키는 거죠?

A: 그렇쵸.

Q: 그러면 사실은 체계 상에서 보면 조건제시유예자가 그런 경우에 사실은 단기간에 거쳐서 조건부과를 맡그대로 유예시키는 경우 잦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냥 근로무능력자로 아예, 본인이 아프다고 하면?

A: 진단서를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개월 수 나오면은 대부분 무능력자로 관리를 하쵸.

Q: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고. 아예 와서 떼쓰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왜 조건부 수급자냐, 그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뭘 가지고 주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A: 대부분 알고 오세요. 나 아파서 더이상 일 못하겠다 라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일단 진단서 띄어오라고 하는 거 외에는 저희로서도 별로 할 수 있는게 없쵸.

Q: 그럼 그 분들은 대부분 무능력자가 되나요?

A: 보통 그렇게 처리가 되요.

Q: 그럼 진단서에서 3개월 미만짜리 나오는거 보신 적 있어요?

A: 없어요.

Q: 저희가 진단서 할 땐 보통 4주, 3주 이상 잘 안 해주는데.

A: 보통 2, 4주 나오잖아요. 저희도 궁금해요. 얼마나 아프신지.

Q: 그래요, 3개월 미만짜리 잘 보신 적이 없어요? 그동안에 한 3년 근무하시면서?

A: 처음에 한 1~2개월 띠어 오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럼 몇 번 유예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럼 알고 알아서 3개월, 6개월 그렇게 띠어 오세요. 대부분.

Q: 그러면 그동안에 보신 진단서 중에 3개월 미만은 한 10%도 안 되는거네요.

A: 그쵸.

Q: 근데 그럼 그런거에 부담을 안느껴요? 1년에 4번이면 4만원인데 그 돈을 아깝다고 생각 안하세요?

A: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제도에 대해서 순진하다고 해야되나, 더 그런 분들이고. 오히려 아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는 거죠. 비용이나 그런 거는 이야기 안하고. 정말 3개월 되는 날이면 본인들이 알아서. 얘기 안해도 알고 내요.

Q: 진단서 관련해서 사후관리하고 비슷한데, 진단서를 사람들이 내는 시점이 다르고, 대부분 3개월이겠지만, 3개월, 몇 개월 다 시점이 다르면,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진단서만 관리하는 다이어리 같은 걸 해놓지 않으면 3개월 지났는데 안 받고, 또 갱신 안하고 그러면, 또 얘기 안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럴 것 같거든요?

A: 생기죠.

Q: 근데 그런 이용하는 분들이나 이미 길들여진 분들은 따로 안하셔도 때 되면 떼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A: 그렇게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체크를 해봐요. 추후진단서 제출이 몇 일이고, 언제 제출하셨고, 몇 개월짜리로 제출했고, 관리를 하죠.

Q: 때 되면 다 연락을 하세요?

A: 확인조사나 이런 기간에 그 안팎에 겹쳐서 그 기간에 연락하고. 기간 아닐 때도 틈틈히 보고 내서야 할 것 같으면 연락을 하고.

Q: 380~90세대 중 조건부과가 10세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그럼 10집 빼고, 진단서 내는 세대가 어느 정도나 되세요? 조건부과 된 10집 빼고 진단서 안내고 있다는 건 완전 노인세대나 완전 장애인 분이거나, 그분들은 진단서 낼 필요 없이 무능력자인 경우고, 지금 거의 예를 들면 서류처리나 그런데 수급자 관리하는 거기에 보면 390세대를 쭉 보면, 거기에서 조건부 수급자는 당연히 진단서를 안 냈을 거고. 진단서를 낸 사람들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예요. 그게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A: 글썄요. 한번도 계산을 안해봐서.

Q: 왜 그러냐면 그 진단서 발생 비용이 엄청 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 관리하시는 300세대 중에 10세대 빼고, 390세대 중에 10세대 빼고, 180세대 중에 순수하게 완전 노인, 장애인 세대를 빼면, 그게 한 몇% 될까요? 한 300세대? 그것보다 더 될 수도 있겠네요.

A: 그게 또 명수로 진단서나 이런 거는 개개인 별로 관리 하니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Q: 혹시 나중에 계산되면 한번 알려주세요.

A: 이렇게 표로 있어서 한번 볼게요.

Q: 그럼 끝나고 좀 알려 주세요. 390세대 중 개인으로 치면 5~600명 정도 되겠죠. 그중에서 절반만 진단서를 내도.

A: 근데 가구원 중에 아동이나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Q: 아 그렇죠, 아동빼고, 학생빼고, 노인빼고, 장애인빼고 그 연령대에 있으면서 가구원 중에 아무리 많은 숫자가 되더라도 다 개인별로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럼 200명만 된다, 1/3만이라고 해도. 그러면 200명이 1년에 4번씩 떼다면 800장을 떼야 되는 거고, 그것만 800만원이잖아요.

A: 그렇죠.

Q: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은?

A: 많진 않아요. 있긴 있지만.

Q: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A: 그렇죠, 일종의 면죄부 같은 거니까.

Q: 알겠습니다. 그럼 어쩌면 관리하시는 거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시는군요. 입원확인서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죠? 보통 정신과나 입원확인서 제출하시는 분들은 해당병원에 확인하세요?

A: 지금은 장기 입원자들은 통보가 다 오잖아요. 예전에는 일일이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통보가 잘 와서 대부분 파악이 가능하구요.

Q: 예를 들면, 입원 상태로 되어 있는데 주로 낮 시간이나 밤 시간에 뛰하는지 보통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A: 잘 안되죠. 그것까진.

Q: 그건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제가 두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정신과에 입원 하신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담당 선생님이랑 같이 밥먹으러 동

사무소에 이렇게 이야기 하다가 밥먹는다고 그분차를 타고 주유소에 기름 넣는다고 갔는데 주유소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주유소에서 창문 열고 얼마 넣으실 건가요? 이런 경우있죠. 그때 딱 마주친 거예요.

A: 와, 얼마나 식겁했을까.

Q: 그분도 입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는 입원자에 대한 병원의 관리문제 이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장기입원자에 대한 것을 시스템 상으로 확인 한다는 거죠. 지금 말씀 드렸던것 처럼 혹시 무능력자로 되어있거나 여러 가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데. 직접 목격하셨거나 제보가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들 꽤 있으신가요?

A: 있죠.

Q: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 같은.

A: 여기만 봐도 할아버지시거든요. 65세 이상. 근데 요기 앞에서 붕어빵 장사하시거든요, 이런거.

Q: 그분은 너무 노출되어 계시네요..

A: 저도 그거는 들은 이야기 예요.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불려다 소득신고를 하라고 했대요. 하기는 했대요. 물론 근데 몇 만원 이렇게 하셨겠죠. 그렇게 하시고는 장사도 잘 안되고 안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며칠 전에 밥먹으로 가니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직원이 이러이러 했었다 라고 사례를 들었었어요.

Q: 그분은 어쨌든 65세 넘으셨으니까 조금 덜하고, 그 전 65세 안되는 근로가 능한 연령에서 혹시 보신 경우는?

A: 한번은 대학생이었는데, 군입대 예정이라고 해서 몇 달간 학교를 휴학을 하고 쉬는 기간이었는데 밥집에 가서 만난거, 그런거.

Q: 좀 일시적이긴 하네요. 임대 하겠다고 했는데 기간이 좀 남아서 그랬던 것 같고, 아예 그냥 진단서 계속 갖다 내면서 대놓고 일하시는.

A: 대놓고 그걸 목격하는 자체는 없구요. 주변에서 제보 들어 오는게 많긴 해요.

Q: 그거 다 어떻게 처리하세요?

A: 조사 다하는 방법 밖에는 없죠. 대부분 소득신고 하라고. 오시라고, 하시라고, 다 아니까. 얘기를 하죠.

Q: 다 연락하고 상담하세요?

A: 그쵸.

Q: 어떤 일을 하세요?

A: 식당일 제일 많이 하세요.

Q: 여자분은 식당일, 남자분들은?

A: 남자분들은 일일 막노동.

Q: 그런 것도 대부분 제보 비슷하게 하나보죠?

A: 여기는 많더라고요, 서로.

Q: 영구임대라서 제보가 많을 수도 있겠네요.

A: 그런가 봐요.

Q: 그럼 결속이 많으면서도, 헐뜯기도?

A: 네. 얼마 전에도 북한이탈주민이 일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옆에 사는 친하게 지내셨던 다른 북한이탈주민이 노래방에서 일한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또 한판을, 그런 적도 있고.

Q: 그럼 불러서 하시면 대부분 소득신고서 내세요?

A: 안하세요. 대부분. 버티고. 누가 이런거 얘기 하냐고 소리소리 지르는데, 결국엔 받아요.

Q: 그럼 그렇게 해서 받으면 소득만 받으면 안되잖아요. 무능력자로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정정이 되어야 하는데.

A: 그렇게 다 하죠. 근로자로 관리하고.

Q: 근로무능력자가 아니라 현재취업자나. 그런 걸로 관리를 하시는 거죠?

A: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얼마 안 있어서 또 와요. 지금은 일 안한다고.

Q: 또 진단서 들고 와요?

A: 네 또 와요. 진단서 들고 오시거나, 아니면 오셔서 상담 하거나, 나 지금은 일 안한다, 생계비 다시 조정해 달라. 빠삭하게 잘 알아서 본인들이 잘 알고 오세요. 방법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Q: 이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단서 문제랑 관련이 있는데 그렇게 대부분 모르게 일하시는 분들이 진단서 해놓고 일하시는 거죠? 그분들 대부분 어떤 거예요? 보셨던 케이스 중에 질병이 다양하겠지만 선생님 보실 때 어찌면 멀쩡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인데 물론 지금 질병 명은 상관 없죠? 기간만 3개월 넘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 보면 대략.

A: 고혈압, 당뇨, 관절염, 척추 쪽 디스크. 그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Q: 그런데 진짜 만성질병.

A: 진짜 경미한 질병들.

Q: 보통 그런 게 그 문제(진단서)와 관련된 건데, 앞쪽에서 많이 이야기가 된건

데, 선생님이 진단서에 신뢰하는 정도는? 100으로 놓고.

A: 글썄요. 한 50%는 될까요? 50%도 안 될 거 같은데.

Q: 50%라 하면 10명 중에 다섯명 꺼는 정말 아프고, 정말 개월 수도 그렇고.

A: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Q: 그럼 정확히 숫자로 딱 얘기해 주세요. 10장 받으면?

A: 3~4장 정도. 3장. 그정도.

Q: 혹시 진단서 받아서 신청하러 오면, 물론 가구원을 다 오는 건 아니지만 그것부터 얘기 할게요. 가구원을 다 보진 않잖아요.

A: 그렇죠. 수급 신청 당시에.

Q: 그러면 실제 신청하러 온 가구원 이외는 진단서로만 접수가 되고, 이분의 실제 외형상 아프고 그런 경우는 모르는 경우가.

A: 많죠.

Q: 그분들이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계실수도.

A: 그렇죠.

Q: 그럼 진단서만 딱 받으시거나, 진단서 가져왔을 때 비교해봤을 때, 의심된다고 해서 진단서 자체나 병원에 문의해 보신적 있으세요?

A: 병원에 해본적은 없는 거 같고요. 본인들한테는 물어 본 거죠. 몇 번째 똑같은 질병 내시는데 이런 건 누구나 갖고 있는 경미한 질병이지 않냐, 이게 정말 일을 못할 정도의 질병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래도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하는데 어찌겠느냐 그러니까.

Q: 선생님 말씀하신 경미한 질병 이라는게?

A: 아까 말한 고혈압, 당뇨, 관절염, 허리 디스크, 그런거.

Q: 병원에 연락하신적은 없고요?

A: 네.

Q: 그건 왜, 궁금하신데 병원에 확인하지 않으시는 건?

A: 글썄.

Q: 편치 않으신지, 의사랑 그쪽에 통화 하시는게 그런게.

A: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안 되지만 앞으로 관리 하는게 어려워지니까 그런 것도 있고.

Q: 혹시 공공기관에서 기관에서 조금 접촉하기 쉬운, 일반 민간병원 말고 지정된 병원 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지금 부평구 근처에는 지방의료원 같이.

A: 네. 인천의료원. 부평구는 아니고요.

Q: 좀 멀죠? 그런 경우에는 그쪽에서 발행한게 아니니까 물어보긴 좀 그렇고. 혹시 그런 병원에서 발급해왔다 그러면 편하게 여쭙볼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 그 지점을 복지부에서 지정을 하거나.

A: 아무래도 그렇겠죠. 지금은 대부분 진단서 끊어 오시는게 큰 병원은 잘 안 끊어 주려고 한 대요. 아무래도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판단을 할 수 없어서 못 끊어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끊어오는게 동네 병원 이거든요. 의원, 내과, 그런데는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더라구요.

Q: 어쨌든 근로능력판정은 선생님이 최종 선정하는건 아니니까. 최초 신규측정에서 선생님이 재량을 발휘하시는 그럴 여지는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까 중간에 계속 말씀하셨던 계속 아프다고 하시거나, 그럴 때 선생님 나름대로 손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거죠? 특히 진단서를 내는 경우는 그걸 받

아놓거나 그럴 때도 조건부과를 해야 한다거나 그런거는.

A: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일 하는게 확실치 않는 거는.

Q: 그게 어쨌든 진단서만 내면 도전할 수 있는 아무런 그게 없는 거죠?

A: 일을 하시다가 진단서를 내실 때는 소득을 삭제를 해야 하니까. 일하셨던 데서 확인서를 내라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근데 일용직이나 이런 경우는 그것도 쉽지 않은 거고.

Q: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어떤 식당이라고 하면, 본인이 일 그만 뒀다고 받아오시라고 하거나, 선생님이 직접 식당 같은데 연락해서.

A: 예전에. 제가 여기는 아니고 직접 가본 적이 있어. 그때 당시는 통합조사팀이 없고 신규측정을 해주고 그럴 때였는데, 너무 의심스러워서. 진단서를 내긴 했는데 일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도 하고. 그래서 고용임금 확인서나 이런 거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소득신고를 너무 적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건 아닌 것 같아서 식당주인한테 미리 얘기를 안 하고 가서 물어봤더니 똑같이 얘기 하더라고요. 식당하고도 이미 얘기가 다 된 거죠.

Q: 그럼 그런 경우에 선생님이 어떻게 할 방법이?

A: 거의 없는 거죠.

Q: 특히 진단서라는 거는 들고 오면, 다른 방법은 없으신 거죠? 또 근로활동하는게 발각되거나 그러기 전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A: 그쵸.

Q: 저희가 생각할 때는 비용부담이 될거 같은데 본인들이 비용부담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건 거의 없는 거네요.

A: 네.

Q: 제출하는 주기에 대해서도 별로 불만 없겠네요?

A: 네, 그쵸.

Q: 유지하기 위해서는 3개월, 3개월 계속 내야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한번 내면 오랫동안 안냈으면 좋겠다, 그런 류의 불만들이 뭐가 있는지.

A: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진단서에 대해서 불만 제시하시는 분들은 신규로 책정되거나 책정 된지 얼마 안 되거나,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비용문제도 제기하시고, 왜 자주 내라고 하느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만성이 되시면 불만이 사라지시죠.

Q: 그럼 보통 설명 하시는게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A: 그쵸. 그 기간 동안만 되는거다. 그 기간이 지나면 진단서가 있어야만 그거 보고 다시 근로능력 판단한다고 얘기하죠.

Q: 그 외에 다른 관련한?

A: 진단서 때문예요? 정말 오히려 큰병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희귀·난치성질환 이런 건 아니고, 큰 병원에서만 진료 받으시는 분들, 큰 병원은 진단서 잘 안써 준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개월 수를 꼭 써오라 그러냐, 오히려 내가 봐도 이 질병은 일을 못할 질병인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진단서를 잘 안끊어주니까.

Q: 그런 분들은 본인이 오히려 주로 진료 받는 병원이어서 거기서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오히려 거기서는 기간도 잘 안 써주고 기간도 엄격하게 하겠쵸, 큰 병원들은 형평성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대략 진단서 관련된 거는 알았구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진단서관련해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근본적으로 진단서를 가지고 근로능력을 판정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바뀌면 이 사람에 대해

서 제대로 근로능력 판정하고 조건부과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거 있으니까?

A: 너무 경미한 질병이라거나 그런 건 진단서를 제시를 해도 근로무능력으로 판별 안하게끔.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걸 명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공통된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 지나, 몇 개월 받아야 되는지. 공통된 양식을 가지고 그걸 받아오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Q: 그런 거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로능력. 정말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거는 여전히 질환 위주로 분류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질환으로 보는거 말고, 산재나 그런거 처럼 그렇게. 그렇게 되면 어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운동력 몇 이라던지, 이런걸 제대로 하면..

A: 그것도 좋을거 같아요. 아무래도 관리가 좀더 편하겠죠. 저희가 보고도 판단을 하기도 쉽고.

Q: 그러면 사실 근로능력이 사실 사람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주 바뀐다거나 진단서를 발급한다거나 그럴 필요도 없을 거고, 그런 방법도 같고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 한데. 그건 선생님 판단하기에 내부질환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라든가, 그런게 어려울 수도 있겠죠?

A: 네.

Q: 알겠습니다. 진단서 관련된 건 대부분 그렇구요. 조금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저희가 이 부분을 흐름도상 근로능력에 대한 판정부터 먼저 진행되고, 그다음에 조건 부과 관련된 거 상정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대로 여기서는 관련된 것들을 쪽 하고 위에서 판정 하지만 수급자들은 자기가 뭘로 분류되어있는지도 잘 모르기도 하고. 조금 중복 될 것 같기도 한데 조건부수급자와 관련된 부분이고, 자활 쪽 관련된 부분인데 계속 저기 하시나봐요?

A: 아니, 민원을 보고 있어가지고, 교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Q: 그럼 뒤쪽은 지금 주로 내용이 조건부과와 관련해서 조건부 수급자를 관리 불이행, 부정수급, 추정소득.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선생님.

A: 제가. (다른 선생님이로 바뀜)

Q: 작년에 저희 했던거 알고 계신다고, 저희 조사.

A: 조사요? 그랬었나? 작년엔 조사원이 오셨다고 그러던데.

Q: 그건 아니예요.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다니시는 이유는 조사원이 오셔서 설문지 조사하는게 아니구요. 인터뷰를 깊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가는 거라서 그래서 녹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주로 작년에는 기초보장제도 전반해서 문제로 제기되는 것들을 두루두루 이야기를 나눴었구요. 이번에는 작년에 문제된 것 중 근로능력부분이 문제가 돼서요. 아까 선생님과 어느까지 이야기 했냐면요, 초기에 상담하고, 근로능력 판정과 진단서 제출과 사후관리 내지는 진단서 제출해놓고 근로 하시는 것들에 대한 것 얘기를 했고요. 선생님께서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수급자 관리는 동별로 나눠서 하시고.

A: 동별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가 워낙 많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1450세대 넘고, 수급자 수만 해도 2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사람이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나누면 한 사람당 450세대 되는데 엄청난 양이거든요,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0세대 안 되는 곳도 많은데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건데.

Q: 자활업무 하신지는?

A: 얼마 안됐어요.

Q: 저희가 말씀 들어보니까 수급자 관리는 동별로 잘라서 하고, 그 외의 업무는 업무영역을 나눠서 한다고 들었어요, 뒤쪽의 내용은 조건부수급자, 관리, 이런 쪽 내용이라서 선생님하고 나누는게 맞을 것 같아요.

A: 네.

Q: 그런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조건부 수급자 지정, 제외 과정들이 수급자 본인
은 잘 모르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수급자들은 가구여건 곤란, 환경적응 이
런 요인 때문에 조건부과제외라는 그런 유형분류에 대해서 본인들은 거의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저희는 본인들 수급자들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분류하실 때 이런 갈등관계가 있거나
이런 걸 예상했는데 조건부과 여부만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조건부과제외,
유예, 조건부과제외 중에서도 구체적인 사유가 있잖아요. 그런것들은 선생님들
이 상담내용 같은 걸로 분류하신다고 하셔서, 그부분은 대략 근로능력판정
하는 연장선상에서 대략 파악이 될 것 같고요. 주로 조건부 수급자 관련해
서 여쭙 보는게 맞을 것 같네요. 선생님 혹시 거의 없을 거 같은데 근로능
력이 없다는 걸 증명을 못해서 그래서 불만을 가지거나 그런 분들 있으세
요?

A: 있죠. 조건부수급자라는게 일단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걸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저소득층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가 없잖아요. 부과를 제외를 하는
거에 제한을 두게,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 근로능력유무로 구분을 했는데, 일
단은 65세 중에서도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18세 미만 중에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근로능력 있음, 없음
을 판단하는데 저희도 서류가 있어야 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공적
으로 증명할 때 의사선생님이 진단서나 장애등록이 있거나 그래야지만 저희도
공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일을 할 수 있
냐 없냐로 판단 하는게 진단서로 판단하는 거고. 다만 거기에 기간을 명시 하
는 거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진단을 받아서 이분이 다시 또 일을 할 수 있
느냐 없느냐, 이분이 심각하면 장애등급을 받으라고 권유를 하죠. 근데 자활지
침을 보면 아시겠지만 진단서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5~6급
장애인인데 보기에 그런거 라든지, 진단서에는 기간이 명시가 되지 않지만 저
희가 보기에 심각하면 어느 정도 유예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명확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불안하죠. 간혹 가다 진단서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결국에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을 의뢰를 해서 하시다가 다치면 저희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기에다 심각하신 분들은.

Q: 그런 분들이 기타범주로 해서 제외, 유예가 되거나.

A: 네. 또는 구청에서 심사를 받거나 그런 쪽으로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대부분 진단서를 요청하죠.

Q: 서류가 없어서 조건부과로 된다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구청에 심사를 요청하시거나 이렇게?

A: 그런 경우도 있죠.

Q: 근데 아예 정말 조건부과가 된 경우도 있겠네요. 진단서.

A: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Q: 여러 가지 상황상 진단서가 안 나와서.

A: 그분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요. 정신병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일자리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힘든일 같은 거는 못시키고, 다만 일자리만 부과만 하는 거잖아요. 근처있는 복지관 같은데서 간단한 일 같은거 하시라고, 그거는 시간 오전9시~오후3시, 시간도 짧고 주4일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하실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의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못하겠다는 분들은.

Q: 그래도 진단서가 안 나오는 분들은?

A: 참 애매하죠.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간혹 가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저희가 실태조사도 나가고, 주변 얘기를 들어서 도저히 이분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조건부과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판데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데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이분이 정말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하는게 확인이 된다면, 어느 정도 재량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간혹 가다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배려를 해드려야겠죠.

Q: 진단서가 발급이 안되시는 분들은 주로 진료 받으시는 병원이 큰 병원이거나.

A: 정말로 아프신 분들은 요런 동네 병원 안 가지않아요. 그런 분들은 큰 병원에서 아프시고,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런 분들은 장애라든지 아니면 진단서를 잘 안 끊어주더라고요. 근데 장기간으로 다니시면 웬만하면 끊어주실텐데.

Q: 조건부과 제외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신규측정자 같은 경우에 내려오면 조건부나 아니면 일반수급자나 이렇게 내려오는데. 일반수급자 중에서 일반수급자로 분류가 되면 선생님들께서 내용을 보시고 DB에 관리를 지정하시는 건가요?

A: 일반수급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예 제외가 되시는 분들은 무능력자라고 분류를 하고. 무능력자라든지 다만 진단서라든지 그런 걸로 유지를 해나가는 분이거나 아이 양육이나, 간병 때문이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변동사항을 항상 분기나, 내려오는 걸로도 보고, 이분이 그런 부가사유가 없어졌다 하면 부가를 해야겠죠.

Q: 지침 상에 명확하게 분류가 되어있잖아요. 가구여건곤란, 환경적응필요 등, 그런 DB상의 분류를 다 맞춰서 해 놓으시고, 그대로 관리하시고?

A: 네, 그래야죠.

Q: 새터민은 어떻게 되요? 환경적응이라고 해서 조건부과 제외로 들어가나요?

A: 그분들 같은 경우는 새터민은 유예기간이 1년 정도 되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자활 상담을 거쳐서 조건부과를 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시면 소득신고 하

시거나, 근데 기간이 올해는 6개월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요즘 분들은 적응을 빨리 하시는지 그 정도 기간이면 한국에 금방 적응을 하시더라구요.

Q: 본인들이 이쪽 지역에 있으면서 다른 수급자한테 영향을 받고 그래서 6개월 지났는데, 일을 해야 하는데 못하겠다고 하거나 진단서에 의존하거나 적응 못했다고 하거나 그러시는 경우도 있나요?

A: 그런 경우도 있죠. 저희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그게 좋은점도 있겠지만, 나쁜점이. 수급자분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정보공유가 빠르거든요. 저희보다 꼭 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수급자 분들은 그들 사이에서도 정보공유가 되기 때문에 몇 동에 누구 새로 왔다 그러면 새로 신규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거 알려주고, 어느 병원이 진단서 잘 끊어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침도 그렇고 신뢰할만한 게 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진단서 가져오면 겹으로 봤을 때 멀쩡하지만, 진단서 3개월 이상 일 못한다고 가져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Q: 진단서를 가져오면 선생님이.

A: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편이죠.. 다만 그걸로 인해서 진단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 조건부과를 하거나 소득신고를 해야죠.

Q: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거잖아요. 여기 읍면동에서 동장님이 사실 확인서 첨부하고, 실태조사 아까 말씀하셨던 진단서는 안 되는데 조건부과를 처리하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세요?

A: 제가 맡은 일이 아니어서. 그런 케이스는 하지 않으셔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Q: 그래도 선생님이 하셔야 하는 부분은 아시죠. 선생님이 실태조사를 하셔야 되고, 확인도 받고, 구청에 올리시는 거죠?

A: 그런 확인을 받고, 절차를 거쳐서 이분이 조건부과 안 된다 그런 거를 저희가

서류로 증명을 하고 해야 겠죠. 일단은 처음에 책정을 할 때 통합조사 팀에서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건부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해서 그거를 먼저 얘기를 나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걸 다 판단을 했지만, 지금부터 책정이 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이미 상담을 거쳐서 일을 하기로 말씀을 나누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과정까지 가는 거는 좀 드물죠.

Q: 그렇게 내려왔는데 여기 와서 본인이 나중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다행히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변경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선생님 보기에 도저히 이사람 일할 사람 아니다 그러면.

A: 그건 아니고요. 다시 올리진 않고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첨부한다던지, 병원에도 진단서도 있지만 소견서도 있잖아요. 소견서 같은거 다니시던 병원에 의뢰 할 수도 있잖아요. 소견서 같은거 그분에 대해서 기간이 첨부되지 않더라도 그분에 대해서 우편으로 보내 달라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거 첨부를 해서 분기나 이렇게 또 심사라든지 그렇게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일제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조사를 할 때, 진단서가 안나오시는 분들의 경우도 그런 자료를 첨부해서 이분은 조건부과를 하면 안되는데 서류가 미비했다 그러면 다른 서류를 조사기관에 제출하죠.

Q: 그건 제출하시는 곳은 통합조사팀이예요?

A: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제조사나 그런 거기 때문에. 통합조사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연계팀이나 그런데서 어떤 관련된.

Q: 사회복지과 자활담당하시는 쪽이나 그쪽에서?

A: 자활도 그렇고 기초생활 일반이나 그런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Q: 그럼 예전보단 그런 케이스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A: 네.

Q: 소견서 가져오신 분들도 꽤 되나요?

A: 그런 분들도 많진 않지만 가끔 있긴 하죠.

Q: 소견서 발급할 때도 비용이 드나요?

A: 제가 알기로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Q: 내용의 차이는 지료기간이나 그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지침 상 진단서와 소견서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A: 엄청나다기보다는 진단서가 원칙이죠.

Q: 소견서를 제출했을 때 제외할 수는 없는 거죠?

A: 그런데 모든게 예외는 있으니까요. 이게 아니면 예외 항목은 있거든요.

Q: 조건부과제외자들 어쨌든 진단서들 이런거 관련해서는 사후관리해서 변경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진단서는 특별 주기가 있으니까, 진단서 제출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일반적인 가구여건, 환경적응,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 하세요? 다 파악이 되거나, 진단서 같은 경우에 아까 선생님은 다 따로 관리한다고.

A: 진단서나 그런 것들은 기초관리수급자는 개인이 관리하는 거구요.

Q: 가구여건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상황이 개선됐거나 바뀌었는데 체크 못하시는 경우는?

A: 일제 조사 때 상담을 하거나.

Q: 일제조사가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방치, 유지되는 경우는?

A: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Q: 일제조사 때 주로 확인 하시는게 소득변동 상황하고?

A: 전체적인걸 봐요. 연락처부터 해서. 연락이 안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집에 계신지 안계신지. 실제로 거주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거부터 시작해서 가구원들의 상태랑,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 그건 학적조회를 하면 나오겠지만, 일을 계속 하는지, 집은 계속 그런지, 집을 살 때 부채는 얼마인지, 항목별로 보죠. 소득사항 변동, 진단서 기간은 맞는지, 만약 조건부과로 됐는데, 예를 들어 어떤 병, 간병 때문에 빠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분은 더 이상 조건부과 대상이 아니죠. 미취학아동 때문에 제외됐는데 아동이 유치원이나 그런데 다닌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봐요.

Q: 일제조사는 언제 하세요 ?

A: 6 월 달에 주로 하죠.

Q: 아까 선생님께도 여쭙 봤는데 진단서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시나요? 선생님 경험으로 볼 때.

A: 고혈압으로 못하시고, 되게 그런게 있어요. 고지혈증이랑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떠오르는 것들이 실제로 일을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된 지병을 갖고 계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도 끊어주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걸로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안 받게 되면은 인원을 최소한 한두명을 더 부가를 시켜줘야죠.

Q: 그거 그 진단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조건부과 세대가 늘어나거나 소득관리부터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

A: 지금도 저희가 일을 하고 있지만 제출기한이나 공문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업무를 하면서 그게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하면서 천몇백 세대를 4명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그전에는 팀제가 아니었었는데 이것도 바뀌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상황이 열악해요. 해나가니까 유지는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잘못이 된거는 있죠. 제 생각도 정부에서 일정수준의 사람들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만드는데 관심을 두는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만들고 중지시키고 그런 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책에서 바뀌지 않는 이상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Q: 최근에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요. 그런 변화가 좀 있을 거 같아요. 근로 능력 판정 관련된 것도 진단서 같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어쨌든.

A: 그런 진단서라든지 규정이 없으면 저희도 저희 자의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면에 있어서 힘들고 그런 규정에 따라 너무 맞추려고 하면 또 민원인들에 대한 실제로 소외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Q: 그럼 지금 예를 들면, 진단서 활용한 시스템 같은 거를 선생님 경우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A: 지금 인력을 봐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죠.

Q: 진단서 얘기를 할 때 근로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진단서를 내고 조건부과 제외, 일반수급자가 되고.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보면 진단서 한 장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열장 중 몇 장을 신뢰하느냐고 묻는게 사실은 그것과 관련되거든요.

A: 글썄요. 삼산 1동에서 만약에. 진단서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급자만 관리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력)이 더 필요해요. 실제로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국세청도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소득이 정확히 얼마지. 그건 오히려 저희가 보육료 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보육료나 수급자 할 때 실제 소득이랑 가구. 저희가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국세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본인이 적어내는 걸

로 다 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정부기관이 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나마 저희는 민원에 가깝게 한다고 하지만. 그분을 24시간 감시를 하고, 아예 그냥 그런 행동을 체크를 하고 주변의 옆집 누가 체크를 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24시간 전자팔찌를 채우고, 근데 여자분들 보면 진단서 내고 야간업소, 노래방 도우미나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Q: 선생님들이 그걸 하셔야 되는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밀바탕에 보면 진단서로 그분들이 다 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진단서로 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진단서만 가지고 근로능력을 파악하는게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고쳐야 하는게 좋을지?

A: 진단서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될 거 같아요.

Q: 그건 그걸 발행하는 사람들이 문제인거죠?

A: 네. 예를 들면, 2차 전문기관 이상에서 피어와야 되고, 몇 개월 이상 진료를 받은 다음에 이거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상시에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그것도 2차 전문기관 이상에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진료 기관에 대한 그 다음에 진단서에 대한 법적인 것들도 더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고혈압으로도 실제로 일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것들로 일 못할 수도 있을텐데, 예를 들어 고지혈증이라든지, 슬관절, 그런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지침으로 내려 보낸다는 건 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침에 내려온다면 그렇게 따라야 겠지만 진단서 외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가정방문을 좀더 자주 나갈 수 있게. 저는 나름대로 자주 나간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 안되요.

Q: 일주일에 많이 가시면 몇 번 나가시나요? 다른 곳은 수급자가 띄엄띄엄 계시는데 여기는 같이 있으니까 위치상으로는 방문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

A: 많으면 하루에 한 가구.

Q: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가구 정도 가서 얼굴만 보는게 아니라 한 시간정도?

A: 한 시간씩은 못하구 한 10~20분 정도. 길게는 그 이상도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발로 뗄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진단서가 진짜로 아픈 사람에게 그렇게 되고. 장애인 같은 경우도 아예 팔이 절단이 되거나, 그런 신장 그런거 라든지, 그러면 재진단 기간이 필수적으로 있는데 의사선생님이 안 적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안 적어 주더라도 필수적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되더라도 외상이라든지 끝까지 갈 수 있는게 아니라면 몇 년 후에 재진단을 받아서 장애를 유지할 수 있게 결국 선정만 해주는 게 아니라 유지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그래서 장애인도 그렇고, 진단서도 그렇고 하나 발급을 하는 것도 엄격하게 정말로 힘들게 수술을 하고 진단을 받고 그런 사람들만 발급을 받게 하고, 그런 사람들도 동에서 관리를 할 때도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아예 그런 인력을 배치해 해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집에 항상 없다, 그럼 왜 없냐 이런 걸 조사를 할 수 있게 그런 인력이 확충이 되어야지만 될 거 같아요.

Q: 선생님 자활담당을 하시는 건 이 지역에서 조건부수급으로 통지가 돼서 내려오는 경우에, 선생님 여기서 의뢰를 저쪽으로 하시는 거죠?

A: 의뢰는 구로 의뢰 할 수도 있고,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 그쪽으로 의뢰를 할 수도 있고.

Q: 그걸 직접 읍면동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것도 여기서 의뢰를 하시는 것도?

A: 네, 그건 그쪽으로 의뢰를 하고, 지역자활기관 그런 건 구에 명단을 보내면 구에서 관리를 해요.

Q: 그러면 실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자활참여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로유지형은 여기서 관리하시니까 확인이 명확 할거고, 구로 의뢰해서 또는

여기서 노동부쪽 기관으로 의뢰해서 참여하는지 아닌지는 사실상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네요?

A: 네, 그렇죠.

Q: 그런 경우 해당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는게 최선 인가요?

A: 좀 어려운 문젠데, 그쪽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구를 통해서 연락이 오죠.

Q: 구를 통해서 나가는 분들은 어차피 구를 통해서..

A: 남부자활이나 지역자활센터 그쪽에서 이분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면 똑같이 그쪽에서 몇 번 참석하고 조퇴하는게 구로 통보가 와요.

Q: 일단 구로 의뢰가 된 분들은 구에서 통보를 하시고, 문제가 돼서 급여가 문제가 됐을 때 이쪽으로 연락이 오는 건가요?

A: 전반적으로는 이쪽으로 다 연락이 와요. 구를 통해서 이분들이 며칠 빠졌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계비 지급이나 공제를 한다든지. 그런 걸 전산으로 다 분류를 하는 거죠.

Q: 자활사업 할 때 점수표 있잖아요. 그 표에 의해서 분류하거나, 아니면 자활 관련해서 계획 수립하거나 하는 건 그건 구에서 하시나요?

A: 동에서 하죠.

Q: 선생님이 다하시네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처음에 신규 신청 했을 때 조건부수급자로 통지가 내려 오면, 일반 수급자에 대해선 아까 처음에 말씀 하셨던 것 처럼 조건부와 제외 중에 어떤 사유고. 이렇게 따로 내려온 다음 선생님이 관리를 하시고 영역이 분류가 되면,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일부는 구로 의뢰 하시고, 일부는 그렇게 하시고. 그 때 직접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자활 쪽에 가고 싶어 하는지 상담은 선생님이

하시느 건가요?

A: 네, 처음에 조건부과로 오시거나, 타 동에서 전입으로 오시거나, 전에 하시던 분들 중에 조건 부가로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일단 상담을 하죠. 그분 상태랑 점수 표랑, 그분이 근로유지형을 해야 되느냐, 사회적 일자리 같은 시장진입형이나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좀 더 교육을 받아서 직업훈련을 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죠. 근로유지형, 사회 일자리 비롯한 인턴형이나 그런쪽, 그리고 취업을 목적으로 한 직업훈련 쪽으로. 그래서 그분을 보고서 이렇게 저희가 그쪽으로 의뢰를 하는 거죠. 근로유지형으로 하게 되면 삼산복지관이나 사랑의 도시락으로 의뢰하게 되면 예전에는 저희한테 다시 와서 도장을 찍었었는데, 이제는 그쪽에서 출근했다 그러면 이제는 한달에 한번씩 주시고, 그리고 구로 의뢰한 분들도 명단이 와요. 이분이 어디로 가셨고, 어떤 일을 하신다. 서해크린 그런데서 방재나 청소업무를 하신다. 월급여가 얼마나 되고, 뭐가 어떻다는게 공문으로 쪽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분이 계속 나가시는구나. 그런거에 대한걸 전산 상으로 수정하고, 그런걸 저희가 다 하고 그러거든요. 노동부에 의뢰를 했으면 교육에 관련한 부분들, 취업, 또는 불이행 했다 이런 부분을, 그쪽 방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를 하고, 그답에 그쪽에 의뢰를 하는 쪽이죠, 구를 통해서 그쪽을 통해서.

Q: 대부분 관리는 여기서 다하는 거네요? 자활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는 거네요. 자활사업을 배정하시거나 분류를 하실 때 서로 합의가 잘 되시나요?

A: 제가 맡은지 한달 반 정도 됐는데 지금으로서는 별로 그런 경우는 없었고. 잘, 본인이 원하시는게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몸이 안좋으셔서 근로유지형으로 나가겠다, 근로유지형은 생계급여는 그대로 나가되 일만 부과를 하는 거고, 사회적 일자리나 시장진입형이나 그거는 단가가 다르죠. 그거는 업무의 양도 차이가 나고, 그건 양이 다르죠. 그런 분들은 야근으로 나가면 100만원도 나오세요. 너무 박하다. 난 일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쪽으로 의뢰를 하고, 이분은 수급자 보다는 수업을 받아서 하고 싶다 하면 노동부에 의뢰해서 하죠.

Q: 본인이 원하는거 말씀하시다 보면 배점기준표랑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생기잖아요. 그건 보통 선생님이 조율을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쪽으로 많이 매치를 해드리시나요? 말씀 드리는 거는 그 표의 현실성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표를 가지고 점수를 해가지고 그대로 가라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안 맞는다, 내지는 오히려 그분들이 원하는 쪽 그래도 진단서 안하고 조 건부과를 수용했다는 거는 일을 하라고 하는 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A: 그게 저희가 몇 단계로 나누잖아요. 근로유지형은 35%이상이 되면 안 되고, 뭐 는 몇%이상이 되면 안 되고, 점수표가 내려오는게 그런데서 기준을 일단은 잡 아줘야지만 저희가 작위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무시를 할 수는 없다 고 생각해요. 다만 기준을 잡아주는 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어요. 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왜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 그러면 나 집에서 편히 놀고 싶고, 대충하면 되고 그 런데 이 사람은 멀쩡하고 충분히 일 가능한데 지금 근데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 는 몸이 아프신 분이 많아서 그쪽 자리가 없고 그런데 계속 원한다 그러면, 어 떻게 보면 그런 경우 표가 매우 고맙고, 그런게 될 수가 있죠, 반대로 어떤 분 은 돈을 더 벌고 싶고 일을 하고 싶어 사회적 일자리나 시장진입형을 하길 원 하시는데, 점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감 안하면 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거든요. 그런 경우 좀 긍정적인 부분으 로 하죠. 왜냐하면 그쪽에 저희가(사회담당이) 20점의 재량점수가 있어요. 그 점 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게 근로능력이 상이랑 중으로 나뉘지는게 나머지는 상 중하로 되어 있고 나머지 몇 가지가 있어요. 점수대가 비슷해요. 적으면 40점 많으면 60~70점이 되는데 저희가 0점을 주거나 20점을 줘버리거나 그러며 그거 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그거에 저희가 재량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고, 만약에 그런 아주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시정이 되어야겠죠. 재량 점수를 좀더 준다거나.

Q: 본인이 좀 더 높은 쪽을 지향하면 그건 그쪽으로 맞춰주는 걸로, 수급을 맞춰주는데는 긍정적인 방향이니까.

A: 네.

Q: 전반적인 것들은 많이 말씀을 들은 것 같구요. 이제 마지막에 조금.. 아까 선생님이 말씀 하실 때 본인이 담당하시는 쪽에서는 조건부과가 10세대 정도 된다고. 지금 여기동에 있는 선생님 관리하시는 조건부과세대가.

A: 64세대, 1400세대 중에서.

Q: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저기 나가면서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자활사업 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조건부과 때문에 급여중지, 수급중지, 법률적으로 혹시 고소고발 내지는, 그런 정도 까지 간 경우를 혹시 보셨나요?

A: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거 같은데. 법률적으로 갔다는 게 왜 나는 이거를 빠졌는데, 왜 생계비를 중지하고 그거를 했느냐?

Q: 아니요,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환수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은 좀 있었죠?

A: 그렇죠, 간혹 가다가 있죠.

Q: 그 중에서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제한을 받거나 그런거는 못보셨나요?

A: 법률적으로 라는 거는 실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Q: 법상에 있는 실체 처벌 조항에 따라서. 단지 부정수급 환수나 이런 게 아니라.

A: 그거 말고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Q: 그럼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 조건불이행 관련해서 급여삭감, 급여중지를 하는 그런 경우는 있나요?

A: 그렇죠, 있죠.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노동부나 그런데 의뢰를 했는데 보면 알잖아요. 이분은 의뢰해도 안나간다. 그래서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안나가고 그

려면 다시 또 저희가 재차 상담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이행을 하게 되면 일단 생계급여 중지를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불이행을 하게 되면 아예 중지를 시키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경우로 인해 중지된 경우도 몇 건 있어요.

Q: 그럼 수용 안할 거 같은데?

A: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수급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면 그렇겠지만, 교도소를 갔다 온 분들은 급여 안받겠다 그러죠 오히려 가족 때문에 조건부를 받아들이시거든요. 만약에 그분을 중지시킴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러면 중지 시키는게 낫죠. 복잡하죠. 지침이나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없는게 있기 때문에 그걸 명쾌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걸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완전 중지된 다음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분들은 이것을 신청을 안 하시면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Q: 기간은 3개월인가요?

A: 추정소득을 매기고 이렇게 바로는 또 안되요. 바로 또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게 있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해 중지가 되었다 그러면 3개월 저희가 소득을 보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책정이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예를 줘두죠.

Q: 불이행으로, 처벌 성으로 중지가 됐는데 다시 신청을 하기까지?

A: 바로는 안되고, 3개월로 알고 있어요.

Q: 다른 동에서 중지 받거나, 오시거나 그래서 그러면 바로 금방 확인이 되나요? 구에서 정보가 공유가 되나요?

A: 중지가 된 사람들이요? 중지가 되면 그럼 전산이 안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유가 안 될 것 같은데, 예를들어 중지가 된 사람들은 저희가 전산을 보내지 않으니까 그분이 전입을 하시고 나면 중지된 상담 내역이 있다고 그러

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야 하겠지 만은, 다시 이렇게 한다 그러면.

Q: 구를 뛰어넘거나 그러면 얘기가 다를 거 같은데 부평구 내에서 오시는 분은 아마도 좀 얘기가 되겠죠? 전산 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건가요?

A: 어쨌든 중지가 되면 전산을 보내진 않죠.

Q: 구 내에서도 이권이 남아있거나 그래서 확인할 수 있거나 그런건 아닌거죠?

A: 제가 보내거나 그러진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전에 책정을 받으면 전산을 보내니까 중지가 되면 보낼 수도 있겠네요. 그건 전입전출 담당하시는 분이 보고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Q: 그 전입전출은 담당 따로 있으세요?

A: 생계비를 담당하시는 분이 하시죠.

Q: 구에서?

A: 아뇨, 동에서요. 업무를 하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Q: 업무를 모아서 보세요? 그 급여 확정하는 업무를? 각자 안하시구?

A: 그렇죠. 저희는 본동 내 업무만 주죠.

Q: 그럼 아까 말씀하신 동별 나누어서 수급자 관리한다는 거는?

A: 관리는 저희가 하고 지급은 다른 분들이 따로 하시죠. 그거에 대한 상호 유통이 좀 많이 있어야.

Q: 조건불이행으로 중지가 되셨어요. 근데 조건부과 대상으로 되어있는 분이 진단서에 대해서 모르시지는 않을 거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

A: 조건불이행이 되면은 구에서 신고를 하라고 내려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신고를 하면 그 분이 급여가 중지가 되면서 그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

라서 추정소득을 부가하잖아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담당 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면 그분이 추정소득이 얼마나 될지 잡으시라고 하죠.

Q: 그런 와중에 진단서의 위력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A: 진단서를 가져왔다 그래서 일단은 생계급여 중지는 되죠. 그거는 자동적으로 전산 상으로 중지가 되기 때문에 3개월인가 중지가 돼요.

Q: 그 뒤에 생계중지가 아니라 수급중지가 됐다 하더라도 3개월 후에 진단서 가져와서 조건 풀어 달라 그러면, 진단서 앞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면 바꿔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닌가요?

A: 그렇죠. 만약에 그거를 중지가 아니라 생계비를 중지 되는게 아니라 아예 수급이 중지 돼서 다시 신청을 해서 진단서를 가져오면 그건 또 그만큼의 영향을 발휘를 하겠죠.

Q: 3개월 후에는 생계중지가 됐어요. 그런 다음 나중에 갑자기 진단서를 가져오면 제외시켜줄 수밖에 없죠? 그게 제일 큰 차이이기 때문에.

A: 그쵸. 아파서 일을 못한다고 진단서를 가져 왔으니까.

Q: 진단서 하나면, 어쨌든 지금 당장 중지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단서를 가져오면 진단서 자체가 현재 상태에서 분명히 유용한 점도 있고 지금 같은 문제도 있고. 추정소득은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지금 보육 쪽 관련해서 업무 다 아시잖아요. 혹시 지금 전업주부 추정소득 부과하는거 아시죠. 그거 별 얘기 없나요?

A: 아니 어머님들이 보육료 말씀 하시는거죠? 어머님들이 어떻게 다 아셔야지고 소문 같은거 되게 빠르잖아요. 다 검색을 하셔서 알아보세요. 여성부나 보건복지가족부에 쓰니까. 그거를 먼저 검색을 하고, 그분들 사이에서 그게 이루어 지나봐요. 그러면 별로 그런 걸로 난리를 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Q: 추정소득을 부과한 시점이 ?

A: 2008년 올해 3월부터 받으시는 분들이. 신규가 아니라 보육료는 1년마다 재책정을 해요. 작년에 받으시는 분도 1년마다 재책정을 해야 돼요.

Q: 재책정, 다시 책정하는 기간이 상반기 그랜가요 ?

A: 그게 유치원이랑 비슷해요.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 단위. 예를 들어 12월 달에 신청하신 분들도 2월 28일 까지만 받고. 2009년도 끼는 또 그 전에 미리 신청을 하셔야 하고 받으셔야 하거든요.

Q: 어쨌든 올해 신규는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고. 신규분들은 지원 준거는 모르시겠지만, 기존에 받으시는 분들은 3월달 되면서.

A: 저희가 설명하는데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내려왔다고 말씀 드리니까.

Q: 기초수급자하고 보육료는 수급자대상자가 넓잖아요. 조금 받아들이시는 게 다른가요? 추정소득이라는 용어나 부과에 대해서 그런 감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수급자들은 추정소득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잖아요.

A: 그쵸. 사실상 보육료 하시는 분들은 완벽하게 서류를 내시는 분들이 드물잖아요. 예를 들어 진짜로 가정주부가 있지만, 실제로 정보가 더 빨라서 추정소득을 얼마를 잡는다 그런건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리니까 그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거 같아요. 좀더 많이 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Q: 오히려 똑같이 영구임대아파트 같은데서는?

A: 영구임대아파트는 어린 아이들이 많진 않아요. 오히려 미래타운이나 아파트 그런데서 많이 하죠. 영구임대아파트 이런 데는 아이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노인분들이거나 장애인분들이 절반가까이를 차지 하세요. 수급자 분들 중에서.

Q: 그리고 어차피 지금 수급자는 1층이니까 추정소득부과나 이런데는 영향을

안받는 거죠?

A: 수급자들은 수급자 증명서만 내시면 되세요. 한부모 가정이나.

Q: 그러면 사실은 전혀 영향을 안받는 거니까. 일반가정이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근데 반응은 좀 확실히 다르네요. 수급자들이 추정소득에 막 정말 엄청나게 반응하는 거에 비해서.

A: 너네 맘대로 그 금액을 매기냐, 근거를 뭐냐.

Q: 실제로 확인해보신적 있으세요?

A: 저희가 추정소득을 매기는 거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소득이 너무 그러니까 저희가 나가서 일하는게 할 수가 없는게 그러려면 그 사람 뒤를 밟아야 되요. 그 분들이 근처에서 일하면 모르겠지만 아침에 나가서 공장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전달사항으로 오죠. 그렇지 않으면 추정소득을 부과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 같은 거는, 추정소득이란걸 부과하는게 기초수급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소득신고를 받거나 조건부과를 받거나, 조건부과제외대상이 되거나, 굳이 추정소득을 매겨야 한다면 조건수급을 불이행했거나 그럴 때 매기는 거죠.

Q: 아주 많지는 않으세요?

A: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죠. 추정소득이라는게 저희가 함부로 매길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Q: 전체 1450세대는 판단을 못 하실거고, 선생님관리하시는 400가구 중 추정소득 부과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

A: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저희가 유예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추정소득을 부과하는데 취업을 해도 저희가 조건부 의뢰를 하거나 소득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제부터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1달이나 뭐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달 동안의 겹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저희가 추정소득을 부가해야 하는데, 그런 조

건부과를 하기 전이나 소득신고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앞으로 소득에 대해 추정소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소득 월급명세서를 가지고 오시면 그걸로 입력을 하고, 그전에 했던 거는 그냥 추정 소득이고 대신 그분이 버는 것 보다 훨씬 많게 해서 아예 중지가 될 정도로 할 수는 없고.

Q: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A: 그쵸. 그분이 조건부로 하시면 최소 50만원은 벌잖아요. 그럼 그거 이상으로 하죠. 그리고 그분이 소득을 가져오시면 그거에 따라서 변동을 하는 거죠.

Q: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구요. 주로 저희 포커스는 그 부분 이에요. 진단서나. 그런문제.

A: 저도 진짜 많이 개선이 되면 좋겠어요.

Q: 복지부에서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 같고. 다만 전면적으로 바꾸기에는 근로능력 판정이라는게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단서 가지고 분쟁이 생기는 부분들은 여기서 처리하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정병원제를 하거나 중앙에서 판단하는 식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A: 괜찮네요.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같은 것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2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Q: 그쪽으로 좀 일원화 시켜서 하는 것도 그것도 고민하고 있고 지역마다 지정병원하든지 고민하고 있더라구요. 저희가 올해 하는 작업들에서 내용이 나오면 그런 것 개선하는데 반영시킬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는 이 주제에 대해 관심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 조사지역 : 광역시

○ 응답자 개인사항

성별	연령	학력	근속기간	자격증 여부
여	30대		12년	사회복지직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 당초 응답자인 ○○○ 선생님의 사정으로 다른 선생님께서 대체함, □□□ 선생님은 현재 자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초기 상담 관련하여 근로능력 여부, 조건부 수급자의 현황 등을 파악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음. 총 근속연수가 민경오 선생님이 더 길기 때문에 일부분 더 나은 답변을 얻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됨.
- 진단서를 통한 근로능력 판정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으나 진단서를 통해 조건부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보다는 진단서를 내지 못하지만 근로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음.
- 근로 및 소득 은닉 의심자들에 대해서는 때때로 가계부 형식의 문서(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공유하고 있다고 함) 작성을 요구하여 신고한 소득과 지출을 비교하여 소득 은닉자를 선별하기도 한다고 함. 그러나 그 외의 것으로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일은 없다고 함.
- 전주 평화2동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단지여서 수급자들이 많이 거주하지만, 전주 평화2동 선생님이 수급자들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음. 수급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수급자들의 담합, 위협 등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Q: 사회복지직으로 일하신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A: 17년하고 3개월이요.

Q: 생활보호제도 때부터 계속 하신 거예요?

A: 그렇죠. 91년 7월부터이니깐. 쌀 퍼줄 때부터.

Q: 여기 주공단지라서,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A: 지금 우리가 1670세대 정도 되요. 세대수로만

Q: 그 중에 조건부 수급자는 어느 정도나 되요?

A: 조건부는.. 저희가 조건부로 일하시는 분들이 한 8-90명 정도 되세요. 근데 제가 조건부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데이터 필요하시면 담당자가 바로 들어오실 거 니깐.

Q: 그것은 따로 나눠서하세요?

A: 네. 저희는 업무가 많잖아요. 업무분야를 각각 세분화를 했어요. 나눠서 했기 때문에 지금 평균적으로 8-90세대 정도 되세요.

Q: 그럼 선생님은 무엇을 담당하시나요?

A: 저는 의료급여, 긴급지원, 사례관리 하는 거, 담당자가 갑자기 겹치게 교육도 가게 돼서 인터뷰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만일에 조건부수급자나 근로여부 그거 관계라면 지금 민방위 훈련 나가신 분이 들어와서 하시는 게 나올 것 같은데

Q: 아. 조건부 관련해서 하시는 분이요?

A: 지금 민방위 바로 끝날 거니깐. 15분이면 들어오시긴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여기가. 근로가 가능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의료보호 1종이 1200세대고 나머지는 400세대예요. 1200세대가 거의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400몇 세대만 일을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 중에서도 질병의 경중에 따라 나뉘지는 것이라서. 근로가 가능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Q: 선생님 그러면 근로능력 판정하고 하는 것은 각각 하시나요?

A: 따로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맡은 동호수가 있어요. 조건부 수급자가 몇 세대나,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하는 것은, 그런 데이터는 제가 뽑아 드릴 수는 있어요. 거기에 세분화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기 어렵죠.

Q: 수치보다는, 근로능력 판정할 때 절차나 과정에 대한 것이 궁금하거든요.

A: 일단 근로 능력 같은 것은 나이 18세 이상 65세 미만, 64세까지죠, 거기서 건강 하나 안하나를 우선 따지고요. 건강이 조금 안 좋아도 거기서 세분화해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이나 비취업이나 나뉘지는 것은 대략 아시잖아요. 취업 쪽은 공단으로 보내고 비취업 쪽은 저희 동해서 자활후견센터나 저희 동이나 아니면 복지관에서 일을 하게 되죠. 일단 근로능력 여부 판정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학력보다는 건강상태, 연령, 그 다음이 세분화 되서 학력에 따른 좀 더 고난이도의 작업을 배치한다던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Q: 선생님 그러면 근로능력 판정 기준에 따라서 일대일로 다 상담하시고 점수 매기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A: 네. 왜냐면 보시다시피 그래야지만 저희가 자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죠.

Q: 다니다보니까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A: 100퍼센트 일대일로 만날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죄송한데 저희들이 너무 힘들다보니까 일단 나이별로 해서 다 점수를 매기고 거기서 또 필요하신 분들은 불러서 면담을 하고 다시 조정하고 그러죠.

Q: 선생님 개인적으로요, 연령, 건강, 학력 있잖아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A: 저는 건강이에요. 나이를 떠나서 젊은 사람도 굉장히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상태에 따라서 외모는 멀쩡해도 그 사람 내부적으로 질병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수급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차라리 외부를 다쳤으면 표라도 나서 아무소리도 못하는데 겉으로는 멀쩡하면 속으로 병나서 일 못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멀쩡하거든, 그런 사람 보호한다고 하니깐 좋게 안보는 시각이 있죠.

Q: 선생님은 건강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때 어떤 근거를 보시나요?

A: 우선은 진단서 기준으로 하고요. 진단서 상에서도 만성질환이 있지만 예를 들어 말하면 여자로 말하면 빈혈이고 남자로 치면 고혈압이나 당뇨 등도 일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저희가 심층면접을 하는 이유가 당뇨를 앓아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본인은 일을 못하겠다고 해도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고.

Q: 어떻게 유도하시나요?

A: 일단 자원 봉사 쪽으로 시작을 해요.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본인들도 약을 드시면서 조절이 가능하니깐. 사실은 우리한테 일 안한다고 하면서 일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추출이 되어서 소득파악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깐 당뇨병이라고 해서 중요한 거 아니고 고혈압이라고 해서 중요한 거 아니구요. 요번에 저희가 또 평가를 받는 이유가 같은 고혈압을 갖고 있어도.. 우리 공무원도 고혈압 굉장히 많거든요. 공무원은 일 하는데 수급자들은 일 못하겠다고 해요. 똑같은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하나 안하냐에 관해 이번에 심층조사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Q: 선생님 그러면 그 심층조사는요, 여기 판암2동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A: 전국적으로 전체가 다 해요.

Q: 하실 거예요?

A: 저희는 이미 진단서를 다 받아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확인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Q: 아.

A: 전국 다 돌아다니요. 의료급여 1종이 중요한 이유가.. 엉뚱한 얘기해서 죄송한데 의료급여 1종이라 하더라도, 진단서가 있다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차작업을 올해 하는 거예요.

Q: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할 수 있는데 진단서 떼서 안하려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진단서 떼어 오는 분들 중에 몇 퍼센트나 진짜 일을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A: 고혈압을 들어 말하면, 제가 봐서는 한 20%이내.

Q: 전체적인 질병 내에 서는요?

A: 총 거의 보면 희귀, 난치성 빼고요, 그것은 솔직히 일을 못하는 거구요. 만성질환자 중에 따진다면 100에 20은 정말 일을 못하는 분이고 80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봐요. 희귀, 난치성 빼고.

Q: 20%만 진짜 아프신 분이군요.

A: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한테 일을 못한다고 하고.. 그 소식이 또 들어와요 수급자들끼리 서로 물고 물어요. 고발식으로. 보면 다 진단서를 내신 분들이야 대부분이. 우리가 전화를 하면 집에 거의 없어요. 그이유가 다 돈 버느라 다니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같은 사회 쪽이니깐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일을 나가셨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정말 아픈 사람들은 어디 못 돌아다니거든요.

Q: 그렇죠.

A: 대부분 어디 갔다 왔느냐고 하면 답답해서 바람 쐬고 왔다, 병원 갔다 왔다 그

러지만 병원은 뭐 하루 종일 가는 거 아니니깐. 저희들이 공익이 둘인데 매번 가서 붙여 놓는 게 연락하라고 붙여놓고 오는 게 일이에요. 왜냐면 없거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일을 하시는 일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한테 속이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중지시킬 근거가 안 돼요. 그건 수급자격을 중지시키거나 소득을 변동하고 싶어도 변동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유리알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투명하지 않으니까. 막노동을 가도 우리 못 잡고요, 식당에서 몇 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도 우리 못 잡아요.

Q: 직접 맞닥뜨리지 않는 한은 어렵나요?

A: 그렇죠, 또 그렇게 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본인 스스로 신고 하는 경우는 100에 하나 도 안돼요.

Q: 진단서를 내면 추정소득을 부과할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A: 아니요 꼭 그렇지 않아요. 진단서를 내더라도 진단서 명에 따라서 추정소득을 최소 9일에서 최대 15일까지 할 수 있어요.

Q: 능력자로 판정을 받았는데, 일을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찾아 와서 뭐라고 하시는 등의 갈등상황 같은 거 없으세요?

A: 솔직히 있죠. 없다고는 못해요.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은 나쁘게 말해서 우리를 속여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갈등상황은 그분들과 처음부터 좋게 풀리는 경우는 없어요. 계속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본인들도 어느 정도 얘기는 하시죠. 수급자들도 일주일에 한번 두 번 심지어는 장애 가신 분들도 그렇게 일을 다니신다고 신고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갈등상황은 정말 심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저희가 진단서를 또 요구하죠. 일반 의원에서 끊었으면 일반의원이 아닌 상급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받아서 온다던가, 당신이 그렇게 아프면 어느 정도 기간을 줄 테니 매일매일 병원 간 영수증을 첨부해라. 꾸준히 다녔던 병원에서 진단서를 또 갖고 와라

그렇게 해요.

Q: 직접 병원이나 확인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A: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는 솔직히 잘 못해요. 저희가 정말 필요한 경우는 의사선생님 면담도 해요. 전화상으로 해서 이 병이 정말 근로 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냐 물어보면 의사선생님 대부분 얘기 안하셔요. 근로 능력이 없다고는 말씀 안하셔요. 없다 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본인들이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좀 안 좋다. 근로능력이 저하되어 있다고 표현은 해도, 없다고는 말씀을 안 하셔요.

Q: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해주시는군요.

A: 네. 정답은 없어요. 선생님들이 없다고는 안하셔요. 제가 질병을 앓다보니깐, 저도 감상선하고 빈혈을 앓고 있는데, 제가 일하는 거 보면 분명히 수급자들도 일 할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육체노동도 공무원들도 꽤 많고 정신노동도 보통 아닌데... 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하면 안할수록 유리하니깐 그래서 제도가 바뀌어야 해요. 일을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더 급부를 많이 주도록 바뀌어야 되요. 저희가 수급자 조사, 내년 의견 반영할 때 그걸 많이 요청해요. 정말 일하는 사람 빨리 벗어나게 오히려 일하는 사람한테 급부를 많이 주자. 만 65세 이상 18세 미만은 어쩔 수 없이 안 되지만 그 사이에 있는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빼고 근로능력이 있거나 좀 떨어진 사람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대급부를 많이 줘서 얼른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낫거예요.

Q: 무능력이나 능력이나 판정기준이 애매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확실히 근로능력 여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A: 저는 사회복지도 수급자. 업무 담당이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별도로 필요해요. 왜냐면 여기는 수급자 상담하기도 바

뿐데 가정방문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낼 때가 많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문교육을 받아서 좀 더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Q: 판정기준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A: 거기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게 나이에요. 연령 다음에. 건강상태 그리고 경력이 있었느냐. 학력 경력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면 수급자에게 학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력이 있으면 좀 더 공단하고 상의해서 취업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학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직업 훈련을 먼저 받고 그게 있어요. 훈련제도를 받고 취업하면 되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보면 건강이 근로능력 여부 판정하는데 가장 중요한데, 근로능력을 진단서 갖고 따진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Q: 그렇다면 진단서 말고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을까요?

A: 사실은 진단서 말고도 본인의 의사능력도 많이 중요해요. 장애가 있어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자활사업에 참여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완전 배제를 하니깐 근데 추가한다면 본인의 의사가 많이 좌우할거라 생각해요.

Q: 재량점수 있잖아요. 선생님은 얼마나 주시는 편이세요?

A: 지금 저희가 재량이 10점일걸요. 10점인가 15점 20점, 글썄요. 그렇게 많이 재량으로 쓰진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불렀을 때 내가 이야기를 하면 저는 오래해서 그런지 보이거든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들이 가능한지 가능한지 않은지. 아무런 의사 없이 저희가 일방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면 보통 조건 불이행으로 와요. 그러면 또 이 사람들한테 제제가 굉장히 크게 가해지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다른 혜택을 받는데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본인에 의사에 반해서도 계속, 저희가 시간이 필요한 게 계속 상담을 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Q: 조건 불이행이나 진짜 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을 해가지고 걸리면?

A: 부정수급이 되면 그동안 저희가 줬던 돈을 다 환수하죠.

Q: 혹시 그런 예가 있으세요?

A: 이 사람이 일을 했었어. 근데 신고를 안했어. 근데 이 사람이 산재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매 달 110만원씩 댔었어요. 수급자 보호 비용 60얼마씩 받으면서 2인이니깐 자기는 또 산재급여로 110만원씩 받은 거야. 그거 발견하고 나서 550만원 환수했잖아.

Q: 환수하실 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A: 그렇죠. 안내요. 쉽게 안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찾아갔어요. 가정방문을 해서, 지침이라든가 그런 거 가지고 찾아가서, 그분은 예금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더 쉬웠지만, 말씀을 드렸더니 선뜻 500만원을 수표로 끊어주더라고. 220만원 환수할 때는 제 돈 3만원 들어갔잖아요. 굳이 죽어도 못 내겠다는데 우리가 합동감사에 걸리면 우리가 당하잖아요. 제 돈 3만원 내서 종결했니까요. 마지막 자투리 3만원은 자기 못 낸다고 해서, 사회복지사들 애환 많아요.

Q: 걸려서 환수할 때까지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과정을 전개하세요?

A: 예를 든 것처럼, 신고가 들어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전산을 모두 다 돌려요. 노동부도 돌리고, 저희 시스템 상에 전산을 다 돌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돌려서 잡히면 일단 입사한 시점부터 나가는 돈은 모두 부정급여, 수급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막노동하는데 신고가 들어와 그래서 정말 확인해보면 일을 해요. 그러면 또 일을 했다는 시점부터 또... 그런데 저희들이 웬만하면 수급자들이 연초에 안내말씀 드릴 때 신고를 해라 안 그러면 부정수급으로 돼서 당신들에게 드린 돈을 다 환수한다. 처음 저희가 국민기초하고 5년 동안에는 굉장히 많이 환수를 했어요.

Q: 본인들이 다 신고를 하신건가요?

A: 아니요. 신고를 안 해서.

Q: 아

A: 보장비용 징수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1년에 한 건, 두 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Q: 그 사람한테 알리잖아요. 당신이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 다할 때 그 사람들이 돈을 쉽게 내주지도 않고 인정도 안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A: 일단 저희가 구청 통해서, 보장비용징수심의위원회 통해서 금액을 결정하고 얼마 받을 건지를 결정을 하고 고지서를 내보내요. 근데 이제 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한 번에 못 내니깐 분할해서 납부하겠다고 하면은 분할고지서로 그 사람들은 매 달 납부를 하고, 아닌 사람들은 저희들이 계속 고지서를 내보내다가 그 사람의 동산이라든가 유가증권 부동산등을 압류를 하죠. 압류까지 가는 상황은 아직까지 대전에서는 없었어요.

Q: 선생님 그러면 근로 은닉하고 그럴 때, 옆에서 찢러주거나 하는 경우 말고 다른 경로로 파악하시는 경우는 없으세요?

A: 그건 담당자가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죠. 저희 다른 계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무슨 형사냐 그것만 어떻게 파악하고 다니느냐. 맞는 얘기에요. 수급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아마도 이런 문제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 국민기초할 때 8000만원 9000만원 예금 나오신 분들 의외로 많았거든요. 저도 그런 케이스를 몇 번 겪었고,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일 년에 두 번 이상 계속 전산 돌리고 금융 확인해보고 그러니깐 옛날보다는 많이 투명해졌는데, 밖에서 보는 자활사업과 별개로 보면 밖에서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가끔 신문에 10억 재산 가진 사람이 기초수급자 받더라, 근데 내막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20억 이상 빚을 지고 있

거든요. 그 10억이란 재산이 명예만 있는 것이지 아무런 재산의 효과를 못 보는데 20억 이상의 빚은 안 나오고 10억 이상 있는 사람이 보호 받더라 그런 식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어요. 밖에서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만 수급자들 나름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해요.

Q: 조건제시유예자나 조건부과제외자의 경우, 아픈 사람은 3개월마다 진단서를 내야 하잖아요. 선생님이 진단서를 내라고 말씀을 하는 편이세요? 진단서 갖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A: 그 사람들이 갖고 와요, 개월 수에 따라서 본인들이 저희들이 얘기하기 전에 제출을 하라고 해서 갖고 오세요.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전화를 해야죠. 대부분 여기를 예로 들면 갖고 와요.

Q: 몇 개월 이후에 회복이 되셨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회복이 되셨을 거 같은데 계속 갖고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몇 %나 될까요?

A: 근데 의사선생님들이 진단서를 옛날처럼 남발은 안하니깐, 근데 병원에 따라 틀리지만 병원에 따라 진단서를 아직도 남발하는 병원이 있어요. 다른 병원에 비해 굉장히 쉽게 개월 수 넣어주고 저하되어 있다고 써주고 그렇게 하는 병원은 있어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의사선생님들이 엄격해요. 오히려 근로능력 표시해달라고 하면 왜 그걸 우리한테 요구하느냐고 너희들이 할 일을 우리에게 떠미는 거 아니냐고 의사선생님들이 굉장히 강경하세요. 그래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안 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봐서는 일을 못해요. 딱 봐도 일을 못하는데 의사선생님은 절대 없더라란 말은 안 써주신다니깐.

Q: 아. 없다고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없는 사람 같은데도 없다고 안 해주신다는 거죠?

A: 네. 굉장히 엄격하게 진단서를 발급해주신다니까요. 처음 단계가 자활사업에 단계가 있는 것 아시죠. 처음엔 근로유지형으로 하다가, 근로유지형은 동이나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거기는 도시락을 나른다거나 그렇게 하다가, 좀 더 나

아지면은 교육받고 후견센터가서 전문 간병인을 한다던가. 세분화돼서 나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점수만 가지고 년 취업해라 년 근로유지형이네 그거 아니라고요, 점수만 갖고 따진다면 비취업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취업으로 갈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비취업자 중에서도 가정의 사정,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든가 하는 하면은 취업점수가 나와도 비취업으로 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 비취업도 아니고 근로유지형으로 밖에 분류할 수 없는 상태... 옛날에 자원봉사가 있었고 3000원만 받고 하는, 하루에 4시간 하는 자원봉사형이 있었는데 그건 2-3년 전에 없어졌고, 보통 와서 청소만 하고 가는 그런..지금은 8시간 일하는 근로유지형이 기본형이고,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기간에 제약을 뒀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이상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취업을 안 하면 자활센터로 가는 거죠. 거기서도 센터에서도 자립형이 있어서 자기들이 사업장을 꾸며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자활후견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Q: 올해부터 근로유지형의 소득공제가 없어져서...

A: 8월부터 없어졌어요.

Q: 그것 때문에 찾아오시거나 하는 분은 없었어요?

A: 그건 없었어요. 왜냐면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공지가 다 됐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교육을 받을 때 내년부터는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안 줄 겁니다.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다른 쪽은 모르겠는데 우리 동에서는 문제는 없었어요.

Q: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본인은 일을 하고 싶은데 가족의 여건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분들 있잖아요.

A: 그게 유예자로 되어 있잖아요.

Q: 네. 그 분들이 근로의욕이 있어서 일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분이 현재 이 쪽에도 계시나요?

A: 그런 분이 있는데, 아들이 뇌병변 장애 1급이어서 집에서 옷을 훌쩍 다 벗고 있어, 기저귀도 못 채우고 근육이 다 굳어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그런 것을 만족시켜 줄 만한 센터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요.

Q: 장애인 자녀를 둔 분이 이외에 가구 여건 곤란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 분들 위해서 어떤 서비스들이 있으면 그 분들이 근로를 통해 탈빈곤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A: 예를 들면, 내가 장애가 있어요. 나한테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앓고 있는 가구원이 있는데. 사실 앓고 있는 사람 경우에는 재가서비스가 되니깐 그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만, 중증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중증장애인 서비스가 있어요. 돌봄이 서비스가 있는데, 시간이 좀 더 길어서 이 사람들이 4시간이면 4시간, 5시간이면 5시간 일을 할 수 있는 꾸준히 일주일에 5번이면 5번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시간이 적어요.

Q: 지금 그 서비스가 있긴 한 거죠.?

A: 네.

Q: 어느 정도?

A: 기본이 90시간인가.

Q: 한 달에 90이요?

A: 네, 그럼 일주일에 2-3시간, 아니면 좀 더 중증인 경우에는 120시간까지 해주기는 하지만, 그 시간이라는 제약을 안두고 좀 더 수급자들이 비용을 좀 더 부담하더라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처럼은 안 되겠지만 미국은 온대잖아요. 장애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취업을 위해서 차를 주고 간병인을 붙여주고 운전사를 붙여준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이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봐서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시간의 제약이 없이 와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좀 더 제공이 돼야 해요. 노인이면 노인,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야간보육까지도 하니깐 그런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을 못하는 여건은 2가지예요. 장애인 아니면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2가지 케이스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다른 대리인,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줬을 때, 시간의 제약이 없이 서비스를 준다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죠.

Q: 아까 근로능력 판정 말씀하실 때, 판정 점수에 따라 사업을 나누고 계시는 건 아니신 거죠?

A: 아니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 점수로 하고 그 점수에 따라서 걸러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65세 이상 장애인 다 걸러지고 그 나머지 분들 중에 지금 뭐 신규라든가 하면 제가 면담을 한다니까요.

Q: 근데 근로 능력판정점수예요. 40점 이상은 어떤 사업, 이하는 어떤 사업...

A: 그러니깐 예. 그렇게는 못한다고요. 솔직히. 취업점수가 70점 이상이 나와도 그 가구여건에 따라서 비취업으로 해서 저희 복지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동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70점이 안되더라도 본인이 강력하게 원하면 취업 쪽으로 갈 수 있어요.

Q: 아. 그 점수대로 안하고 융통성 있게...

A: 네. 필요해요. 무조건 그걸 강요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못해요. 그러니깐 어느.. 사회복지사는 그런 거 같아요. 틀에 박힌 어떤 한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한 분야예요. 수급자도 그래요. 어떤 한 가지 틀만 갖고 그 사람을 보호한다 안한다 판단하는 건 좀 어려운 거 같아요.

Q: 자활을 원하시는 분은 많이 있으세요?

A: 첫째 보호받고 한두 해 되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데, 3년 이상 되면 타성에

젓어서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는 노동시장가서도 일을 못할 것 같다. 우리는 경노무잖아요, 아무리 시켜도 경노무잖아요. 타성에 젓어서 안 해요.

Q: 그러면 자활 3년 지나면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A: 아니요. 그건 아니고 자립하려는 의미로 말씀하셨잖아요. 적어도 수급자가 되고 나서 몇 년 안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못 벗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40대에 수급자가 됐어요. 그러면 40이란 나이가 참 애매한 나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자립을 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43년까지란 거죠. 그 이후가 되면.

Q: 포기하신단 건가요?

A: 네. 그렇죠. 타성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웬만큼 일하면 돈 나오죠.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하잖아요. 애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개별서비스를 준다고 하잖아요. 꼭 필요한 서비스만, 내가 학생이 있으면 교육급여만. 내가 아프면 의료급여만, 내가 근로능력은 없지만 실직을 했으면 자활만 그렇게 해서 세분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래요.

Q: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Q: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자활, 탈 빈곤에 관련한 것이고요. 자활사업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자활사업은 싫다. 그냥 일반 노동시장이 좋다는 분이 많은지?

A: 자활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전제조건이 속인다는 전제조건하에 일을 하는 분들은 자활 당연히 안 가려고 하죠. 정말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이 정말 없다라는 거구요. 우리가 소득신고를 40만원해요. 한달에 40만원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저희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60만원 70만원을 드립니다 거기 가서서 참

여하세요. 그러면 안가요. 그러면 저희한테 속였다는 금액인데 그걸 우리가 찾을 수는 없다란 얘기고, 그러니깐 그렇게 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활을 하려는 것 보다는 일을 하겠단 경우가 더 많은 거 같아요. 3년 내내 소득이 월에 50만원이야. 우리가 저번에 감사받았을 때 중점사항인데 3년 내내 50만원이 말이 되느냐 임금인상폭이 있어도 얼마데, 몇 년 내내 50만원 인거야 그러면 그쪽에서 감사받는 입장이었는데. 애는 뭔가 속이는거다. 다시 파악해서 재조사하고 결과보고해라 그렇게 나와요. 수급자들이 자활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일이 없다는 얘기고, 안 하겠다 난 내가 일을 찾아서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100이면 60만원 50이면 40만원, 30만원 밖에 신고를 안 하는, 소득을 낮춰서 신고하는 사람들이죠.

Q: 그런 경우에 추정소득을...

A: 못해요.

Q: 증거가 없으니까요?

A: 네. 우리가 일을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이, 조건부과를 안하는 기준이 하루에 4시간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 일을 하는 사람은 조건부과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Q: 취업, 창업하시는 분들도 조건부과, 조건제시유예자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A: 아예 조건 부과 자체에 해당자가 아니에요. 일단 내가 하루에 4시간을 하고 일주일에 3일 이상을 하면 조건부과자체가 안 돼요. 성립이.. 그 사람은 그 소득 그대로 생계비를 받아요.

Q: 추정소득은 어느 경우에 부과하세요?

A: 자기는 분명히 4시간을 일을 한대요. 일주일 3일 이상 일을 하는데 소득이 30만원 밖에 안 받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오도록 하잖아요. 고용임금확인서라든가 소득신고서를 쓰도록 하는데. 근데 저희가 그렇게 따지면 또 가구별 지출 실태조사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내가 30만원 밖에 안 받고 동에서 주는 게 20

만원이면 50만원이잖아요. 그럼 지출실태 이상으로 8-90만원이 나왔다하면 나머지 소득을 추정소득으로 부과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추정소득이지, 우리가 몇 시간 얼마 그걸로 따지진 못해요. 그러니깐 일단 소득은 30만원 신고하고 우리가 20만원 줘서 50만원 내에서 실태조사표가 나와야되는데, 교통비로 얼마 들고, 뭐는 얼마 들고, 실제 봤더니 80만원이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추정소득으로 부과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Q: 지출 목록 쓰는 것은 수급자들이 일일이 써야되는 건가요?

A: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필요한 사람만 받아요. 무조건 100% 다 해당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깐 좀 더 실증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사람, 우리한테 뭔가 속이는 게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Q: 사업 안내지침에 있는 거예요?

A: 없어요.

Q: 선생님들이 만드신 거예요?

A: 저희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전국적으로 쓰고 있어요.

Q: 아. 다 거의 쓰고 계신 거예요?

A: 보통 일반 가정에서도 가계부 쓰듯이 가계부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수급자의 한 달 가계표. 우리가 쌀을 2만원에 살 수 있잖아요. 수급자들은 쌀 안사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러면 보통 쌀이 4만 2천원이잖아요. 근데 1인가구면 모를까 3-4인 가구면 한 포 갖고 한 달 못 먹죠. 쌀 값 얼마, 교통비 얼마, 전화비 얼마, 전기세 얼마 수도료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서 쓰게 돼 있죠.

Q: 참 좋은 것 같아요.

A: 월 보험료는 얼마 이런 식으로 반찬값은 얼마.. 그러면 대부분 나와요.

그 나머지는 추정소득으로 부과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침을 보시면 가구별 지출 실태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그 이상 추가분에 대해서는 추정소득으로 부과해도 괜찮다고 돼있어요.

Q: 제가 전에 듣기로는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수급자 분들 같은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있으면 근로소득을 낮춰서 신고하실 수 있잖아요.

A: 대부분 지금도 그래요.

Q: 그러면 그 일이 대충 얼마를 받는다 하는 것이 있잖아요.

A: 근데 우리 지침에 있잖아요. 단순 노무하는 사람은 하루 일당 얼마, 목공이면 얼마, 근데 그것은 말 그대로 지침일 뿐이에요.

Q: 그렇게는 못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A: 네. 목공이라도 여기에는 8만원이라고 돼 있지만, 10만원 15만원씩 받는 사람이 있고 8만원이라고 돼 있어도 8만원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깐 노동시장의 탄력성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일자리가 적으면 적은 돈을 받고서도 가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것이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적다 그러면 높아지는 거죠. 노동시장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거라고 부과할 수는 없어요.

Q: 아까, 보통일반 노동시장으로 가려고 하고 자활 쪽으로는 안 가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활센터 후견기관에 연결이 된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그 기관이랑 네트워크를 한다던가 하는 게 있나요?

A: 그런 건 없어요.

Q: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A: 자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한테 계속 통보가 와요. 이 사람이 계속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공문을 통해 매달 와요.

Q: 그렇게만 하고 후견기관 선생님과 연락을 하시고 하는 것은 없으세요?

A: 네, 그렇게는 못해요.

**Q: 처음에 일을... 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어떤 일이
좋다하는 상담을 하는 건 여기서 하나요? 후견기관에서 하나요?**

A: 후견기관에서 해요.

Q: 그럼 여기서는 자활하겠다 신청하시면 그냥 연결해주시는 거예요?

A: 그렇죠. 자활 처음하시는 분들은 후견기관 가서 좀 더 정하는 편이고, 신규가
벗어나면 본인들도 난 이쪽 일을 하고 싶다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죠. 나는 간
병인이 좋다 음식 만드는 것이 좋다 특수학교 가서 봉사하는 것이 좋다하는 식
으로. 첫 해에는 대부분이 어느 쪽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기
서 직접 상담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Q: 수급자 사례관리 하기에 선생님들이 턱 없이 부족하시잖아요. 공무원 수요
를 늘리는 것 이외에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충되면 좋으실지...**

A: 글썄요. 아직까지는 행정직이 많아서, 작년에 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일반 직원이
사회복지 업무 보조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자기들 자리 확보를 위한 일이었고,
막상 그렇게 되고 나니깐 안도와주더라고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느냐는 식으
로 나오고.

Q: 여전히 행정직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 거죠?

A: 네. 있긴 있지만 드물어요.

Q: 그 분들이나마나 사회복지직으로 충원되면 좀 나아지시겠네요?

A: 좀 낫죠. 사례관리가 우리의 주일인데 우리는 서류일 에 너무 많이 치여 있다
보니깐. 사례관리는 둘째 치고 서류 만들다가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Q: 선생님,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동사무소 안에 사회복지업무랑 일반 행정 업무랑 어떤 게... 물론 사회복지쪽 일의 비중이 많잖아요. 인원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A: 관암 2동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쪽이 8명이고 일반 행정 쪽이 6명.

Q: 더 많으시네요?

A: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은 사회복지쪽이 더 과중하죠.

Q: 행정하시는 분들보다?

A: 그렇죠. 여기 우리 동만 따지면 행정직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왜냐면 사회복지직이 워낙 많으니까.. 보통 일반적인 동을 보면, 사회복지직이 적어요. 사회복지직이 적는데 막상 너희들 일은 너희가 하고 우리 일은 우리가 한다. 우리가 아무리 야근을 해도 그쪽에서 관심 없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요.

Q: 그래도 동장님이 사회복지사라서 좀 나오시겠네요?

A: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동장님은 업무총괄을 따지시는 분이시지. 사회복지 현장일은 안하시니까. 거의 6급까지가 사회복지 현장 실무고 5급 정도 되면 현장일은 뭐 거의, 총괄 쪽에 속하시니까, 직위의 의미가 없어요.

Q: 그래도 그냥 행정직 출신이신 분들보다는...

A: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은 있으시죠.

Q: 조건불이행 통지를 하실 때, 그거와 관련해서 항의하려고 찾아오시는 수급자분들은 없으세요?

A: 당연한 거예요. 돈이 틀려지는데, 그럴 때 저희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리 상담을 했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안 들었으니까 저희는 조건 불이행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설득한다거나 그런 거 안해요. 사실은 설득이 필요 없는 것이기도 하고 조건불

이행이니까요. 조건이행 하시기까지 우리가 상담을 하고 독려를 하고 하지만, 불이행을 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신 조건 불이행 했으니깐 정상적으로 우리가 미리 사전에 통보했듯이 하겠다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답이 됐을라나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에 정답은 없어요. 어딜 가도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 어디에 가도 정답은 없는 거고.

Q: 복지부에서 개별급여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보류상태인가 봐요?

A: 원래는 내년부터, 작년에 제가 교육을 받을 때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올해부터 자활부터 시작하고 개별급여 들어간다고 했는데.

Q: 자활법도 통과 안 되고 그런 상태인거 같아요. 선생님은 그쪽이 훨씬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A: 왜냐면 지금은 수급자가 되면 모든 서비스를 다 주잖아요. 학비도 주고 교육도 주고 생계비도 주고 일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근데 일자리가 있는데 아픈 수급자는 의료서비스하면 되요. 그것만 있으면 이 사람은 내가 버는 돈에서 의료급여 부분을 국가에서 충당을 해주니깐 좀 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요. 내가 아무리 돈을 100만원 200만원 벌어도 애들이 많아서 교육비가 부담된다 그러면 교육급여만 해주면 이 사람은 그것만 충족되면 내가 필요한 서비스 부분만 충족되면 괜찮죠. 앞으로 개별급여는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 조사지역 : 광역시

○ 응답자 개인사항

성별	연령	학력	근속기간	자격증 여부
남	40대		19년	사회복지직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 전체적으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 보다는 주변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고, 질문 의도에 맞지 않는 답변도 하였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관리와 관련해서는 근로유지형만 관리하고 있었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시도에서 판정하여 사업장에 배치하고 있어서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음. 근로유지형 일 자리에 참여하는 수급자 관리 또한 자활사업 쪽에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알선하는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인구 : 16,640세대/ 46,264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 3,457세대/ 6,330명

Q: 금곡동으로 발령받아 오신지는 몇 년 되셨어요?

A: 저는 1년 10개월 정도 있었습시다.

Q: 아. 작년에 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A: 예, 작년에 2007년 1월 1일자로.

Q: 처음 공무원 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A: 19년.

Q: 아. 세기 어려우실 정도로...(웃음)

A: 그런 건 뭐.

Q: 수급가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담 공무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A: 11분입니다.

Q: 작년보다 그럼.

A: 1명 줄었습니다.

Q: 줄었습니까?

A: 준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1명이 내려와야 되는데 구청에 업무가 많다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Q: 인원 부족으로 사례관리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걸로 조사되었는데.

A: 지금 인원은 고정되어 있고, 예 제가 볼 때는 2500명 됩니다. 그런데 제도는 자꾸 만들어 내고 그런 추세입니다. 기초생활은 정착되어 있고. 부가급여해가지고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야에 제도가 강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 옛날에 아동복지 가사서비스, 노인서비스, 도우미서비스 등 관련 민원들이 많이 오죠. 인원은 고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기초보장관련 업무는 어떻게 분장하고 계십니까?

A: 우리 수급자가 36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구획별로 나눠가지고 담당부서를 나눠서 보통 한 사람이 250세대에서 300세대, 많은 사람은 한 350세대 뭐 그 정도.. 평균적으로 280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추세는 제도상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법적영세민이라든지 국가임대라든지 편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만 입주하다 보니까 한 사람 빠져나가면 예라 그사람이 그 전사람이지. 똑같이 작년보다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돌아가신분도 있고 이사가신분도 있지만, 일반인이 돌아가시거나 이사가면 수급자가 들어오니깐. 구 입장에서서는 상당히 말은 못하고요, 90년대 초 민선시대에 임대아파트를 지어놓았으니까. 그런데 지방자치체인 지금은 우리 구가 구비 부담을 해야되느냐. 다른데는 사업을 못 벌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타 구에서 부담할 것을 우리구에 밀어넣다 보니까. 구에서도 수급자 하면은, 우리말하면 자치제 측면에서는, 옳은 일이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아파트가 참 좋기는 좋다. 오기만 하면. 좋긴 좋다 이 이야기만 합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여기 오면 생계비라도 얼마 주고, 아껴 쓰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 앞에 낙동강 흐르고, 뒤에 산도 있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허리디스크로 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진단서 내고.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 일을 할 수 있어요. 조금 심한 일은 못하지만. 뒤에 가서 산에 가서 운동하고.

Q: 최고네요. 일도 안 해도 되고. 공기 좋고.

A: 네. 한 달에 생활비 뭐 1인 가족 38만 7천원 나오지. 수술해가지고 의사한테 물어봐서 장애등록 가능하다고 하면 장애수당 나오지. 이런 사람들이야 요즘에는 자기들 생각에 내가 결혼을 빨리 안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더라고요.

Q: 왜요?

A: 왜냐면 부양가족이 없으면 생계급여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도가 연좌제 형식이다 보니까. 아들이 잘 살면 안 해준다 아깝니까. 한탄하는 사람도 있고. 10가구 중에 2-3가구는 좋은 제도라고 인식합니다. 지금은 상대빈곤이지만 이걸 당연히 타 먹어야 되는 급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Q: 아무래도 더 모여계시니깐.

A: 모여 있고, 여기는 사실 힘없는 사람이라 하는데 말하는거 보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알아요. 다 먼저 알고 있는데 멀.

Q: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시나봐요

Q: 저희가 보려고 하는게, 근로능력 판정부터 시작해서 조건부과 제외 유형들 분류하는 거 하는 거하고 자활 사업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과정별로 동에서 담당하시는 업무들이 있나요? 판정은 구에서 다 하는 건가요?

A: 신규는 구에서 다 합니다. 전입자는 그대로 안아가고.

Q: 신규는 구에서 다 하고 그러면 동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있나요?

A: A라는 신규자가 조건부 수급자에 선정됐다 그러면 신규자 업무는 구에서 너는 b라는 사업장에 가라, c라는 사업장에 가라하고, 그 사람의 특성이나 능력을 보고. 우리는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자는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을 다시 해서 b를 가라 c를 가라 일반수급자해라 조건부과 제외하라 그렇게 관여하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단기간이 도래했는데, 못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일반수급자가 조건부로 변경해가지고 조건부로 관리하고. 지금 조건부가 아시겠지만 오늘 7월 1일자에서 8월 달 사이에 자활 장려금 30%가 없어졌거든요.

Q: 근로유지형인 경우죠?

A: 예. 취로. 그게 없어졌는데 그전에는 120명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어진다
고 누누이 강조를 하고 말을 하니깐 전체의 20% 정도는 자활장려금을 주는 곳
으로.

Q: 강도가 더 센 곳으로?

A: 그렇죠. 시장 진입이나 사회적 일자리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뭐. 대부분 보면 어
린 아이가 있다든지 노부모를 부양한다든지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못하니까. 점심시간에 밥을 챙겨준다든지 아침에 애를 빨리
책임진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안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애가 아직 어리고
식구가 5명이다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이 160만원이다. 다른데 가도 근로유지
장려금이 얼마 되지 않더라. 알아보고 취로형이 한달에 32만원 34만원 밖에 안
되 거든요. 다른데 가면은 70만원인데 자활 다니면 보통 2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럼 이거하나 저거하나 똑같은데 여기 있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일
을 많이 해도 현금급여 최고액밖에 안 된다. 뭐 140만원 정도.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똑같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라고 해도 안갑시다.

**Q: 실제로 그 제도가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서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로 효과는 2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A: 예, 한 20%정도.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보니깐 현금급
여액에 준하지 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많아야 15만원, 10만원.. 별 차이 없다
고 어디서 다 계산해보고 먼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만 연말에는 올 해같은
경우에는 월차수당을 현금으로 안 주거든요. 그 대신 월차수당을 한 달에 다
채워서 하면은 연말에 가면 일괄적으로 다 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열흘이
모여있다 그러면 또 20만원 제하고 줄 것이고 그러면 더 손해아닌가라고 중간
중간 다 찾아먹어버리고. 내일 일을 해보려고 하면, 월차라고 가버리고, 올 6월
달부터 계속 월차가 발생했거든요. 10월달 되면 8일 9일 되거든요. 추석 때 보
니까 4일씩 5일씩. 보통 여기는 주4일밖에 안하거든요. 4일밖에 안하니까 한 일

주일 다 제껴 버리고 그러면 사람이 없어요.

Q: 여기는 지금 근로유지할 만큼 일자리들이 있습니까?

A: 여기는 조가 5개 조가 됩니다. 하나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만성질환자, 1인가정. 그 분이 25명 정도 하루에 조를 만들어가지고 가정방문, 가사도우미 비슷한 형식이죠. 또 한 개조는 관내에 지역이 넓다 보니까 풀이 많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 공터에 보면 잡초가 많거든요. 풀 제거하는 거 하나 있고. 그리고 3개조는 환경정비조라고 해서 관내에 담배꽂초도 줍고.

Q: 그럼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나요? 희망자에 따라서?

A: 그것은 저희가 방침으로 정해가지고 일거리를 줘야 하기 때문에. 희망자로 해서 는 일이 안됩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하면 내가 왜 그걸 해야 하느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Q: 아... 그러면 항의는 없나요?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왜 그런?

A: 그건 따로 엑셀로 만들어 놓았다가 의사를 자료로 저장을 해 놓았다가 사람이 비면 채워놓고 대기로 해 놓고.

Q: 아.. 우선순위로.

A: 네. 또 동사무소 청소 하는게 한 개 조 그래가지고 총 5개.

Q: 그래서 한 60명 정도?

A: 지금은 한 90명 정도. 올 7월 달까지는 한 12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랬는데 자활 장려금 여파도 있고 저희들이 조정을 많이 했죠. 도우미들이 많이 필요 없다고 해서 한 30명 있었는데 5명은 다른데 가라고 보내고. 이래저래 조정하고, 가능한 한, 처음에는 해보니깐, 책에서 말대로, 가라라고 하면 다 핑계를 대거든요. 안되요. 그래서 전체로 조정을 해서 다 가라. 한 사람이라도 안 가면 불이익이 다 그러면. 전체로 해서 다 가라하면 말이 없죠.

Q: 그런데 갈 데가 있습니까?

A: 우리는 북구 자활하고 희망터라고 두 군데 있거든요. 거기 가면 복지관도 있고 주거사업도 있고, 좋은환경 재활용 사업도 있고. 6,7월에는 결원이 많이 있었고. 사회적 일자리도 있고, 자리는 많이 있어요.

Q: 아. 자리 많아요?

A: 지금 현재는 결원은 없고. 결원이 있었을 때는 수시로 여기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구에서도 그때그때 연락을 해주거든요. 자리 있다고. 우편으로 보내면은 결원은 대부분 여기서 다 채우죠. 월 1월달 같은 경우는 150명 정도 있었어요.

Q: 계속 줄어가는 거네요?

A: 계속 취로형은 줄이려고 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든 항상 엄포를 놓거든요. 왜 자꾸 다른 데 가라고 하느냐 가만 일하는 사람을. 여기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 다른데 가면 돈 많이 주는데 왜 여기 와서 19,000원짜리 돈도 아닌걸 받고. 적은 돈 받고 합니까? 일단은 뭐, 그 사실 근로유지형이라고 해도 큰 일거리도 없고요. 운동 삼아 하는데. 우리 풀 뽑는 조는 일을 많이 해요. 7명 정도 좀 건강하신 분들. 대부분 근로능력이 미약한 편이에요. 어디가 아프다 눈이 아프다 입이 아프다 코가 아프다.

Q: 그런 분들은 진단서 가져오시는 건가요?

A: 그거는 치료는 안 해요. 돈이 없다보니까.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당뇨가 걸렸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진단서 다 가져옵니다.

Q: 자잘한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 진단서 떼기 어려운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냥 아프다는 말을 듣고 배정해 주시는 건가요?

A: 아니에요. 배정은 일단 처음에 오면은 환경정비 시키고. 좀 지나보고, 이야기 들어보고 물들 전에 빨리 보내 버리는게.

Q: 그 분들은 빨리 보내 시는게.

A: 신규는 가급적 안받아주고 보내고. 대부분 신규가 뭐냐면 옛날에 했던 사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여기서 일했기 때문에 일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수급자 한 사람들이 또 수급자 신청하고 이렇거든요. 예전에 취직해서 다니다가 또 들어오고.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Q: 좀 더 편하니까 다시 들어오시는 거죠?

A: 구에서는 업그레이드 사업장. 즉, 북부자활희망터로 보내려고 하는데, 했던 사람은 여기로 오려고 합니다. 여기는 편하거든요. 규정도 없지만 반장하면 반장 팔이 안으로 굽듯이 그 사람 편한 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Q: 가능하면 신규인 경우에는 몰들지 않도록 가능하면 빨리 보내시려고 하시고.

A: 예. 기존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 저항을 하기 때문에.

Q: 정보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하니까.

A: 네. 많이 알고. 내가 여기서 10년을 일했는데 나를 왜 보내느냐하고 그분들도 기득권이나 텃세를 부리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 시키려면 조금 힘들다고 하면 예전 담당자는 이걸 안 시켰는데 왜 시키느냐하고 오늘 일을 좀 많이 했다하면 하루 제껴야 된다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Q: 좀 어려우시겠어요.

A: 그러면 앞의 담당자 이야기를 하면 조금 힘들게 일했으면 내일 하루 쉬소 하는데 자기들은 메리트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런게 아니라 봉사입니다. 봉사라고 생각하يس소. 어쩔 수 없지 뭐.

Q: 신규를 보내고 하는 것은 주사님이 경험 상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 판단에서 일종의 원칙을 세우신건가요? 아니면 따로 지침이 있는지?

A: 가능하면 대부분 업그레이드 사업장. 다음에 기존에 했던 사람은 기준은 했던 사람은 근로능력이 미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거의 다 이쪽으로. 지금 한 50-60%는 예전부터 해왔던 사람들이고 .

Q: 아, 대부분이이요?

A: 네, 대부분 그만두고 나간게, 결국은 진단서 내야 되겠다. 나이가 65세 넘어가지고 생일이 지나면 아예 못하거든요. 43년 5월 생이다 65세다 그러면 아예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Q: 선생님 그런 경우에 65세 이상이지만 일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경우에?

A: 그런 경우는 하려면 수두룩합니다.

Q: 일자리가?

A: 아니, 수급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3600세대 인원이 만 명이 되다보니까 많다보니까 수두룩합니다.

Q: 그 정도 나이되시고 일 할 수 있으면?

A: 70세 넘어도 희망하면 노인 일자리 맡기려고 하면 엄청납니다. 하려고 하면.

Q: 할 수 있나요?

A: 다 합니다. 수요가 많다는 말이죠.

Q: 아, 할 수 있으시군요. 수요가 너무 많거든요.

A: 장애가 5급, 6급도 사실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하려고 하면.

Q: 이쪽은 일자리가 괜찮네요.

A: 본인이 희망한다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Q: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A: 예. 그런데 안된다하니까 안 되나보다 하죠. 만약에 만 65세 넘었는데, 그 어르신이 원하신다 그러면 어르신이 원하시고 돈 몇 푼 벌꺼라고 하면 하이소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Q: 원하시면 뭐.

A: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정상으로는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분은 65세 넘었는데 왜 해주노.

Q: 선생님 그러면 근로 능력을 나이로 판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어떤 분들은 젊으셔도 일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

A: 그런 건 없습니다. 나이는 65세다. 우리가 기준이 5, 6급이라든지 그런 사람 빼고 진단서 낸 사람 빼고 나머지 직장 없고 자활사업 참여하는 사람은 그 나머지는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 책에서 말하는 상중하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니는 시장진입형이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하면. 그 사람 성격은 개입 안되어 있더라고 그 사람 성질이 악랄한데 점수가 나온다고 해서 시장진입형으로 보내면 더 엉망이 되거든요. 대부분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여기네 이러거든요. 점수가 필요 없거든요.

Q: 결국은 재량점수가 제일 중요한 거네요?

A: 고등학교 갓 졸업했으면 취업대상자로 분류하거든요. 그건 애들이 뭘 모르니까 가능한데, 그 나머지는 지금 근로유지형도 점수를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걸 뭐 다른데도 다 그럴 겁니다. 의미가 없더라고예. 왜냐하면 애가 있는데 고등학생이라도 자폐아가 있다든지 등록되지 않은 아이가 있다든지 노부모가 있다든지 노부모가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는 것은 누가 수발을 해줘야 한다 그랬을 때. 만약에 노모가 허리가 아파서 꿈쩍을 못 한다 노모도 이 사람도 수술이 안 된다 아입니까. 그러면 자기가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건강해 그러면 젊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Q: 가구여건 곤란으로 빠지지 않아요?

A: 또 다른 가족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돌보지 않을 때는 자기가 해야 되니까.

Q: 사실상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근로하기 어렵거나?

A: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여기는 다양하더라고요. 새터민도 있고. 각지에서.

Q: 전국에서 오셨나요?

A: 전국까지는 아니고요.

Q: 부산 각지에서?

A: 부산 각지에서 오고, 서류 뒤져보면 저 멀리 태종대에서도 오고. 전부 전입자니까.

Q: 그러면 진단서 제출해서 근로 무능력으로 판정받으신 분들 중에 원래는 진단서 제출하고 근로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몰래 몰래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A: 그건 없다고 이야기 못합니다.

Q: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A: 이거 이야기 하는 건 잘못 되는 거 아닙니까?

Q: (웃음). 아니에요

A: 근로 유지형 같은 경우는 보니까 들어보니까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고 토요일 일요일 쉬어요. 금요일도 쉰다 아입니까. 그러면 요새는 오래 다니신 분들은 월차란 제도가 있거든요. 월차를 나누어서 써라 이야기를 하니까 돈 벌라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벌어요. 그 정말 자기들끼리 조가 있거든요. 조가 있고

식당이나 이런 데도 조가 있고 오늘 단체손님 많이 받았는데, 거들어 달라 그런거 많아예. 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 들어보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식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야기를 안 하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보면 너무 이렇게 단합이 잘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란 사람이 한 사람을 다른데 취직을 한다든지 떠난다든지 하면 일반 사회인들처럼 똑같이 회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없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으로 보면 진단서 해가지고, 참 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보니까. 공식적으로 고용센터 이런데 신고도 안하고.

Q: 그런 경우는 잡기도 어렵잖아요?

A: 예, 맞아요.

Q: 아는 사람 일 잠깐 도와줬다고 하면.

A: 네 말하기 나름입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선생님 그러면 조건부과제외자의 경우에 원래 근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A: 제외자는 일, 취업대상자도 제외 아닙니까. 그리고 3개월 진단하고 그 사람들은 원래 안해야 되는데 질병이라는게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지. 우리 흔하지만 잘 안 고쳐 지잖아요. 그게 약물로 치료하면 얼마든지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심하지 않으면. 그런데 대부분 진단서 나오는게 뭐냐면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함. 그럼 책에서는 3개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는 못해요. 아 됐네요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진단서에 근로무능력이나 근로능력을 인정함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는 참 좋죠.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질병을 근로명이 없는 것으로 골라달라 하면 그건 못한다 하더라고요. 일일이 근로능력이 있다, 없다는 의사가 판정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희귀질환이나 크로머씨 병이라든지 파킨슨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병인가 보다 하고 생각이 드는데. 완전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폐암인데 폐암환자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Q: 그렇죠 그런 것은.

A: 이 사람은 일 못한다고 봐야되요. 그러면 고혈압, 당뇨 같은 것은.

Q: 본인이 관리만 잘 하면.

A: 나 아는 사람들도 고혈압, 당뇨병환자들 있어요. 그 사람들도 노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은 질병이 한 1000가지 된다 아녓니까 한 500개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 500개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Q: 더 편하게?

A: 그렇죠.

Q: 진단서를 기간으로 할 게 아니라 병명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게 좋다는 거죠?

A: 예. 그러면 3개월 이상은 질병부상요양을 요한다 이렇게 책에 되었다 보니까. 3자가 들어가면 조건부과제외다 이렇게 되죠.

Q: 정보를 듣고 오시지 않아요?

A: 보통 사람이 우울증이 다 있거든요.

Q: 그걸로 물어오시고.

A: 우울증 그거는 치료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지. 누가 스트레스만 안 주면 우울증도 회복도 되고. 그런데 그걸 또 3개월이라 하면 질환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Q: 선생님 그러면.

A: 일단 질병부상휴양이 질병이 너무나 많다고. 한의학에서 하는 것 틀리고 양의학에서 하는 것 틀리지만. 지금 뭐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바꾸기는 좀.. 여기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조금 그런게 나이가 60세 넘어서 그런 병 걸리면 좀 힘들고 내가 볼 때 50대나 40대는 얼마든지 자연적으로 저항력은 있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Q: 진단서는 선생님이 보시기에 진단서를 끌어왔는데 과장되게 끌어오거나 허위로 끌어온 것 같은 분들도 계세요?

A: 예를 들면 만성위염있죠. 그건 거의 다 있거든요 남자들한테. 그런 것은 그렇고 그리고 폐경기증후군. 여자들 다 있거든요. 그런 것도 3개월 끌어주고.

Q: 그런 정보를 다 듣고 끌어오시는 건가요?

A: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끌어주는 의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의사의 주관적인 생각이지요.

Q: 그럼 병원에 확인같은거 하신 적 있으세요?

A: 그건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의사가 끌어주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지. 진단서는 그 기관의 의견이니까.

Q: 어떤 병원가면 의심이 가는 진단서를 끌어온다는게.

A: 병원이 워낙 많고요.

Q: 그래도 큰 지역이라 그럴 수 있겠네요.

A: 많아요. 너무 많아요. 대부분 거의 다 보면 개인이름을 달아놓으니까요. 홍길동 의원 내과 이러면.

Q: 종합병원이 아니고.

A: 큰 대학병원이 아니고 대학병원은 대부분 보면은 진단기관을 명시를 안해요. 3

개월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빨리 나갈 수도 있는데 무슨 3개월이나. 그런데 일반 병원은 만성위염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함. 내가 볼 때는 이견 아닌데 아니라고 얘기도 못하겠고. 의사한테 물어 보려고 하면 당신이 뭘데 아니라고 하느냐 그럴 것 같고.

Q: 조금 그런 것은 있겠네요. 의료기관이 1차 2차 3차 높아질수록 진단의 엄정성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진단서를 인정 하는게 2차 3차 병원만 인정한다고 하면 좀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A: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2차, 3차. 우리 예전에 장애인 진단서 끊을 때 지정병원처럼.

Q: 지정병원.

A: 구역별로 북구는 구포성심병원가라. 수급자관련 진단서는 그러면 진짜 좋겠네요. 차트를 그쪽에 다 보내서 의사가 보고 의뢰해 가지고. 거기가 2차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주관적인게 아니고 공식화 되어 있는 근로복지공단처럼. 산재급여받듯이 그러면 좀 엄격하게 되겠네요. 지금은 의사가 거의 다 판정하는 상황이거든요. 장애인도 그렇고 수급자 관련해서도 그렇고. 10사람 중 7은 의사가 판정해가지고 온거고, 65세는 나이가 들어서 온거고. 의사의 생각이 중요하지요. 정부에서 돈을 적게 줄려고 하면 그건 아마 정립을 해야되요.

Q: 현재 창업하고 계신 분 중에 수급자 되기 위해서 원래 버는 소득보다 줄여서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5번 일하는데 3일만 일한다고 거짓으로 말씀하시는.

A: 현실적으로 자활사업이라고 보면은요. 여기 보면 사업자등록증 해가지고 점보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 피아노 조율사 그런 거 있는데요. 그런 영세업종을 보면 거의 많이 못벌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버는 사람이 없어요. 자영사업이라 해서 수급자 수준에서는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머리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Q: 특별히 많이 의심가는?

A: 저분들 내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명이나 두 명 될까말까일겁니다. 다 사업자등록내고, 인터넷 깔고 해도 없어요, 사람이 다 무료로 이용하려고 하지. 인터넷이 발달되다보니까. 무료로 하려고 하지. 시골 같으면 농업해가지고 자기 혼자 할 수 있는데, 사업소득이니까. 농업이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배웠기 때문에 잘하나 못하나 날씨에 매달렸기 때문에. 소득이 얼마 나온다 이게 되는데. 근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못 벌어요. 자영사업자들은. 그런 것은 있죠 일일 소득해가지고 식당에 다니면 앞전에도 40만원 올해도 40만원 그래가지고 어찌다 한 번 잘못 적어내면 신고한 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앞전에는 어찌다가 50만원 벌었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그러면 십만원 줄어드니까 신고해서 10만원 깎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딴냐고. 그러면 일년소득을 분기별로 한다 그러면 다시 조정하거든요. 다시 돌아가거든요 다시 낮춰 올라갔다 내려갔다 평균적으로 보면 계절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손님이 많았다 적었다 할 수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전국노임단가 기준으로 하라. 하면은 이 바닥에서는 안 통합니다. 워낙 그게 높게 되었어요. 서울에서는 될지 모르겠지만 .

Q: 그래도 그 추정소득 부과하는게 어렵지 않으세요?

A: 추정소득은 9일 이상인가 10일 이상인데요. 보통 10일 이상이면 45만 6천원인가 되거든요. 그게 자활참여자 소득이랑 비슷해요. 정부의 최저임금하면 72만원. 그에 준하게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에 준하려면 2인이나 1인이나 급여가 안 나와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는 못해요.

Q: 여기도 일을 하신다고 해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근로여건 같은게 임금을 많이 받는 일을 하시는 분이 없으신 건가요?

A: 없어요. 그리고 어찌다보면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때 보면 애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해서 그렇게 기분 좋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이런데 그 사람들은 애들을 위해서는 이때까지 생활을 했다. 애들 취직시키

려고. 대학 들어가면 수급자 증명서 제출하면 학교에서 감면해주고 뭐해주고 많거든요 그래서 취직했다 이러면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탈락시켜도 아무 말 안합니다. 고맙다고 하고. 정부에서 말한 대로 자활, 자립이 맞는거 같아. 근데 나머지는 어중간한 나이 40대 50대 30대 이런 사람들은 부정수급, 내가 볼 때는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볼 때는 별이가 없어요. 사업소득이라고 해도. 피아노 조율사를 해가지고, 가정으로 전화하고 집전화 하고 연결하고 이래가지고 하고 스티커 붙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계절을 타나보더라고요. 어떤 때는 잘되고 어떤 때는 안되고.

Q: 아. 그래요?

A: 계절을 타다보니까 거의 못 벌더라구요. 많이 벌어야 30만원. 왜냐면 광고료 떼고 뭐 떼고. 사실 그것도 다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포함을 못 시키더라고요.

Q: 일일이 다 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A: 예 그렇게 하면 수급자 될 사람도 없고요.

Q: 지침에 보면은 별이?

A: 우리는 규정에는 지출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광고료, 감가상각비, 재료비 들어갈거 아닙니까. 뭐 들어가고 하면 그게 60만원 된다. 그런데 실제 소득은 40만원이다 그러면 60만원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된다 이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건덕지가 안나오더라고요.

Q: 실제로 광고비 들어가는 것은 그렇다 치고, 사는 것을 보니까, 실제로 소비 패턴을 보니까 신고 된 소득보다 많이 쓰는 것 같더라. 사실 그런 거 보고 추정소득을 매기는 거 아닙니까?

A: 예.

Q: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보려면 사례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A: 여기는요 다 구조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신고는 들어와요. 집에 티비가 냉장고가 2대고 그런데 사람 사는게 똑같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써요.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독한놈들 많고. 실제로 제일 힘들게 정부에서는 뭘 감면한다고 하면 먼저 딱 때리거든요. 그럼 날마다 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저소득 감면해준다 이래버리면 먼저 알고 찾아오니깐.

Q: 문의전화?

A: 예, 저쪽에서는 pr을 하려고 하는 건데 미안한데 이쪽에서는 나도 모르는데 감면해준다 이러면 신문이나 TV에서 먼저 하고 내려오니깐. 그리고 또 질문 외에 우리 기초노령연금 있죠?

Q: 네.

A: 그것도 생계비 줄 때 기초노령연금 8만 4천원 준다 아입니까 1인가정은. 그 중에서 생계비를 까고 주거든요. 말일에 줘요. 30일 31일에 주는데 생계비 줄 때.

Q: 아... 한꺼번에.

A: 예. 이왕이면 생계비 까고 주는데.

Q: 따로 따로 받게 되면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되는 건데 결국에.

A: 예. 그러면 빠지면 모르거든요. 그사람들은.

Q: 아. 또 설명을 드려야 돼요?

A: 왜 이거 까고 저거 까고 하느냐 그러거든요. 그거는 좀 한꺼번에. 왜냐면 수급자는 처음에 할 때는 주는 걸로 알던 사람들이 이제 까고 주니까 한꺼번에 하면 이러나 저러나 같은 돈인데.

Q: 취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거 통해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분들

도 계시잖아요. 수급자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안하고 이 제도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A: 보니까 택시를 한다고 하면 특별히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또 애들도 어리고 미취학아동이고 그러면 조건부과제외한다 아입니까. 미취학이라고. 소득이 택시가 얼마 나오냐고 하면 월급 받는게 60만원 밖에 안되요.

Q: 조금 밖에 못 받네요.

A: 실제로 받는 것은 자기들 능력주의거든요. 150만원 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4인 할 때는 100얼마 준다 아입니까 그 기준을 안 벗어나. 그러니까 여기서 살고 또 그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가 또 살아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있고, 또 제도를 아는 사람은 알더라고요. 가족 수가 많을수록 좋다. 어린 애가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애를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젊은 사람일수록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 그래요. 자활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면 가족 수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애를 안 좋아하는 기라. 죽도록 일 해봐야 엄마한테 싫은 소리 들을 거고. 여기서 일하면 시간만 때우면 돈은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공장에 가봐야 150만원 밖에 안준다. 이래저래 감면받고 하면 따지고 하면 거의 비스무리 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거의 안 좋아하는 거지. 세월아 네월아 시간만 때우고 애들 성장하면 어디 갈 거다 이러는데, 막상 가보니까 때가 늦어버리는 거지. 우리나라 보통 40-50 넘으면은 잘 안 받아준다 아니까. 그렇게 안주해버려요 그 제도에. 서울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은 군단위에서는.

Q: 부산은 큰 도시라서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A: 여기는 부산에서도 변두리거든요. 최저생계비는 너무 높아요. 1인은 높은 건 아는데 왜 이런 말을 하나면 수급자 1인 가족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다 그러면 정부에서 생계비가 나온다고 아입니까. 그러면 수급자 아닌 가정, 수급자 조금 벗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집에 가보면 아들이 어찌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밖에 안줘요. 고정적으로 안줘요. 38만원 7천원이라는 돈을 안준다고.

30만원 주다 20만원 주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는 수급자가 더 낫다니까. 현실적으로 차상위계층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부양의무자 기준 강화할 필요도 있지만, 수급자가 더 잘사는데 머. 전부 다 감면이잖아요. 전화, 전기 감면해주고.

Q: 딱히 벗어날 유인이 없다는 거죠? 취업을 해도 소득이 높지 않으니까.

A: 안 오는 사람은 그렇게 안주해가지고.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 가면 80%가 노인, 장애인 환자고 20%가 젊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도 옳은 사람이 아니고. 생각이 제대로 있고 마음이... 니 언제 시비 걸려고 하는지 그것만 딱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가기가 겁납니다.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관에서 누가 이야기해도 잘 안통해요. 뭐 하려고 하면 이의를 제기하고. 따지려고 하고. 예전에는 가세요 하면 갔는데, 요즘은 뭐 때문에 가야되는데? 이렇게 반문을 하고 안 되요. 그래도 자꾸 꼬셔야 되요. 저기 희망터에 가보세요 거기가면 월급도 잘 줄거고, 기술 없어도 되고. 거기는 대부분 노동 집약산업이고 요리사라고 해도 자격증을 딴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 두부사업이라고. 판매사업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Q: 두부요?

A: 올해부터 두부를 국산 콩으로 해가지고 찍어내는 거 같아요.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판매하는 데, 사는게 다 그렇지요. 영세민이 영세민이라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 능력이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취업을 한다 했는데 그 계통에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로 생산업.

Q: 자활사업해서 취업 성공한 사례도 좀 있나요?

A: 그런데 저희가 분기 보고 해보면 거의 70%가 가족. 자활성공이라는게 자기 배우자라든가 자녀가 취직을 한다든가.

Q: 당사자보다?

A: 당사자는 자기가 취직한 경우는 2-30%. 대부분 부양가족이 취직을 하지요.

Q: 그러면 참여자가 성공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A: 저희들은 한 달에, 자활특례까지도 성공에 포함을 하거든요. 한 10명 정도, 빠져 나가는 사람 있고 또 그만큼 들어오고.

Q: 자활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자활특례까지 합쳐서.

A: 여기 한 500명 됩니다.

Q: 500명 중에 한 달에 10명 정도

A: 예. 490명 정도. 자활하는 사람만. 취업대상자, 민간위탁은 아까 말한 희망터, 북구 자활,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사회적 일자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재활용선별장이나, 비닐공장, 거의 금곡동 있는 사람이 70% 동 전체의 수급자는 8000세대거든요. 여기는 3600. 영세민 아파트만 한 4600세대니까. 전국에서 서울 강서구에 등촌동인가 그 다음으로 여기가 많다더라고요.

Q: 아 동단위로요?

A: 네. 부산에서는 여기가 제일 많고. 다른 동의 동사무소보다는 클 겁니다.

Q: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로유지형 말고도 다른 자활관련 참여자들도 관리하고 있으신 건가요?

A: 여기서는 규정대로 하면 근로유지형만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희망터라든지 북구자활에서는 사람 구해 달라고 전화가 오지요. 그러면 우리는 도와주는 측면에서 가라하는데 안가죠.

Q: 연계는 잘 되고 있는 거네요?

A: 구청에서 신규자는 그쪽에 자꾸 채워 넣고. 그렇게 나가죠. 제도가 없어진다 바뀐다 그러면은 만구천원에서 만칠천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안되겠다 가야겠

다 이렇게 되는거죠. 이게 하나의 방법이죠. 근로유지형 없애버리려고 하면 만 오천원합니다 이러면 이게 돈을 줄이면... 그것도 방법에 하나지.

Q: 조건 불이행자들도 있으세요?

A: 몇 명 있습니다.

Q: 그럼 어떻게 처리하세요? 통보받으시면 조건불이행 통보받으시면?

A: 저희들이 매월 20일날 구에 다 모아서 올리거든요. 결정되서 오면 그 날 그달 급여중지하거든요. 진단서 제출해야되는데 안냈다면지, 일반수급에서 조건부로 바뀌었는데 계획거부 이렇게 하면 매월 달 단위로 해서 20일에 올리면 구청에서 일괄 급여중지해서 내려오거든요.

Q: 조사를 하신 외 조건불이행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A: 1차, 2차 까지 두 번 보냅니다. 보내고 나면 다른 업을 한다든지 관심이 없다는지 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업을 하면 추정소득을 부과해가지고 3인 줄걸 2인하고, 그러면 많이 줄어요 급여가. 보통 3인 같으면 20만원 되거든요. 많이 깎이더라고.

Q: 그렇게 급여가 삭감되거나 중지되면 수급하시는 분이 와서 왜 그렇게 됐는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A: 다시 상담대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막말로 항의를 하고 저항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니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두고 보자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다시오세요. 얼마든지 다시 하면 재개합니다 설득을 해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제도가 그런겁니다 일부러 그런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셔야지, 많이 주면 말이 없는데 조금주면 짜증내니까.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머.

Q: 예전과 지금이 수급자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셨나봐요?

A: 지금은 이해가 많이 되고요. 예전에는 급여 관련해서 상당히 다툼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아는 사람은 이렇게 주는 갑다. 생계비 변동은 거의 없어요. 다만 보통 4월 30일자로 이제 자기네들 소득이 올라 간다 아입니까. 국민연금 사업주와 협약된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5만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10만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35만원 올라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양비 부과할 때 일단 1월 달에 각종 연금, 국민 연금 4월 30일자로 올라갈 때 연금 올라 갈 때 그때가 좀 시끄럽고. 제일 바쁠 때는 연초. 연초에 최저생계비가 바뀌면 또 다 뜯어고쳐야 되지. 규정 바뀌면 또 뜯어고치고. 그리고 보육료신청 받을 때 1월달부터 3월달 그때는 뭐.

Q: 선생님은 보실 때 근로능력이 충분한데 근로를 회피하거나 대충하려고 하는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A: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공짜를 많이 좋아 하시는거 같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다. 스스로 벌라고 하는게 옛날부터 자기들이 몸에 배이지 않다보니까 어떻게든 의존하고 어떻게든 타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Q: 그럼 그런 경우에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A: 부모들이 그러면 자녀들도 그렇더라고. 당연히 받아야 된다. 나라에서 주는 건데 나라에서 보조해 주는 거지. 부모도 그렇게 생각 하고 타 먹어야 한다. 부모가 그러면 자식도 당연히 그래야 하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 공짜로 주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Q: 선생님. 반대로 근로능력이 없는데 조건부 수급자가 된 경우가 있나요? 진단서 제출을 못하거나 서류가 미비해서.

A: 여기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기는 진단서 냈다 하면 그 기간에 일 못시킵니다.

Q: 근로 유지형 같은 경우도 안동 같은 경우는 일하시는 분 중에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잡아주시는 분이 있으면 분위기가 좋게 나아간다 그러시더라고요.

A: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주먹도 좀 쓰고, 그 사람 말이라면 덜덜 떠는 담당자 얘기로는 그 사람이 동사무소 대변인이다 열심히 하라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이 나가버렸거든요 또 한 사람 또 들어왔는데, 춤도 잘 추고 외모도 좋고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을 잘 따랐거든요. 쉬다가 노래도 부르고 잘 놀았는데, 그게 안 되요. 사람이 백 명이 넘으면, 각 조 별로 조장을 맞추거든요. 또 총괄 반장이 있고. 근데 한 두사람이 어제 뭘 했는지, 술을 먹고 취해서 옵니다. 정신없이.

Q: 그게 영향을 미치나요, 다른 분들한테?

A: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밤에 좀 뭐라고 하소(야단을 좀 치세요). 그러면 슬 피해 버려요. 왜냐하면 같은 동네사람들끼리 싸움붙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쪽 지켜만 보죠. 내가 한번 보자 얼마나 잘하는지 딱 지켜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면 잘못 했습니다 하거든요. 그럼 2달 있다가 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고. 그럼 주변 사람들은 참 잘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소용이 없는게 사람들은 안 고쳐지는데요 원래대로 돌아가니까요. 여기는 동 담당자가 나가면 일하는 척 하고 반장도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Q: 여기는 수급자분들이 신청하실 때 주로 어떻게 정보를 알고 신청하러 오세요?

A: 여기는 수급자 거의 80%가 전입자입니다. 신규는 예전 2-3년 전만해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Q: 아. 신규가요?

A: 엄청나게 많았는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몰라가지고 하는 사람은 지금은 거의

될 사람은 거의 다 됐어요.

Q: 이미 다 됐구요.

A: 지금은 살다가 셋이 살다가 자기 형제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하면 세대 동거인으로 들어와 가지고 수급자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실직을 했다 아들이.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Q: 그 분들은 이웃들이 정보를 빨리 빨리 하시겠네요?

A: 옛날에 맛을 들였기 때문에.

Q: 원래 알고 계신 분들이.

A: 그렇죠. 기존에 영세민 아파트 되면 자기들이 좋은게 일반인은 임대보증금이 한 600만원 하거든요. 수급자는 198만원이니까. 증명서류 제출하면 보증금도 줄어 들고 임대료도 줄어 들고. 이게 얼마나 좋나, 진짜 없는 사람들은 그걸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살기는 좋아요.

Q: 그럼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 살기가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A: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살기가 참 좋고요. 4~50대는 짜증 날라면 짜증나고, 왜냐면 좀 그렇거든요 가보면 노후화되고, 건물도 노후되어 있고, 근데 공기는 참 좋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면 구역질이 나.

Q: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차등보육료 지원받는 전업주부한테 돈을 지원을 받으면 지원받아서 아이를 맡길 수 있으니까 맡기는 시간동안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일을 할 수 있어서 소득이 있을 거라고 추정해서 추정소득을 부과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A: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한다 이말 아닙니까.

Q: 실제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말했기 때문에 차등보육료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했다.

A: 보편은 다른데서 사적이전 소득을 부과해서 오거든요. 현실적으로 형제집이나 부모집에 살았다든지.. 사적인 주거비 이런 걸로 해서 부과 하는게 있다 아입니까. 근데 그 기준에 안 맞고 그냥 막 20만원 10만원 내려오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다 까버립니다. 주계약자가 자기 같으면 부과할 필요는 없고, 무료임대면 그만큼만 부과하고 여기서는 근거 없으면 못 때립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예요. 근거가 없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때리면 우리가 말하는 고정화 되있는 거면 모르겠지만 근거가 없는 거는 때릴 수가 없더라고요. 때리면 내용 설명도 안되고 안내문 통지할 때 답변 자료도 안되고요. 소득 변경하는 통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답변 자료가 안되요.

Q: 결국 애를 말렸다는 것 자체로 소득활동을 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A: 예.

Q: 뭐 자활이나 조건부수급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점 같은게 있으시다면?

A: 자활예? 자활도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예 근로유지능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Q: 필요 없다?

A: 예. 다만 복지도우미하고 동사무소에 꼭 필요한 도우미하고 실제로 근로유지형이라 해서 한 동네 10명씩만 있어라.

Q: 최소한의 인원으로?

A: 예, 왜냐면 예전에 자활사업이 130명이면 많이 나가고 그랬습니다. 나가면 괜히 돈 몇 푼 더가지고 감독하는 것밖에 안보이고 생산적인 일이 없어요.

Q: 시간 때우기 용으로?

A: 예,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사람들을 민간위탁, 그 위탁에서 거기서. 왜냐면 위탁 지정된 기간이 있는데 근로유지형을 동사무소에서 많이 관리할 필요가 없더라고예.

Q: 그럼 또 일이지 않아요? 그 사람 관리하고 일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

A: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에 희망터하고 북구자활하고 두 군데거든요. 자활센터가 근로유지형이 일거리가 일거리는 사실 있어예. 사람을 보내려고 하면 안가려고 하니까 그 사업장을 보내버리는게 이윤이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1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기관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적 일자리라는 형태를 없애버리고 업그레이드 사업장에서 자활사업 다 하는게 맞다 이말입니다. 거기서는 사람이 없어 찢찢 매고 있고, 여기서는 안가려고 하니까.

Q: 그렇다고 해도 강제로 또 넣을 수는 없잖아요.

A: 여기서 사업장이 없어졌다 카든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야 안되겠습니까. 가야되고. 그냥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집중적으로 그 센터에서는 자활사업만 하니까 동 취로는 금곡동 빼고는 다른 동에는 5명 10명 안팎으로 거의 없거든요. 얼마 안 되거든요. 10개동이면 100명인데 얼마 안됩니다. 구포나 만덕이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괜히 내가 볼 때는 옛날에 취로사업, 농약살포사라고 해서 있었는데 근로유지형은 없어져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9시 출근했다 아입니다. 출석 부르고 어영부영하면 30분이거든요. 사업장 이동하는데 1시간 걸립니다.

Q: 아, 이동하는데만 한 시간.

A: 예. 뭘 하는지 4~50분 걸려예. 그래가지고 일하는데 10시다. 일하는데 1시간입니다. 그럼 또 밥 먹으러 간다고 뭘 하는지 모이면 1시 반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한 두시간 밖에 안되예 예? 한 곳에 모아가지고 우리 말하는 사업장에 민간위탁해서 우리 여기 좋은 환경 재활용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뭐

30명 정도 일하거든요. 거기는 여름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서 잡일이라도 하면 재활용이니까 쓰레기 분리할 때 하나 더 거들고 하면 되겠는데. 근로유지형 아무 필요 없습니다.

Q: 인력을 적절히 배치할 수만 있으면.

A: 예, 그렇죠.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있는 동은 근로유지형 몇 명 이상을 배치하지 못한다 하는 규정을 두면.

Q: 규정을 딱 정해서.

A: 예, 그렇죠. 10명 안에는 넣고 그 이상은 안 받고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주면. 여기서는 내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Q: 임대아파트 많은 단지에 가면?

A: 예, 여기 영구임대아파트 몇 세대 이상 동은 근로유지형 10명 이상 배치를 못한다 딱 규정을 두면 10명 이상은 못둔다. 그러네 그럼 그리 이야기 하면 되겠네 그럼 그리 이야기 하면 되고. 그럼 사업장비는 남은 사람 몇 명 내주고 나머지는 다 가야한다 그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거기서 관리하면 예를 들어 노임을 만구천 얼마 주는데 그럼 거기서 관리하면 되던 안되던 뭔가 만들어 낼까 아닙니까? 공짜가 없더라 일을 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Q: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

○ 조사지역 : 중소도시

○ 응답자 개인사항

성별	연령	학력	근속기간	자격증 여부
여	30대			사회복지직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 07년 천안 워크숍 참석자로 조사에 대해 호의적이었으며, 중앙의 제도 관련 진행 상황에 관심이 높았음. - 진단서를 통한 조건부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다소 높았으나, 그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평화2동은 수급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전담공무원은 그들 나름의 네트워크를 통해 수급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생각했음. - 수급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며(수급자에 의한 전담공무원 살인사건이 있었다고 함), 수급자들과 갈등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음. - 근로능력 판정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대충 점수 주고 있는 듯)으로 보이며, 이후 조건부 수급자 즉, 자활참여자들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 - 조사 중 '충실한 상담' '사례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을 거듭 강조하였음.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의 인원 보강이 여전히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됨.

A: 자활사업만 보내놓으면 사업장에선 사업만 하고 구청에서는 돈만 주고 거의 업무들이. 자활사업이 예전에는 꽃이라고 했었는데.

Q: 별도 법안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짧게 녹음 좀 하려고.

A: 네.

Q: 선생님 그러면 동에서 하는 자활근로 하는 분 안계세요?

A: 자활 근로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을 공문만 저희가 구청으로 보내요. 그러면 구청에서 배치를 해주시고 그러면 임금 어떻게 주었다 적용해서 생계비만 줄 뿐이지 어떻게 다들 자활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는데.

Q: 그럼 처음 봤을 때는 초기상담하고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나이가 됐다고 했을 때, 자활지원계획을 세우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다 그냥.

A: 자활지원계획을 세우는데, 한 세대를. 지금은 책정을 저희가 안 하잖아요. 그럼 상담을 하고, 책정을 해서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자활지원계획 세우고 들어 가는게 안되죠. 내려오면 그걸로.

Q: 서류상 이렇게 정리하는 건가요?

A: 자활에 대한 계획도 나중에 한꺼번에 세워지게 되지 그것까지 일일이 꼼꼼하게 못 세우고, 본인이 내가 자원 사업 하겠다 하시는 분들만 저희가 올리죠.

Q: 그럼 만약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 조건부과나 조건제시유예자도 아닌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냥 하기 싫다 이러시는 분들도 생계비를 그냥 안 해주는 걸로 그냥 처리를 하시나요?

A: 예, 만약에 하기 싫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추정소득 하는 정도, 그 정도로.

Q: 그럼 판정이나 그런 것들은 다 구청 쪽에서?

A: 판정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강하게 못하죠.

Q: 이게 얼마나 되십니까? 자활참여 대상자, 조건부 수급자가?

A: 조건부 숫자가, 글썄요. 저희는 숫자를 봐야 하는데요. 여기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질환자, 독거노인 그런 1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일단 진단서 하나 갖다 주면 거의 다 저희가 그냥 고맙죠. 작업이 어렵다 보니까. 근데 그것을 저희가 올해부터 조금 내용을 보려고 하고, 의료 쪽 관리사기 있기 때문에 진단서를 봐주시라고 해서 직접 그것을 판단을 내린 의사와 통화를 해보기도 하고 그렇지 그 이전에는 전혀. 이전엔 진단서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Q: 그 업무도 꽤 많으실 텐데요. 그것을 의사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하고?

A: 일일이는 다 안하고 죽어도 일을 시켜야겠는데 진단서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만 저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 이렇게 하루 종일 있으면 민원인들도 많고, 그 다음에 다른 여타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활은 거의.

Q: 여타 업무라는게? 사회복지 업무 이외에 동 업무?

A: 우리 쪽 업무여도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아까 보실 때, 쌀 얘기 택배회사에서, 복지부에서는 택배회사에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그것은 안 끝났거든요. 쌀이 왔네 안 왔네, 쌀이 좋으네 안 좋으네, 게다가 이 쌀을 다시 돈으로 줄 수 있네 없네 하는 그런 것이 한 일주일 이상은 가요.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진짜 우리가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죠.

Q: 근로 능력 판정 점수 매기고, 이렇게 일대일 상황에서 그런 것을 전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A: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예전에는 저희가 책정했을 때는 그래도 세대를 파악을 했어요. 그래도 상담하고, 가구를 방문하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고 해서

저기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 작업이 없어요. 일단 저희가 보기는 하지만, 초기상담하고 올려버리고 나면 왔다고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할 여력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Q: 그럼 통합조사팀에서 이 사람이 수급자가 되고 이게 조건부 수급자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까지 해서 다 알려주고.

A: 일단은 통합조사팀에서 내려와도 우리가 자활지원계획을 세워야 해요, 실제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런데 내려오면 생계급여만 줘요.

Q: 혹시 그 이 근처에도 후견기관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A: 네.

Q: 그럼 그 쪽으로만 연계해드리고는 업무가 끝나나요?

A: 우리가 하나하나의 사람들을 그 쪽에 연계를 하나구요?

Q: 예. 보내고 나서 관리 그런 거는 안 되는 거구요?

A: 저희가 자활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 기관이 있으니까, 지금 자활사업의 양이 많이 줄어들자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올려서 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거기 가서 오케이를 받아야 하니까 그 쪽 기관으로 직접 가서 상담하시도록 보내드리죠.

Q: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A: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Q: 전국적으로도 한 6만명에서 7만명 정도밖에 안된다고 그러던데.

A: 아니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활사업을 해서 한 6~70만원 받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면서 생계비로 받아야 되니까.

Q: 작년에 갔을 때도 진단서 내놓고 일 안하고 저쪽 댄 데 가서, 막 주유소 가서 일하거나 댄 데 가서 일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여기도?

A: 다 그렇죠 모. 왜냐면 생계비에서 깎아버리기 때문에.

Q: 사실 30% 갖고는 택도 안 되는 거죠?

A: 그렇죠.

Q: 만약 이걸 늘린다면 어디까지 늘려야할까요? 저희들이 예산처 과제할 때 같이 하였던 박사님은 그것을 100% 까지 가야한다 말씀하신적도 있는데.

A: 100%로요? 임금을 좀 올려주시는 건 어때요?

Q: 그런 말도 있더라구요. 3만원 2만원 별로 차이도 안 나고

A: 예. 차이도 안 나고. 그리고 이것으로 해서 내가 이걸(일반노동시장)로 가서 돈이 좀 많아야, 우리 그 수급자를 버리고 내가 여기로 가겠다 그런 저기가 생기는데 지금은 임금이 70만원 이러니까 차이가 없자나요. 그리고 이것(수급)을 포기할 만한 것은 안 되자나요. 어떤 희망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70만원 그거 받겠다고 수급자를 버릴 수 없잖아요.

Q: 그렇죠. 연구된 것을 보더라도 거의 100% 다 수급자로 남는다고.

A: 금액을 좀 더 올려주셨으면, 예 임금을. 이것(자활사업 임금)을 받으면 일을 하면 그래도 백 만 원이 넘어가고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생계비하고 갭이 커지는 거니까 실제로 그것을 받으면서 다른 일자리 있잖아요, 식당을 간다거나, 어떤 다른 일자리하고.

Q: 큰 차이 없자나요? 더 낮던지.

A: 우리는 더 낮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해줘야 그 일을 하면서 관리가 되겠죠.

Q: 그렇죠. 결국엔 돈인데. 근데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일을 통한 복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자활 쪽으로는 많이 갈 것 같은데 이제 그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A: 그리고, 자활사업 하시는 분이 그래도 수급자들 중에서 그나마 가능성 있는 분들을 할 것 같아요. (탈수급할 수 있는) 왜냐면 의식 자체도 뭔가 하려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고, 주로 건강하신 분들이 자활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활사업하면서 자활사업장에서 나름대로의 교육도 되어 지고. 자활사업하시면서 다른 거 많이 하시자나요. 교육도 많이 시켜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더 커요. 그리고 생활 실태라던가 자녀교육이라던가 그런 부분도 다르고. 확실히 자활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니까 애들 교육도 확실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Q: 실제로 그럼 그런 분들은 급여를 올려주고 자녀에 대한 교육이라던지, 통합이나 개별이나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A: 그렇죠. 그런 그 분들은 지금 그렇게 해주면 나름대로 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일을 하시면서. 임금도 지금은 한 80 받고, 3인 가족에 임금이 80나가면 생계비가 조금 나가요. 생계비 조금 나가고. 이분은 여기에 이것(자활사업)을 안한다고 하면 한 백 만 원, 백 이십 만원 여기는 전주 같은 도시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버니까. 일단 보통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60년대, 70년대 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식당 모 하면 백에서 백 이십, 그 다음에 고급직종에 있다. 내가 뛰어 봐야겠다 하면 유흥업소나 그런데 가면 이백까지도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볼 때 여기에 가지고 이 분들이 여기에 남아야 되자나요. 여기(수급)에서 살아서 나가야 되자나요. 나가려면 이 제도 가지고는 죽어도 안돼요. 이 상태로는. 그런데 이 금액(자활사업 임금)이 조금 올라가지고 한 백이십 정도 되고, 여기에 다시 학비가 지급되고 하면 아무래도 희망이 보이자나요. 그런데 여기 이분들이 이걸 안하고 여기로 가면.

Q: 다 떨어지죠. 돈 밖에 없으니까.

A: 예. 학비나 교육비로. 학비 댈 것이고. 근데 여타의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수급자의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는 영구의 임대료 자체가 들려져 버려요. 여기(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정도로 임금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자활사업에 있어야 되는 분위기가 없자나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힘든 게, 자활특례, 자활특례하고 그 다음에 자활특례에서 차상위로 갈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반 조건부 수급자에서 자활특례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료랑 같이 가니까. 의료가 같이 따라가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근데 여기에서 차상위로 갈 때, 의료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차상위로 강한 저항이 나타나는 경우에, 특히 50대 1인가구일 경우에 이분들이 자활사업을 하면 60만원~70만원 정도를 받으세요. 그럼 다시 여기로 오시려고. 그런 거 주위에 보면 몇 달 간격으로 있어요. 3년 지났으니까 당연히 차상위로 올려 보내는데, 외부의 온갖 압력과 지자체는 그런 게 강하잖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안이 최고 오너까지 갈 정도로 심했죠. 이분이 막 몸부림을 치니까. 끝까지 가서, 시청까지 가가지고 몸부림을 쳐버리니까. 그 동안에 시달림이..그게 얼마나 큰데요. 여기저기서 부르고 하면 설명을 하고 하면...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되죠. 이제 좀 될 때가 됐잖아요. 여기 자활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몇 명 안 남고 다 넘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심해요. 근데 여기서 이 금액이 조금만 더 크면 그래도 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Q: 초기 상담하실 때 그래도 선생님께서 근로능력 판정은 하시는 거죠?

A: 그렇죠. 판정을 해서 보기는 하지만 결정은 위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도 예전처럼 하나하나 다 점검하지 않고, 바빠요. 저희도. 빨리해서 올려줘야 하니까.

Q: 그래도 선생님이 중요시 하시는 판정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진단서 말고요.

A: 일단 직업 이력보고요. 그 동안의 직업 이력보고 학력보고.

Q: 재량점수 주실 때는 보통 몇 점을 주시나요? 다 20점 이시나요?

A: 관상 보고요. 의지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렇지만 대부분들이 안하려고 하시니까. 강제로는. 특히 이제 저희가 힘든 거는 영구임대는 세력화 된 지역이에요. 저희가 누가 얼마 돈 받는 것 까지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서류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강하게 못해요. 다른데서는, 우리가 만약에 이분 진단을 가져오더라도 추정소득도 반드시 매겨서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못해요. 진단서가 와서 저희가 보면, 우리가 이분은 일을 할 수, 하겠다라고 수정하는 분들이 있자나요. 진단서가 와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다 판단되는 분들이라고 해도 추정소득 못 매겨요. 단체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서로 공개를 해서 나 얼마 너 얼마 이렇게 하겠다하고 세력화 돼서 한 번에 할 때 집단민원이 와요. 특히 전화 같은 거 많이 받고 그러는데, 비오는 날에 조심해요 저희가. 그런 집단화된 그런 것 때문에, 정신질환자나 그런 분들은 비오는 날 그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화오고 하는 날도 야근을 하고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기는 좀 외졌어요. 밤 되면 여기는 다 주택가가 아니고 캄캄하고 저희들만 남았고 하기 때문에 남아있을 때는 되게 무서워요. 특히 그런 전화 왔을 때는. 그런 말을 자주 들으니까. 밤길 조심하란말도 듣고 하니까. 많이 들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알고 있으니까. 상담하다 보면 과거 이력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게 좀 있죠. 좀 힘 들어요 그런 부분은. 다른 데 비해서.

Q: 주로 그게 생계급여 쪽입니까 아니면 자활쪽?

A: 제가 생계급여하고 자활 같이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활도 하나하나 봐드리지 못해요. 자활특례도 3년 지나면 차상위로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모든 수급자들을 다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구역이 나누어져 있자나요. 그래서 이 분 3년 지났으니까 차상위로 처리해주세요 라고 각 담당하시는 분들께 말하죠. 이 분 소득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더 봐주시라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구역이 다르니까, 내 지역이 아닌데 내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Q: 담당은 자활은 선생님 혼자?

A: 자활, 특례, 그 다음에 담당 통 있고. 영구임대 아파트나 주거급여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영구 임대나 주공 임대나 장기임대 그런 거 신청하는 거 받고. 그 다음에 기타 모든 공문 오면 그것을 국민기초에서 다 처리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수급자라는 말만 들어가면 경제지원과 같은 다른 과 공문도 다 저한테 오고하니까요. 제가 다 해야 되고. 왜냐면 수급자가 들어가니까. 자꾸 담당 업무 맡으신 분이 이젠 니 업무다 자꾸만 연배 있고 그러신 분들이 그러면 처리해야죠.

Q: 그럼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근로 능력이 있어 보여도 어쩔 수 없이 없다고 결정을 할 수도 있게 된 경우도 있고요. 그럼 그 쪽 말고 다른 분들 중에서 근로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없다고 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A: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저희도. 그냥 저희가 접어야 되자나요. 어떤 부분은 그냥 우리가 수용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수용 하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 담당들 중에서도 우울증이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울증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닌데, 분명이 아니자나요. 내가 판단해도 아니지만. 이것을 내가 싸울 힘과 저기는 없어요. 이것을 내가 동사무소를 발각 뒤집고 할 정도 까지는 나도 그럴 용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접고 들어가면서도 이제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참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우울증에.

Q: 진단서를 때어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으시겠어요. 그게 있으면 우선 조건부라도 되니까.

A: 네. 그리고 그분들도 이미 다 알아요. 이미 다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도 다 알죠. 모르지 않죠. 그래서 어디어디 아프다. 다 아프지 않다고 하는 분은 없어요. 다 아프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할 때,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튼 나와요. 진단서가 어떻게든 나와. 그래서 저희가 진단서에 대해서 의사들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강화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의사는 환자가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써줘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들이 흔히 있는 당뇨, 관절, 허리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자나요 그러면 내용으로 써오자나요 이것 때문에 6개월 이상 근로를 못할 것 같다 의사가 딱 써서 와버리니까. 이 당뇨가 그냥 약만 먹어도 되는 당뇨지만 병원 가서 우긴단 말이에요 환자가. 이거 나 써줘라. 이거 써줘야 자기가 산다. 이러면 의사가, 정말 대학병원 의사나 그런 병원 의사 아니고는 그냥 대충 써줘요. 이 분들이 주로 가는 병원들이 주로 동네, 그리고 그런 데를 자주 가다보니까 써주게 되요. 그리고 가지고 오면 의사가 분명히 일을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일한다고 해요.

Q: 그럼 그런 경우는 조건제시 유예 했다가 다시 3개월 지나면 조건부 되자나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나요? 수급자들이 싫어해서 별로 없을 것도 같아서요. 그러니까 제외자였는데, 이렇게 다시 조건수급자로.

A: 네, 네 조건부수급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느냐고요? 없지요. 한번 진단서는 끝까지 그런 진단서니까. 왜냐면 한번 피어 줬는데 그 다음에 못 피어줄 이유가 없자나요. 우리가 진단서를 관리를 해야 하니까. 어쨌든 그 내용이 과대포장인 줄은 알지만 요청을 해요. 6개월 지났으니까 다시 한 번 떼어오세요. 뭘 때 되면 전화를 해야죠 또. 그러면 진단서 척척 갖다주죠.

Q: 그럼 보통 사후관리는 전화로 보통 많이 하세요?

A: 네. 나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문제가 있죠. 나가가지가 않아요. 한번 나가면 두 세 시간 나가면 다음 또 두 세 시간 늘어지고 하니까 안 나가죠.

Q: 진단서 중에서 몇 퍼센트나 진짜 신뢰할 수 있으신 것 같으세요?

A: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죠? 한 60% 정도.

Q: 혹시 이 사람은 정말 안 됐고, 정말 상황이 어렵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진단서는 제출 못하고 하는 경우, 뭔가 안 돼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유통성을 발휘하신 적은 있으세요?

A: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맘대로. 이번에 군대를 갈 애기, 만들었긴 만
들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가야되는 애기니까 우리가 소득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하냐 그랬더니 그냥 집에 있다고 그래서 그럼 추정
소득을 잡아야 되니까 한 번 상담을 하러 오라고 그랬더니, 주변에 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가 좀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구요. 할머니랑 같이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조금. 그래서 어느 정도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 많이 그래서 전혀
어디 나가서 근로 이런 거 하기 좀 그렇다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제. 군대를
가야되는 애기고. 군대를 가기 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시기니까
그래서 소득을 매겨야 되는데 못 매기자나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애기한테
일을 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또 그게 직접 저기 하면 정신 그게 같이 오자나
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진단을 받으러 나올 수 있겠냐고 그랬
더니 한 번도 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 진단이 나올 수가 없지요. 병원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특히 경계에 있는 그런 아이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한 번
먹어본 적도 없고 상담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일단 병원을 가서 상담을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졸업하고 유예기간이 3개월이잖아요. 3개월
이 지났는데도 그냥 병원 치료를 시작하라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뭐.
나중에 끝내 받아왔어요. 군대 유예할 정도의 장애를 직접 받아왔어요.

Q: 추정소득 부과하고 그러면 쫓아오는 분 계세요? 무슨 근거가 있냐고?

A: 그렇죠. 근거를 아무리 대도 나 못한다. 아프고 뭐가 어찌고. 우리가 또 무서운
게, 일단 우리가 상담 기록을 통해서 알고는 있잖아요. 이분이 어떠한 분이
다라는거. 우리 지역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우리 직원이 그런 거
는 아니었는데, 수급자 집 초인종을 눌렀나, 두드렸나 그랬어요. 없으니까 한
번 더 했겠죠. 그래도 없으니까 뒤돌아서 왔겠죠. 그랬더니 귀찮게 했다고 와서
칼로 한번 찌르는 살인 사고가 발생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통장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벨 한 번 누르고 나서 없는 것 같으면 그냥 와요.

Q: 작년에 부친인가 그 쪽에서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난 적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혼자서는 절대 못 다니시겠어요?

A: 같이 나가요. 그래도 우리 직원들 밖에는 없으니까. 그래도 앞에 가던 분은 살았다고 하고 뒤에 있던 분만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더 두려움이 있죠. 아무래도.

Q: 수급자들은 진짜 몰래 몰래 일을 하고, 택시타고 왔다 갔다 해도 주유소 그런 것들이 거의 안 보이던데, 일할 데는 있나요?

A: 여기요? 여기 우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Q: 멀리 나가서 일하시나요? 몰래 일하시는 경우...

A: 식당이나 뭐 이런 가내수공업 이렇게 하는 데는 모르지요. 우리 동네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우리 눈에 띄었던 분들은 여기 주변에서 간 크시게 식당에서 일 하는 분들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갔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그 돈이 더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고. 안 들키죠.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수급자 얼굴 자체를. 그리고 이제 지금 사회복지직은 주민 전산을 못 보자나요. 주민 전산 자료가 우리한테 없자나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편법으로 주민 전산을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주고 그냥 썼어요.

Q: 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랑 다른 거예요?

A: 예. 새을 행정 그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주민 등록 여기 전출, 전입증 만들고 하는 그런거. 저희는 전혀 없어요 권한이. 그 동안에는 주민 쪽, 우리가 아이디어를 빌려서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저희가 감사 결과 걸렸어요. 이게 너무 많이 과다로. 특히 우리 동 같은 경우는 과다조회. 우리가 계속 찾고, 부양의무자 찾다 보니까 조회 수가 어마어마하게 뜬 거예요. 도에서 저희를 찍어서 내려왔어요. 저희 동을. 그래서 우리 쪽 다 회수하고 없어요. 그러면 수급자 전출 하나만 가지고도 저기로 쭉쭉 가서 봐야하고, 근데 왜 그걸 우리한테

데 안주는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타 도나 그런데 같은 데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쭈루룩 갔다가 보고. 특히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도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한 남편이 있으면 이혼이 해서 서로 남남이 돼서 살면서 애기 엄마만 애기들이랑 있다고 와서 신청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도 일 보러 올 때 아빠랑 같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도 또 이렇게 모를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주민 등록이 자유로울 때는 항상 보면서 이렇게 사진을 확인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알고 있어요. 특히 오고가며 주민등록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아빠되시네요? 그러면 바로. 이혼을 해서 둘이 손 잡고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자나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우리도 봐요. 줄서서 기다렸다가 주민등록 하나 떼고, 뭐 하나 떼고 하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 업무도 같이 하라고 하는 판인데 이걸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 못보고 그러는 게 좀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위에서부터 저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권한을 주셔서 우리가 이 쪽 일을 하는데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Q: 아까 말씀하셨던 식당에서 뵈 아줌마처럼 조건부과제외자로 되어 있는데 근로를 하고 있다거나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백이라고 치면?

A: 백이라고 치면? 실제로 아픈 사람들 빼고요? 실제로 아파서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느 수치를 불러야 할지.

Q: 작년에 몇 분 만났을 때도 보면, 근로 능력자로 보이는 분만 대상으로 해서 정확하게 지침대로 따라갔을 때 탈락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고 여쭙보니 사람마다 다른데 거의 50% 이상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진짜 지침대로 정확하게 했을 때는 한 50% 이상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A: 50%까지는 안 되고. 지역마다 특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요 지역은 여기까지 오실 정도 되면 많은 부분은 손상을 입으신 분, 일은 할 수 있되, 손상이

있으신 분들도 오고 하니까.

Q: 심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A: 네. 그렇죠. 아주 건강해서 그래도 저기 하겠다 하는 분들보다는 조금 일정 부분은 저기가 손상이 돼서 정상적인 그야말로 정상적인 능력은 없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정상적인 것은 아니래도 아예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뻗는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Q: 그럼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자활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낭비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자활의 목표는 이런 분들을 일을 시켜서 벗어나게 해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거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엔 자활성공률이나 하는 것들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A: 한 30%정도. 한 70%정도는 실제로 근로 무능력한 분들이고.

Q: 그럼 그 30% 정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저희가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따로 재조사해서 탈락을 시킨다던가 하는 일은?

A: 인정. 그 40%를 저희가 재조사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그건 경우도 관리를 하죠. 근데 저희가 이것을 쪽 가지고는 있지만 이것을 살펴 볼 시간은 별로 많지 않아요.

Q: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산 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 인가요?

A: 전산 보다는 좀.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왜 그럴까 그렇기도 싶기도 하네요. 그냥 바빠요. 늘 그렇게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못하는 싶기도 한데요. 주민등록 쪽 직원은 6시 되면 딱 가는데, 어차피 일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지금부터 해가지고는 내년 한 4월까지는 바쁘죠.

Q: 겨울에도 더 바쁘세요? 연말에?

A: 그렇죠. 연말이 되면 얼마나 바쁜데. 연말에 되면 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연말 연초. 그렇게 하는 게 많고. 얼마나 몰아붙이는데요.

Q: 계절별로 수급자 수가 차이가 나고 막 이런 거는 없나요?

A: 계절별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급 중지 이런 것은 5월부터 9월까지 끝내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전산에 명확하게 취직에서 갑자기 월급이 막 뜨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저희가 5월에서 9월까지 그때만 중지를 시키고. 왜냐면 겨울에는 정말 중지 시키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분들 연료비나 돈 들어가는 게 딱 보이잖아요. 영구임대에 살지만 관리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한 달에 내는 공과금이 15만원이 넘어요. 그러다보니 그 시기에 중지하면 그 반발을 저희는 감당 못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시기에는 정말 중지하면 안 될 그런 사유 아니고는 이 시기는 중지 안 시켜요. 못시켜요. 아까 우리가 엮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아닌데 그러면 엮어서 하는 시기는 딱 5월부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조사가 엄청 내려왔어요. 정권 바뀌면서. 조사 이것저것하고 특히 수급자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막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한 30%. 기억하고 있는 30%에서 여기에 걸리면. 아무것도 아니래도 여기에 걸려서도 변동이 없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걸렸는데 자녀의 월급이 우리한테 통보되어 왔어요. 그런 경우에 변동이 전혀 없어요. 부양비 적용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복지부 자료에서 이게 왔는데 아들이 뭘 벌더라 하고 이렇게 가끔씩 띠어와서 조금씩 잡아서 이전 소득을 잡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일을 하죠.

Q: 근로 은닉하거나 소득 은닉하면 징역 1년, 500만 원이하에 벌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적용하는 사례는 없으시죠?

A: 그러니까 저희는 지침도 제대로 적용을 못하는데 그거를. 거기에 따른 벌을 못 하죠.

Q: 65세 이상이 되면 근로 무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분들 중에서도 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자나요. 그런 분들한테는 추정소득 그런 거 하세요?

A: 추정소득은 못 잡고, 일단 본인이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은 우리도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소득 잡아놓은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65세기는 하지만 일 할 수 있거든요. 70세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특히 우리가 농촌지역이 같이 있어요. 여기가 참 복잡한 동이에요. 평화 2동이 다 있어요. 다 농촌 동 있고 영구임대 동 있고. 아무튼 농촌동이 있기 때문에 미나리깡, 미나리 캐는 그런 작업 할머니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가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잡아요. 특히 어디 가서 뭐 하고 그런 분들은 경비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국세청으로 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잡고, 일을 해도 진단서 내놓고 하시자나요. 그러면 우리가 연세가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는 못 넣죠. 진단서도 있고, 65세가 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전소득이나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해요.

Q: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말도 어려운 사적이전 등으로 급여를 깎는다 그런식으로 기사에 났었는데요. 자활후전기관 이런 분들 하고는 자주 만나고 그러시나요? 일 같이 사업하시고 하는 복지관에 있는 분들이랑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여기는 보내기만 하고. 그거 자료 받아서 급여주고?

A: 일 있을 때 전화만 해요. 제가 평화 2동에 오면서 제가 구상했던 게, 하려고 했던 게, 여기는 복지관이 많아요. 임대주택이 있고 하니깐. 저희 직원들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모임을 해봐야겠다. 근데 못해요.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같이 우리가 부딪힐 시기가 있어요. 연계가 되고 서로 친밀하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고 이웃돕기 시즌에는 서로 중복도 안 되게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안되더라구요. 제가 그쪽에 있을 때부터 그 쪽으로 가면 내가 그거를 해야되겠다. 나도 그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온지 1년 반 정도 지났거든요. 제가 그 꿈을 올 초까지는 쫓아쫓아. 지금은 조용히 내려놔어요. 특히 제가 국민기초 쪽 며칠 전에 공문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때 공문 제목이 뭐였더라. 급여의 이중지급에 대한 조사를 해서 올리라는

공문이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직원이 언니가 옛날에 그분 조사 한 것 같은데 또 하나요 그래요 내가 이거 했어? 그랬더니 했대요. 옆에서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분석을 하는 것을 들었대요. 왜 이게 이렇게 나왔고, 그게 돈이 잘 못 들어간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전산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봐야되잖아요. 내가 중얼중얼 하면서 그걸 했었나봐요. 그러니까 옆에서 들어서 자기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서너 달 전 일인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왜냐면 조사 작업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뭐 해서 보내라 뭐 해서 보내라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때마다 다 하니까 작업을 하고 나서 정작 저는 그 작업을 한 기억을 못해요. 정말 모르냐고. 근데 그게 정말 하예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달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저렇게 해서 내려오고.

Q: 몇 년 되셨죠? 사회복지 일 하신지가?

A: 한 10년 조금 못 된 것 같아요.

Q: 한창 바쁘실 때 부터 제도 바뀌기 시작할 때부터 하셨네요?

A: 네 근데 지금처럼 바쁘진 않았어요. 국민기초 할 때도 한창 조사할 때는 새벽 4시 5시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 때도 이렇게 바쁘진 않았어요.

Q: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A: 일이 늘어났잖아요.

Q: 사람, 수급자가 늘어난 것 말씀이세요?

A: 아니, 우리 복지업무 자체가 늘어났어요. 지금 몇 배 늘어난 거예요. 제가 노인 쪽 일만 해도 몇 가지가 늘어났고, 우리 국민기초 쪽에도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요즘에 차상위까지 한다고, 차상위까지 업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주 간단하가 요즘 전화, 통신요금 할인 해주는 게 내려 왔잖아요. 최근에 차상위까지 확대된 거. 그런 게 상담하고 발급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업무가 커

요. 우리는 따로 한 분이 안내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 자체가 많다보니까, 우리 수급자가 한 2천 5백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차상위까지 와가지고 그거 떼어 가면. 우리 너무 정신 없어요 그거 떼어주느라고.

Q: 저희들은 차상위까지도 잘 도와줘라 하는데, 결국에 그거 하면은 선생님들을 늘려야 한단 소리네요. 전담공무원 선생님들을...

A: 그렇죠. 우리 수량 그대로 두고 업무만 계속 늘어나면 그리고 그 위에서 얘기한 대로 행정직과 같이 업무를 하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잘못 됐다는 거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차상위까지도 해야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소득 수급자 오면 무조건 우리가 해야 하니까요.

Q: 전에 말씀 들어보면요. 자활후견기관이랑 연계 하실 때, 근로능력이 있다고 해서 보냈는데, 실제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일을 못하는 사람을 보내서 동사무소 선생님들이랑 갈등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없으세요?

A: 글썄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활후견기관으로 갈등도 있고 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나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활후견기관하고 동하고 그게 막 관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거의 그냥 주로 많지 않아요. 우리가 보내면 거기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특히 지금은 일자리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조건부수급자에서도 그냥 안하자나요 일자리가 많이 잘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갈등의 요지는 되지 않아요.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을 보내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런 분들은 있어요. 근로능력은 별로 없는데 본인이 굳이 원한다고 하면 보내죠. 말하고 이유는 이러이러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강하게 원하니까 보낸다. 그러면 해주시는 분들도 있죠. 이게 막 취업 로비도 하고 막 그래요.

Q: 일반 직장 같은데도 알선을 해주시나요?

A: 네, 그런 것 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 50넘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자활 일자리가 근로유지형이 이번에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잘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분은 계속 자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러면 아저씨 계속 자활사업 하면 그게 자활특례로 가야된다. 그래도 하고 싶으시대요. 그러면 내가 새로 모집하는데 있으니까 한 번 가보시라고 하는데, 한 분은 되셨는데 한 분은 떨어지셨어요. 그때 두 분이 나한테 같이 상담을 왔었거든요. 한 분은 젊은 분이 고 한 분은 나이 50대, 그 젊은 분이 전날 나한테 미리 와가지고 나한테 거기 기관에다가 전화 한 번만 해달라고.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했어요. 자활의지가 강하고 계속 자활사업도 하셨던 분들이니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나이가 일단 젊으니까 노동 강도가 센 곳인데, 나이가 젊으니까 이 분은 커트라인 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됐어요 이분은. 그런데 이 분이 떨어졌어요. 다른 50대는. 둘이 같이 왔으니까 나에 대해서 전화해줬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지요. 그랬더니 내가 전화해서 된 게 아닌데 이분은 이미 커트라인 선 안에 있는 건데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 분이 와가지고 나도 전화해줘요 그 래가지고 전화를 계속 해줬어요. 해줬는데도 그 쪽에서 노동 강도가 센 곳인데 이제 50대고 장애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안됐죠. 그래도 계속 오셨어요. 취업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활후견기관에도 했었고, 노동 부에도 한번 의뢰를 했었어요. 취업도 해보고 훈련도 한 번 해보고 결국엔 안 됐어요. 그 아저씨도 연세가 있으시고 그리고 노란머리 풍지머리 기르시고 그러시는데 자르셨어요. 혹시 자기가 외모 때문에 그러신가 싶으셔서 자르시고 혹시 경비자리까지도 알아보시고 그러셨는데 안 되가지고는 결국은 지금은 안 오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추정소득을 매길 수가 없자나요. 얼마나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는지 아는데. 그랬다 보니까 이분은 생계비가 나가잖아요. 일 할 때와 비슷한 생계비가 나가고 있지요. 1인 가족이니까 요즘은 안 오세요. 생 계비를 안 줬어야 맞는가. 근데 너무나 안쓰럽게 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안되지만 거기서는 쓸 수 없는 사람이지만 본인이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아예 안하고 처음부터 딱 끊는 사람들은 논외구요. 그 래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자 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라고.

Q: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통으로 지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활지원법으로 바뀌어서 따로 만들어 놓으면, 우선 걱정되는 게 선생님들 일이 더 많아 질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나아지실 수 있게 하는 생각이 저희 연구소가 자활쪽으로 많이 연구하신 분들은 법을 떼어서 별도의, 지금 같은 것으로는 안 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범위도 넓혀야 해야 된다고 법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럼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초보장제도 안에서 하는 것 보다는, 물론 그 법 안에는 자활로 떨어져 나가더라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교육이라든지 의료도 줄 수 있도록.

A: 근데 제가 아직 지금은 판단은 잘 못하겠어요. 따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 분들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진행이 될 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선불리 지금은 못하겠어요. 그게 지금 개별급여에서.

Q: 아마 작년까지는 올라갔다가 지금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아마도 일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추려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느낌에 MB 현재 정부에선 늘어나진 않고, 예산이나 지원은 거의 없고 아마 기존 자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선생님들 한테는요.

A: 그렇죠. 워낙 각종 조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저희도 암튼 그 때 하실 때 근로 능력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쪽 자활 쪽에 더 강화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좋지요 그거를 해야지요. 그렇지만 그 동안 이 부분을 계속 못하고 그랬는데 강화가 되면, 이제 법안 자체가 강화가 돼서 내려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훨씬 심도 있어지잖아요.

Q: 아, 큰 법 하나 안에 있는 것 보다는?

A: 아니, 큰 법이 아니고 법안이 강화 되서 내려온다고 하면 큰 법이든 작은 법이

든 근로능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 되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일을 하는 데도 좀.

Q: 아, 특히 기초보장제도 법 안에서라도 강화만 된다면?

A: 네. 저희는 그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아무튼 이렇게 업무를 하다보면 법이 따로 나와야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잘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래도 그게 강화 되서 사회적 부위기가 조성된다면 이제 저희도 좀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도 막 얘기 한 게 수급자한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안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은 통하거든요. 왜냐면 본인들도 이 정권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릅니다. 달라졌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우리 그 5대 권역에 대한 그게 생기자나요. 이게 생기니까 내년되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고 덮고 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덮어줄 수 없다고. 당신 내년에 들키면 환수,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그런 거 주입을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분들도 이제 그거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Q: 이게 자활과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득이 어차피 딱 드러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급여에서 깎아 나갈 때 수급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산이 오천만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급여가 이렇게 떨어져나갑니다 하면 그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거 난 돈도 안 되는데 왜 깎느냐 반발하지 않으시나요?

A: 그렇죠. 반발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Q: 더군다나 환산율이 꽤 크기 때문에.

A: 네. 그게 커요. 4.17이 굉장히 큰 수치인 것 같아요. 천 만 원만 있어도 40만원이 되기 때문에. 특히 1인 가구는. 굉장히 반발이 커요.

Q: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혹시, 10년 전이면 선생님이 일 하시던 생활보호 때

그 시기인데요. 소득이 선정기준만 되지 급여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더 수급자들에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근데 급여는 안 깎으니까요. 선정에만 기준이 되지.

A: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또 이 소득선을 넘어서지만 힘든 분들이 있자나요.

Q: 그렇죠. 그때는 나온 게 형평성 문제였거든요.

A: 지금이 그래도 반발은 있지만 지금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Q: 그러면 좀 더 제도를 개선한다면, 이결(재산 환산율) 좀 더 완화시키거나?

A: 네. 4.17이 아니고 조금.

Q: 기초연금이 연 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 5%는 너무 세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제가 고민하는 게 소득인정액은 상당히 좋은데 그걸로 집이 있다는 그 자체 때문에 4.17% 때문에 급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급자 분들이 생활하기 어려워하신다. 그런 게 느껴져 가지고 현재는 아마 그걸 개선하려고 움직임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지난번 정부까지는 부양의무자만 개선했었고 앞으로는 이제 재산의 소득환산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개선할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A: 이번에 올해, 부양자 금융을 올렸거든요.

Q: 기준은 옛날에 많이 바뀌고 바뀌진 않지 않았나요?

A: 아니요 우리가 이제 수급자 조사를 할 때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금융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못 했어요 그동안. 안가지고 와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서 못 했어요. 그리고 금융조사를 실제로도 했어요. 이제 금융 어떤 분이 많이 나와서 탈락할 위기에 생겨있으면 저희는 이 분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을 못하겠어요. 이분은 착하게 동의서를 가지고 오신 분이시니까. 이 동의서를 안 내가지고 제외 되신 분들은 보호해드리고 낸 분들은 보호를 못해주고. 그래서 그거 할 때 마다 이것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덮어

야 돼 숨겨야 돼 막 그런 고민에 빠지거든요. 이번에 전체 다 일괄적으로 했어요. 부양의무자. 문제가 많았던 게, 반발이 엄청 많았어요. 몇 달을 시달렸거든요. 통합조사표에 등록된 모든 부양자들을 자동으로 우리가 체크만 하면 됐는데, 문제는 한 번도 안했던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겠습니까. 라는 안내를 못 했어요. 워낙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사항이 은행에서 통보가 가니까. 내가 갑자기 내 금융에 대해서 이거를 한 것에 대해서, 그런 항의 전화가 전국에서 왔어요. 안 그래도 이게 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게 나가기 때문에 전국적인 스타가 됐어요. 특히 그게 금액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반감. 누가 감히 내 금융정보를 조회를 하고 말이야. 그것도 일개 동사무소에서.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컸는데 우리가 또 잘못 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막 급하게 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딸과 사위만 해야 되는데 딸과 사위랑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누구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는 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못된거니까요. 그러니까 석 달을 그런 식으로 시달렸을 거예요. 네 엄청 시달려서 저희가 복지부에 전화를 했었어요. 특히 이렇게 시달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동 것이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안내가 된 게 평화 1동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1동도 우리하고 수급자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우리는 또 조금만 했거든요. 다 해야 되는데 하다가 뺄 사람은 좀 빼고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저기니까. 나와도 문제니까.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되니까 알아서들 해 그랬는데. 나중에 다 알더라고요. 새울 시스템이 좋은 게 안 한사람 누구인지 다 나와 버려요 다시 하라고 또 내려왔고. 그러니까 예전에 보건복지 시스템일 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일을 안 해도 얼마나 일을 안 했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안했는지, 진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런데 새울 시스템은 관리자 중심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누구고 안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버리더라고요. 특히 이번엔 이렇게 해서 되었는데 평화 1동이 많이 했어요. 그거에 관한 전화가 2천 몇 건이 왔대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엄청 시달렸어요. 근데 전화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결과가 아직도 안

내려와요. 왜냐하면 어마어마 한가봐요. 전국적인 금액이 어마어마해서 그대로 내려 보내면 민란 수준의 반발이 한꺼번에 대거 탈락할 정도로 심각한가 봐요. 너무 그 금액이 큰 금액들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했으니까.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대어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수급자들은 조회를 늘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찍히고 했는데 부양의무자들은 내가 도장 안 찍어주면 못했으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했더니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이대로 내려 보내면 너무 탈락자들이 많으니까 조정을 해서 내려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올해 안에 어쩌면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까지 얘기를 하시던데요.

Q: 올해 또요? 지금 연구는 복지부랑 같이 저희 박사님이 하고 있거든요.

A: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겠다고. 금융을 못 내려 보내는데요 지금.

Q: 재산 때문에 그러죠? 재산? 결국에 금융자산.

A: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왜 안내려 보내나. 저희는 진짜 폭언과, 그담에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등급이 낮아지는가요?

Q: 제2금융권일 경우만 낮아지지, 제1금융권일 경우는 상관없을 텐대요?

A: 그러니까 항의 전화가 왔던 것 중에 이렇게 금융조회 하게 되면 신용 등급이 낮아지는데 그거 막 책임지겠냐고 그러니까.

Q: 나라에서 하는 거라 개인이 할 때랑 다를 텐데.

A: 그러니까요. 그 시기가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전화번호 뜨면 알아요. 저거 내 전화구나. 왜냐면 각지에서 오는 전화. 부양의무자가 전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내 전화다 그랬을 때가. 우리 지금 어떻게 되요 정황이? 국민기초 쪽이요.

Q: 원래는 기존 정부에서 개별이나 이런 쪽으로 갔는데, 봄에 인수위에서는 국정과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100대 과제가 나왔는데, 그리고 얼마전에 국정감사 때도 박근혜 의원이 개별급여에 대해서 질문하더라고 그걸 해야하지 않겠냐 했더니 그건 장기 과제로 하겠다하고, 그게 아마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두 개만 해서 하겠다 해서 나온게, 부양의무자랑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고치긴 고치겠다 했는데, 아마 연구가 진행되고 빠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기초보장제도에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 제가 들은게 부양의무자와 재산의 소득환산액, 그 다음에 모니터링. 모니터링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회보장제도 5개년 계획 안에는 이정도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기타 다른 것도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다 멜라민 얘기 하는데 박근혜 의원이 기초보장제도가 수급자들을 더 도와야 하는데, 그래서 효율화 되야한다 하더라고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도 많고 부양의무자 문제 때문에 얼마 탈락하고 그리고 이렇게 도와 주더라도 전달체계가 잘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A: 그래도 그분. 다른 분들보다는 그 분이 하는 게 그래도 좀 파워가 있지 않을까요?

Q: 아마도. 장관이. 전재희 장관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죠. 다음번에 대통령 되실 수도 있고. 현재 5년 안에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생각하는 건 3가지 정도. 그 외 나머지는 전산망이니 뭐 그런 게 있는데, 아마도 정리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정권에서는 이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복지 업무들이 많이 줄어 들 것 같은데, 현상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A: 줄어들지는 않죠. 늘리기는 하겠죠. 쥐어짜겠죠? 왜냐하면 늘리기는 해야죠. 이게 그러면 이분이 임기가 또 있잖아요. 5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책이 계속 갈지 또 다시 변할지가 또 이때쯤 그 이후에 저게 되는데.

Q: 아무래도 저희들은 연구자로서, 그게 호트러트리지 않고 수급자들에게 너무

나쁜 방향으로 안 가게 제도들이 개선되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한 부양의무자라든지, 재산의 소득환산, 부양의무자는 부정수급자를 잡아내는데 강한 거고, 그러면서도 사각지대, 비수급빈곤층의 폭을 넓혀 주는 게 더 좋은 것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은 환산율을 좀 더 완화해서 급여를 높여주고, 역시 비수급빈곤층을 많이 잡아주면 되는데, 예측된 최저생계비가 있으니, 많이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 과연 올해 5% 올라갔는데, 최저생계비도 그 만큼 올려줄지는... 올해 소비자 물가가 5.1%인가 올랐죠. 작년에 최저생계비 계속 하면서 2008년 거는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죠. 기자들이 전화를 하는 게,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물가가 또 오르는데 최저생계비를 얼마큼 올려주느냐 그건 저기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하겠죠 합니다. 자활도 지금 정부와 일정부분 코드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연구를 해서 같이 좋은 게 나오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선생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복지부도 같이 얘기하고 해야죠.

A: 자활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꽃이라고 되게 강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활후견 등이 많이 생기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지원도 많았던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과는 관계없이 어떤 식으로 얘기 했었냐 하면, 자활 사업하면서 자활후견기관들만 증가됐더라는 얘기를 했었죠.

Q: 옛날 예산처라든지,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있었는데요. 완전히 더 좋게, 그래서 탈수급과 투입 대비 효과가 나타나서 제도 개선이 안 되면, 잘못하면 날아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때 만난 봄에 이런 비슷한 과제를 했을 때 그 당시 예산처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상태에서 떼어서 별도로 만들자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었는데요.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요. 연구한 것이 자활급여 공제가 한 3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 사람들이 탈수급을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할까 고민했던 거구요.

A: 그니까 상여금만 고민하지 말고 임금을 더 높여주고 해야하는데요.

Q: 그렇죠. 모든 게 다 돈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계비를 또 안 올릴 수 없는 거고. 상당히 최저생계비도 고민스럽죠. 이게 도대체가 지금 4인이 110만원이에요? 140만 원 이에요?

A: 120만원 정도요.

Q: 이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언뜻 봐서 사람들은 현물급여가 빠지는 돈을 생각 안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120만원을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최저생계비 자체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최저생계비를 계속 가져가야 하는 제도나, 좀 더 정교화해서 수급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저생계비 선 하나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 너무 많고. 그리고 이것이 거의 기초보장쪽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보훈 대상자일때도 최저임금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최저생계비의 위상이 강해져서 굉장히 고민스럽죠.

A: 제가 생계비로 한달에 지급하는 돈이 얼마드라?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한 번씩 줄 때 마다 이 돈... 이게 진짜 아까 말씀 하셨자나요. 저는 지금 우리가 보호하는 수급자 중에 앞으로 30%는 더 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Q: 한 30? 40? 백 만 명 정도의 수급자가 줄어야 된다는 거네요?

A: 많아요. 특히 저희가 맨 처음 2000년도 조사를 하고, 그 시기도 굉장히 급박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못 줄이고 그냥 그대로 온 분들도 많고. 특히 허위로 속이고. 특히 그 시대가 지금에 있는 할머니들은 다 미스잖아요. 예전 시대에 그냥 호적 없었던 분들. 후처나 그러신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다 호적이 없는 분들이 수급자로 많이 들어오셨었어요. 자녀들 겁나게 많아도 호적상에는 아무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 할머니들이 막 돌아가실, 보통 70살 정도 되시는 분들 그 정도 까지는 되나요.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다 돌아가셔야 그 세대가 끝날 거예요. 그 분들이 다 수급자로 들어와 있잖아요. 자녀들은 버젓이 정말 이렇게 다 있는데. 호적상 딸 없다고 그러세요. 누가 있어서 누구세요 그러면 조카딸, 수양딸,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저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잘 사세요 살기도. 그런데 그렇지만 정말 수급자 그거는 다 하고 계시고 그래서 병원들에 항의가 많이 올 때도 있어요. 아무 관계없는 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 가서 딱 누워있어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수급자라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딸도 오고 이렇게 자식들도 와서 보고 하는 거 보니까 중형차 있는데 그게 도대체 말이 되냐 그게. 그래서 나 전화 받아요. 실제로 일 년에 몇 번은 받아요.

Q: 그 때 시대상황이 IMF라는 것도 있고 해서, 갑자기 급격하게 사람들이 어려워져서.

A: 그런 것도 있고요. 그때 그 시기. 지금은 그런 거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때는 후처 그런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 다음에 속이는 30%. 그런 분들은 빼야돼요. 그 돈이 나갈 때마다 그 식구 많고 그러면 생계비가 많이 드는데요.

Q: 차라리 그런 분들 것을 빼고 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게 맞는데요.

A: 네, 모자가정일 경우, 혼자 애기 둘 데리고 60만원 80만원 자활사업해서 그렇게 보내는 집에 줘야죠. 애기들 교육급여 뿐만 아니라 애기들 교육급여 나가면 날마다 나가는 차비가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학교가야 되는데 왜 이 돈은 안주고 교육비만 주고. 그러니까 애들 보면 학교가 일류 고등학교 있잖아요. 인문고등학교 가는 그런 애가 별로 없잖아요. 전주는 그게 심한 편이거든요 전주에 있는 인문고 갈 수 있는 비율이 50%예요. 그래서 50%만 전주에 있는 인문고를 가고 나머지는 전주 외곽에 있는 다른 데를 가야 돼요.

Q: 완주군 쪽으로 다 빠지는군요.

A: 네. 다른 시군으로. 학교가 없어요 그렇게. 50% 안에 들어야 거기를 가요. 대학교 가기보다 더 힘들어요. 전주에 있는 인문고 가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도 별로 없더라고 다 그쪽으로 빠지고.

Q: 그러다보니까 보통 수급자들이 자녀교육을 통해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면이 많은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A: 고 부분은 나중이라도 하실 때, 교육급여가 있는 데는 반드시 교통비, 책값이 나오자나요. 그런 것은 저기를 하더라도 중고는. 근데 교통비가 엄청 많아요.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용돈까지는 못 주더라도 그 비용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Q: 근데 교통비가 최저생계비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A: 그렇긴 하지만, 날마다 집에만 있는 할머니들, 그런 분들은 솔직히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우리 할머니들이 4단지 아주 가까워요. 파출소 밑에쪽인데, 거기서도 택시타고 오세요. 나 허리 아프다고. 택시타고 오시고. 아주 그렇게 넉넉한 생활을 하세요. 그런데 다른 저기 하신 분들은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노인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는 시대이긴 한데 시기가 그렇기는 한데.

Q: 아동 쪽은 표가 안 되잖아요?

A: 그렇죠.

Q: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의원인가? 거기 쫓아가서 막.

A: 노인은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 저기가 있어요. 기본 자산이 있어요. 자식이라든지, 자기가 살면서 했던 무엇이 됐던지 간에 기본이 있기 때문에 생계비가 만땅주면 넉넉한 삶을 살아요. 근데 이제 아동이나 학생이나 그런 분들은, 그런 가정들은 생계비가 만땅이어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니까 기준 이하이기는 하지만 기본 자산이 있다라고 봐야죠.

Q: 최저생계비 연구하다 보면 결론은 노인은 그동안 사회 발전을 도와줬으니 도와주자지만, 예를 들어 모부자가정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얘기하면 단칼에 거절되죠.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이 아프긴 하죠. 장애인은 당

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자가정까지는.

A: 여기도 이웃돕기 할 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그 부분이에요.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도와주세요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정부가 독거노인은 충분히 많이 도와줍니다 국가에서 이미. 애네들 안 도와주면 애네들이 소년소녀 또 되요. 모자가정으로 돌려주거든요.

Q: 부자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모자가정은 그래도 좀 지원을 받는데 부자가정은 거의 없다고 하던데 지원이, 생활이 더 어렵고요.

A: 기준 자체가 여자들은 저소득이 많잖아요. 남자들은 일정액을 벌면, 여기도 기준이 있다보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하는 선들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이라 이걸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임금 구조 자체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는 많으니까요.

Q: 새터민도 있어요? 진짜 바쁘시겠어요.

A: 없는 것도 없고. 다 있어요. 특히 새터민 같은 경우엔 한번 저기 하면 전화가 와요. 새터민 대표들이 있잖아요. 지침에 대해서 우리 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딱 한번 가서 저희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그. 점조직으로 계신 것 같아요. 나 누군데 대표인데, 이 쪽 지역 대표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많이 안살지면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왜냐면 경제활동은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자나요 지방도시다 보니까. 일정한 적만 두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미거주로 보기도 어렵고. 새터민은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반 이상이에요. 그렇다고 미거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

Q: 차등보육료라고 지급되는 게 있는데, 그에 관해 요즘 말이 많다고 하던데, 보육료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잡힌다고 하던데요. 찾아오는 분은 없으세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A: 저소득보육료 말하는 건가요? 그건 수급자와 관계가 없는 건데. 우리 지역에 아동이 엄청 많아요. 한 20%인가 1/5이었나? 1/5를 여기서 다 해요. 작년에 제가

지금 올 통계는 모르구요 작년에 완산구에 아동이 만 몇 명이 있었는데요. 우리 평화2동에 2천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요 아동이. 아파트단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거의 저소득층 보육료 이거든요.

Q: 시끄러운 데가 많았나봐요. 그것도 소득이 다 잡히니까. 급여도 깎기고 해서 말이 많았다고. 소득으로 잡히니까 깎여서 나가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요?

A: 음... 이게 차등보육료가. 그러니까 아동을 키울 경우에 1세 미만은 무조건 유예를 해주지만,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수급자 말이죠? 이제 추정소득을 저희가 일단 애기들을 어린이 집에 가면 먹여요 추정소득 이거는 보육료에도 있기 때문에 반발은 있지만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동 쪽에서도 이 부분은 엄마들이 왜 이거를 저기 하나고 이렇게 반발은 했어요. 그렇지만 설명하면 이해는 하는 편이에요.

Q: 그래도 조건제시유예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일 많은 유형은 어떤 유형 인가요?

A: 책을 봐야될 것 같은데, 질병, 환경적응 그 다음에... 진료가 제일 많아요. 간병. 있어요. 간병하고 아동, 몇 세 미만.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질병이 제일 많고 간병은 조금 가끔 있어요.

Q: 그럼 질병 이외의 것들은 일을 하시는데 어떤 기타 여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주면 어떤 조건부수급으로 되서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원해 줘야 할까요?

A: 실제로 간병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유예자인 경우는 정말 간병이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지는 않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거기에 눌러서 있으시죠. 정말 간병이 24돌봐야 되고 그러시는 분들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국민연금 쪽에서 하고 있는 거 있자나요. 요양보험이나 그런 거 가사도우미나 그런 것들을 해드리니까 보내드리고 하지만, 실제로 간병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일 못합니다 하는 분들은 한 70%정도는 아닐거예요.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것이지.

Q: 그러니까 조건제시유예자 분들도 많이 아니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A: 혹시 누구 하셨는가요? 오늘?

Q: ○○○ 할머니요

A: 할머니? 할머니가 어떤 저기로 들어가 있었나요?

Q: 환경적응으로 유형으로 나눠 있었는데요. 그 분은 노인가구이신데, 무능력자이신데요.

A: ○○○ 할머니가 그게 아닌데. 할머니하고 애기 둘. 이번에 최근에 손자가 하나 더 들어온 것 같던데.

Q: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하러 서울 갔다고 하시던데요. 아니에요?

A: 제가 담당하는데는 아니고. 애기가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기간 적응할 동안 더 해줘야죠, 생계비를.

Q: 그 할머니도 아들이 정기적으로 주는 돈이 잡하시는 거예요? 40만원인가 뭐 이렇게 받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A: 제가 기억이 안나요. 제가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담당해도 기억이 안나요. 할머니가 다른 자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부양비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Q: 막내딸도 수급자라던데요.

A: 제가 지금 그 할머니 상계를 하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상계를 하는지 몰라도. 기억이 안나요. 알아야 되는가요?

Q: 간병할 때요 간병도우미를 쓰는 사람도 자부담이 있나요?

A: 수급자는 없어요.

Q: 그 할머니는 2만원을 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따님이 그거 하신데요 간병도우미.

A: ○○○ 할머니 따님이 우리 동네 수급자인가 그럴 거예요. 영구임대 살면 일족이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동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 세 집이 이동에 사는 경우가 있어요. 할머니는 여기 살고, 할머니 다른 자녀는 여기 살고, 할머니 다른 손자 분은 여기 살고. 수급자는 이제 정보를 갖게 되면 가족들도 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수급자하면 상관없지만,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일족들이 있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안 살 수도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한집에서 살고 한집은 임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급자 이렇게 사시는데도, 이렇게 따로따로 405동에 살고 401동에 살지만 한집에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둘이 합쳐서 이렇게. 남남이어드요.

Q: 한 집은 월세나 전세 주고?

A: 한집은 그냥 전혀 남남이라든.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이 할머니가 와서 이것도 가져가고 이 집거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Q: 그럼 이런 경우는요. 뭐 빈곤의 되물림 이런 것보다는 정보를 공유해서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신가요?

A: 그런 분들도 있어요. 빈곤의 되물림이 이제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거 보다는 그것과 함께 같이 이제 또 공유되면서 저희가 안 될 수 있는 사람도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 실제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보다 빈곤이 되물림 되서 정말 손 쓸 수 없는 데는 영구임대 아파트단지보다 도시 그달동네 같은 지역이에요. 재개발 지역 같은데요. 오히려 영구임대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가 있는 지역은 그런 지역은 아니잖아요. 제가 전

에 있었던 동은 여기는 진짜 더 이상 끝이 없다 하는 데도 있었어요.. 거기는 아 진짜 0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는 희망자체가 없어요. 그런데는 희망 자체가. 빈곤이 3대 쯤 이상 되물림 되면 사람이 달라져버려요. 사람의 지능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뭐 여기서는 방법이 없고 그랬던 데가 있어요. 오히려 연구를 많이 하시게 되면 영구임대 아파트 자체보다는 그런 지역이 더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배워서 아버지가 빈곤하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일찍 결혼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살다보면 밑에 아이들도 제대로 못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이들도 그렇게 일찍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책임 있게 못 가르쳐주고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요즘은 지능보다도 암튼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지능적으로도 그렇고 전혀 그게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여기 영구임대는 오히려 그래도 자극이라도 좀 있는 곳이에요. 힘들기는 한데 본인들 스스로는 이제 자극도 있고 나름대로 공동체 의식도 있고. 생계비 통장을 정리할 때 보면 공동체 의식도 있고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 조사지역 : 중소도시

○ 응답자 개인사항

성별	연령	학력	근속기간	자격증 여부
남	40대		16년	사회복지직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 근속연수가 꽤 긴 편인데도 수급자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것이 인상적이었음. 특히 동에서 관리하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관리하고 대하는 방식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이런저런 좋은 말을 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음. 용상동사무소에 온지 2년 8개월이 되니 이제 진심이 통하는 것 같다고 함. - 수급자의 비공식적인 근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근로를 해서 획득한 소득이 월 30만 원 이하이면, 눈을 감아준다는 자신 만의 기준이 뚜렷하였음. 수급자가 자기가 쉬는 시간을 쪼개 밤이나 주말에 잠깐잠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음. 가능한 수급자에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는 편이라고 함. - 진단서도 기본적으로 발급해준 의사를 믿고, 이제는 90% 정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함. -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주었고 조사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음.

A: 2003년, 2006년 2년 8개월째니까. 2년 전인가, 작년인가 될 거예요.

Q: 작년, 작년 7월인가, 8월정도.

A: 그 땐 이제 조금 더 젊으신.

Q: 아, 네. 젊으신.

A: 참고로 우리 같은 경우는, 안동 같은 경우는 자활 이거를 일단, 시 자활 지원계에서 모집을 다 하고 실제로 동에서 하는 거는 그 뭘니까 근로유지형, 그분들 그냥 하지 나머지는 뭐 다 시에서 하거든요.

Q: 초기 상담에서 이 사람들 올리면 거기서 그럼 조건부인지, 부과제외인지 다 이런거, 판정도 다 시에서 하는 거예요?

A: 그렇죠. 우리는 동에서 일반 수급자 중에 인자... 본인이 몸이 좀... 의료급여 2종 중에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신청하면 공문을 올리면 하고, 처음에 신규 신청할 때 그때는 시에 수급자 결정하고 하면서 통합조사팀에서 하면서 이 분을 보고... 거기서 연결시켜주지.

Q: 통합조사팀에서 그럼 주로 수급자, 신규 같은 경우는 보기보다는 주로 여기서 주로 올린 서류로 주로 판단하시겠네요?

A: 그렇지. 실제로는 우리가 신청 오면 저희가 초기 상담을 실제로, 실제로 거의 뭐 95%는 만들어지는 거지. 실제로 일부 없는 사람은 대체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 92년 12월부터 했으니까. 거의 다 못 올리니까 최대한, 뭐든지 초기가 중요하니까, 거의 95% 다 만들어지죠. 근데 조사하는 것만 거서.

Q: 전산조회 하고?

A: 전산조회. 그래 하고.

Q: 거의 판정을 보면 재량점수 이런 거 쓰는 것도 보면, 거의 그 쪽에서 하기

보다는 선생님께서 주로 근로 능력 되는 조건부 수급자들 재량점수도 선생님이 거의 다 주시겠네요?

A: 점수는 어차피 자활지원이 하는데 보통 초기 의견이 거의 90%, 95% 다 반영이 되죠. 보면 척보면 안다니까. 이야기 해보면.

Q: 아, 이 분이 일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전혀 일 못할 분인지?

A: 일단 진단서하고 그런 거 감안해 가지고. 업무를 좀 하다보면 대충 안다니까.

Q: 용상동에 오신 게 아까 2년?

A: 92년 12월. 아, 여기요? 여기는 그럼 2006년 2월 27일인가, 28일. 2년 8개월 정도 됐죠.

Q: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가 한 켜다섯 분정도 되시는 거네요? 최근...

A: 최근에는 20세대.

Q: 20세대? 아, 그렇지.

A: 수급자들이 조건부 중에 중지된 사람이 좀 있어요. 2년 8개월 동안에 고 사이에 요즘은 특례 수급자들은 3년 되면 자동으로 또 중지되니깐. 조건부 분들은 자활이 빠르니까 그래도.

Q: 그나마 이 조건부 수급자들은 일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어느 정도 길을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인프라라든지 임금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많이들 안 나가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A: 이런 중소도시에서는 일을 하려고 해도, 뭐 사실 보통 조건부 분들을 보면 그냥 70~80만원,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그 정도 받는 데 잘 없어요.

Q: 아, 70~80만원도요?

A: 그 정도 잘 없거든. 근데 마땅한데 뭐 할라고 해도. 대도시는 뭐 사실 조금 뭐

비정규직이라도 하면 웬만하면 100만원은, 여는 100만원 넘기기 힘들어요. 마땅한 일, 정식직원 아니더라도 자리가 없으니까. 최근에는 뭐 도청도 오고해서 앞으로 나아지겠지만 현재는 그래요.

Q: 주로 무슨 일 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과, 과수원.

A: 어차피 조건부 분들은 다 일하고 있고, 또 아까 안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좀 탄 데로 이렇게 집수리 보통 열댓가지 있더라구요. 시에서 하는 건 시에서 운영하니까, 동에서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유지형분들. 그분들은 사실 조금 일 하려는 의지는 조금 있는데 기존에 알코올, 좀 그런 감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남자 여섯 분이고, 여자 두 분인데, 그때 참 나이가 대부분 저보다 뭐 제가 40대 중반인데 거의 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인데, 자꾸 오래하면서 있다 보면 매일 보니까 아침에 정례회의를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좋은 말 해 가지고, 이제 이게 한 2년 8개월 정도 되니까, 조금 나아진 거예요. 사고가 조금 조금.

Q: 그 사람은 계속 그냥.

A: 잠깐 된 게 아니라 내가 6개월이고 1년이고, 양도 계속 꾸준히 하고 하니까. 좀 진심으로 챙겨주고 하니까 통하더라고. 못 할 때는 마음 안들 땐 또 뭐라 할 땐 뭐라 하고.

Q: 작년에도 물어봤을 것 같은데 수급자 중에서 아, 이 사람은 일할 수 있는데 왜 일을 안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까, 혹시?

A: 우리가 한 500집 되는데.

Q: 네, 참 500이, 참 보니까 이게 진단서를 주긴 줬는데 실제 잘만 하면 수급자도 벗어나고 일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 드십니까?

A: 첫째 기본 인프라가 안 돼요. 그게 젤 커요, 지금.

Q: 아, 그게 안 좋으니까?

A: 이게 뭘 하려고 해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구나 대도시는 하려고해도 있어야 돼.

Q: 큰 공장이나 회사 이런 거 안동에 있습니까?

A: 안동은 지금 거의 없어요.

Q: 주 산업이 뭘니까?

A: 농공단지 이런 건 외곽에 있고, 이 사람들이 차량도 40만원 안 된다고 하니까. 차 몰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니 차가 거의 없고. 농공단지라고 해봐야 이런 데, 그것도 100만원 채 받기 힘들지. 내가 봤을 때 그게 제일 크지.

Q: 자활 후견기관 이런 것도 가십니까, 혹시 자활 연결해 주시려고?

A: 그건 그거는. 후견기관은 쉬웠어요.

Q: 여기서는 따로 하는 건 없고요?

A: 예. 근로 이전만 하니까.

Q: 그러면 올리면 그 쪽 사람들 시에서 주로 관리하시는 거죠?

A: 그렇죠. 모두 시에서 인자.

Q: 그럼 여기서 받아서 생계급여 측정할 때만 자료 받으셔가지고 그냥 생계급여 같은 거 측정해주시는 거구요?

A: 자활지원계에서 인자 조건부 수급자분들 돈은 거기서 거의 70~80만원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내일, 어제 정도, 오늘 오전 정도에 그걸 시에서 다하고 돈 주는 거지. 우리가 동에서는 근로유지형분들 한 달 일찍 만들어서 보내주면 자활지원계에서는 기존 자기들이 받고 있는 기관, 자활후견기관하고 읍면동에서는 근로유지하는 분들, 그 분들 자료 받아가지고 입력을 다해, 자활, 노인분만

입력을 다하면은 그 다음에 작업하는거지.

Q: 그러면 동에서는 크게 조건부 수급자들한테 하는 건 거의 없는 거네요, 그럼?

A: 우리는 뭐 실제로 근로유지형만 관리하니까.

Q: 다른 공동체니, 시장진입이니 그런 거는 다 시에서?

A: 그런 거는 다 시에서. 우리는 그거 없어도 일이 많으니깐.

Q: 그렇죠. 그거 없어도 어제도 전주 가서 봤는데 그거 없어도 죽어나요 그러시더라고요.

A: 가만히 내가 목금 서울교육 갔다 오니깐 그래도 사람들 사고가 치사하더라구요. 다 아시겠지만, 다 힘들지만 그래도 사실 저 사회복지직만 맡을 안해도 중간권에서 잘 몰라요. 할 수 없이 저도 웬만한 건 일은 겁을 안내는데도, 스트레스 쌓이니까 죽겠어요. 특히 이런 날.. 매달 생계 급여 작업할 때는 피가 마르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내일인데 다 종결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돈이 다 맞아야 되니까 밤새고, 어쩔 땐 밤을 새고.

Q: 생계급여 낼 때마다?

A: 왜냐면 이 영세민들 수급자 양곡, 또 장기 입원자 돈 입력하고 이게 켈 크니까, 입력할 게 많은기라.

Q: 선생님 혼자서 500세대 다 입력하시는 겁니까?

A: 다 양곡 신청 아닙니까. 보통 장기 입원자 한 5~60명, 양곡 한 120가구.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이렇게 될 때도 있는데 자꾸 오류가 생기다 보니까 실컷 해 놓으면 빵구가 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하나 하는데 더 걸리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조금 그런 게 많이 있죠.

Q: 주로 동, 동에서만 근무하셨어요? 시로는 안 올라가시고?

A: 있어요. 여기 옆에동에 한 7년 있다가 면에 한 4년 반 있다가 시청에도 한 2년 있다가.

Q: 시청에서도? 그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바뀌기 전이었죠?

A: 그때 사회복지 사무소. 할 건 다 해봤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안동 같은 경우는 중소도시는 대부분 안 그럴꺼예요. 업체가 많으면 몰라도.

Q: 예를 들어 제가 전주나 영광 같은 데 가보면 거기는 그나마 조금 일하는 분들이 좀 계셔 가지고, 수급자들이 진단서 내놓고는, 몰래 가서 일하시다가 공무원 선생님들이 다시다가 혹은 식당에서 밥 먹다가 아줌마 뵈네요 그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일자리가 거의 없으니까 숨기거나 이런 것도 거의 드물겠네요.

A: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거는 전산에 드러나는 건 뭐 당연히 알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재량일 수 있지만. 월권일 수도 있지만. 내가 참 공식적으로, 뭐 30만 원 미만은 더 열심히 하는 건, 밤에 시간을 쪼개 갖고 하는 그런 거는 모른 척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또 시간 쪼개 가지고 남들 쉬는 시간에 더하고.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비공식적으로 뭐 낄품 정도 한다든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저는 뭐.

Q: 밤에는 주로 식당이겠네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A: 식당은 대부분 낮에 안 하지, 밤에 잘.

Q: 주로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A: 주로 예를 들면 우리 근로유형 분들도 어차피 주4일 하거든요. 주4일 하고 주말에 간간히 들어오는거 있으면 하고. 그런 분들은 못 해주지. 그거 뭐 농가분들 그 열심히 하는걸 뭐 어떻게 잡습니까?

Q: 사과 따러 가지거나 이런 거?

A: 그래 사과 따는거나. 남자들만 노가다 잠깐. 근로유형 조건부도 대부분 그런 허리 아프고 그러니까 심한 건 못하고 노가다 같은 거 간단한 거, 이런 거. 그것도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요새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 일을 하고 그런 거는 모른 체해야지. 암튼 제 생각은 그래요.

Q: 경기, 여기도 경기가 크구나. 다들 지금 그놈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A: 한 30만 원 이상 되는 건 그건 받는 건 그렇지만 그 밑으로는 원칙은 받는 게 맞지만 그건 생활이 그래. 그런데 내가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아픈거 불구하고 그걸 더 쪼개하는 거는 근데 그 분들이 많이 고마워해요.

Q: 수급자분들이? 한 30만 원 정도만 생기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A: 예.

Q: 아니 혹시 그런데 담당자인 선생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걸 만약에 용납안하면?

A: 그건 잘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뭐야 하며 가다 볼 수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게 보이니까. 이 사회복지도 큰 법은 있지만 최소한은 조금씩 다 틀리거든요. 저는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해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뭐 엄격하게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입장이 다 다르지만 그건 뭐 완전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저는 조금 융통성은 그건 자기 가치관이니까. 드러나는 건 해주면 안 되죠. 저희들 사이에서 소문이 금방 나요. 그게 살아나게끔, 조금 이렇게 봐줘야 되지 봐주더라도. 예를 들어 구정이나 추석 때 선물을 해도 별거 아니여도 다 빠지니까.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합니다.

Q: 혹시 근로유지하나, 조건부나 이 자활 하시면서 선생님이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평상시에 생각해보신 게 있으신지? 판정이 잘못 났다든지, 자활대상 돈이 너무 작다든지 아니면 일자리가 별로 없다든지.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게?

A: 실제로 이분들 말씀이, 맨날 공통된 이야기가. 사실 근로유지형은 19,000원하고 실비 2,000원, 21,000원이거든요. 그것도 주차도 없고, 월차 깎 해봐야 2만 2~3천원, 5천원 치는데. 물론 하루에 네, 다섯 시간 하는 거에 비해서는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 많이 못 하는 거죠. 우리도 뭐 개인적으로 그걸 다 시켜줄 수는 없고. 주로 환경정비하고 근데 그런 경우가 요새 우리가 직원 수가 적다보니까 필요하거든요. 많이 돌리고 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안동에서 제일 크다보니까, 중심가는 아니지만 옆에 주택가다 보니까, 또 지역도 넓고 이래가지고 할 게 일자리가 많거든요. 일거리는. 꼭 필요한 거인데. 그 사람들 공통적으로 돈이 좀 적다.

Q: 몇 분이나 계십니까?

A: 지금 여덟 분, 남자 여섯 분, 여자 두 분인데... 제 생각에는 좀 이왕하는거... 아예 이 사람들 조금 더 돈을 더 주고... 복지 도우미라 해가지고.. 이분 들 하루 2만 5천원, 실비 2천원. 진짜 복지 도우미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장애인 이런 거는 웬만하면 거의 다 커버, 오래 되니까... 거의 다 알거든요. 정 3분의 2 이상 커버를 해주니까 많이 도움이 되는데, 지금도 이번 주로 끝나거든요. 당장 지금 고민 돼요. 거의 사실 장애인 복지만... 장애인 복지는 단순하니까 굳이 전문직 아니지만, 다른 거는...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 이번 주에 끝나버리니까 고민이 되네요.

Q: 선생님들 업무 부담이 켜신 거네요?

A: 제가 좀 선임이다보니까... 공공근로 뭐... 다 고민이 돼요 사실.

Q: 그럼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문제...

A: 급여 좀 더 올려주시고.

Q: 조건부 수급자들 중에서도 좀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한 55분 20세대인데 이

중에서 혹시 탈수급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일을 하거나 해서 스스로 뭔가를 배워서 시장개입을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실만한 분들이?

A: 지금은 그 조건부, 사실 근로유지 쪽 분들은 사실 탈수급 하긴 힘들고. 시에서 관리하는 동네 수급자 중에 조건부 중에 취업한 사람은 그 분들은 단가가 좀 세니까. 보통 저는 자활특례로 3년 되니까 이제 자동 중지되더라고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Q: 3년 되면 중지를...

A: 예. 거기 보니까 소도 주면서 기술도 익히고 거기 나름대로 집수리, 간병 이래 가지고. 나름 기술도 익히면서 돈도 보장이 되고... 그것도 자활 딱, 실제로 소득이 좀 오버 되는데도 그거 또 받으니까.

Q: 안 벗어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혹시? 수급하려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어떤 데 보면 벗어나려고 하니까 괜히 돈으로는 괜찮지만 의료라든지 다른 것 때문에 안 벗어나려고 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던데.

A: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단 벗어나면 당장 일단 병원비 많이 드는 집은... 거의 어떨 땐 본인이 벗어나려고 해도... 예를 들어 소득이 한 1~20만원 오버 되는데 벗어나 버리면 병원비하고 기타 제 교육급여 이런 거 합치면 더 마이너스니까... 정부에서 뭐 휴대폰 할인해 주는 거 그것도 신중하게 해야 돼. 그것도 한번 해버리면 그 작은 혜택 받기 위해서 신청을 얼마나 하는지, 그거 업무적인 부담이 사실 있습니다. 그걸 아나, 고통은 모르고.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보건 복지부하고 추가적으로 보고 있더라만 복지부도 거의 막...

Q: 최저생계비도 휴대폰비도 들어 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A: 그러니까 참 혜택을 갈수록, 물론 저도 혜택주면 좋은데 실제로 이용을 하면 괜찮은데... 사실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업무 부담도 많이 되고.

Q: 그건 휴대폰을 생각 못했는데. 저도 얼마 전에 방송 그런 것들이 좀 나아졌네. 그럼 최저생계비 계측하면 이 휴대폰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긍정적으로 그나마 생각을 했었는데...

A: 조금은 이제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게끔 그런 게 조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작은지 어쨌든 그런 혜택 보기 위해서는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속이고 신청하고....

Q: 여기는 노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A: 여기가 지금 인구 2만 4천인데 거의 2천6백 명인가...

Q: 수급자 분 중에도 노인 분들이, 65세 이상인 분들이 많으세요?

A: 지금 여기 8백, 5분의 2정도는 60세 이상 될 걸요.

Q: 그럼 그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좀 일하기 힘든 분들도 있는데 연령은 좀 있으셔도 일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도 혹시 있으세요?

A: 근데 보통 한 60 넘으시면 대부분 다 아프시니까. 그게 또 마음이 있지만 몸이 아프니까. 대부분 다 거의 90~95%이상 못 하지.

Q: 그럼 다 진단서를 통해서 제외되시는 거예요?

A: 그렇죠. 또 그것도 있고 일부 건강한 사람, 나이 65세 넘어도 예전에 근로유지 형하시는 분 중에 한 분 아줌마 같은 경우는 연세 65세 넘어서 더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그 아줌마 같은 경우도 아까도 잠깐 왔다 갔는데 그 아줌마 본인도 많이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또 일까지 하면... 계속 하니까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65세 넘더라도 어떤 본인의 의사나...아, 그럼 의료급여가 또 문제네. 의료 급여 1종이 조건 사항에 단, 본인이 원하면 의료급여 65세 넘어서 받고 본인이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65세 넘었다고 또 못 하니까 본인이 또 아쉽고, 열심히 하시는 분은 본인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경험도 많고 하니까... 그 분들도 경험도 많지만 좀 잘 된 사람은

올라오신 분들 신규자들도 많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요. 이게 8명이 있으면 술꾼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 중에 나이 먹은 사람 한명이 그나마 좀 잡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 중에서도 리더가... 똑바른 그런 사람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Q: 그럼 조건부 수급 가구가 20가구 정도 되는데, 판정은 물론 시에서 해주시는 거긴 한데, 판정 받으신 분들이 그 판정결과에 불만 가지셔서 동사무소 오셔서 선생님께 왜 내가 조건부 수급 안 됐냐 하는 건 없어요?

A: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자활지원에서 다 상담을 하니까. 본인이 또 예를 들면 조건부 하다가 일반을 하면, 일반에서 조건부 하려면 진단서 내야 하니까... 또 조건부 되면 공공근로도 되니까. 매번 기준이 다 적합하면 바뀌주니까... 그런 건 거의 없어요.

Q: 불만이나 갈등 상황은?

A: 그런 건 좀더러. 그렇게 하니까.

Q: 시에서는 그런 민원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까?

A: 아니요. 그게 아니고 기준에, 기준에 맞게끔 잘 주니까. 대부분은 고 잘... 설정을 시키면 다... 아직까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없었어. 시에서 여직원이고.., 좀 상세하게 잘, 대충 잘 맞는 테두리 내에서 직업을 주니까, 그 일자리를 주니까.

Q: 거긴 몇 분이나, 시에서?

A: 자활지원계... 계장님 밑에 두 분이죠. 여자 분, 남자 분.

Q: 그 분들이 판정까지 다?

A: 그렇죠.

Q: 판정에 계획관리, 지원계획 다 세우시고? 꽤 많으실 텐데. 후견 기관이 시에 많습니까?

A: 후견 기관은 두 개인가 세 개 있는데. 그래도 사업은 안동이 좀 많이 하는 편이야. 열댓 개 있어요.

Q: 상도 받지 않으셨어요?

A: 예. 옛날에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Q: 지자체 평가에서요?

A: 예. 전에는 상을 좀 많이 받았죠. 전에는 상을 많이 받았다고 해 갖고. 옛날에는 많이 받았어요.

Q: 그러게. 제가 주로 전라도 쪽 평가 다녔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대도시 빼고는 군이나 이런 조그만 시는 자활 보면 거의 없어가지고.

A: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는 옛날 저 현장공무원 사회지원과장인가.... 그러니까 시장님 방침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가능한 방향으로 하다 보니 사회복지 사무소,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하니까... 조금 우리도 힘들지만 덕도 보고 있고 그래도 그보다 좋은 게 많으니까...

Q: 혹시 그럼 6급 계장님들은 다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과나 뭐 이런...

A: 아니요. 지금은 뭐 11개인데 그 중에 한 6개인가, 7개인가 사회복지 사무소에서 많이 됐어요.

Q: 반 정도? 그나마 많이. 아직 5급은 없으시고?

A: 안동은 5급도 둘이 있어요.

Q: 사회복지직이요?

A: 사회복지직이요. 그런데 이제 될 사람도 있고 제가 봐선, 한 분 또 오래되셨고

두 분 다 오래되셨고... 옛날 또... 아마 안동이 조금 많이 배려 해준 택이죠.

Q: 판 데는... 제가 다니면서 듣기에는 사회복지직이 전국적으로 5급 된 데가 없다고 들었는데....

A: 몇 군데 있어요. 두 분 하는데 가 그런 데가 거의 없을걸요. 기존에 이제 한 분은 행정직에서 전직해서 되신 거고... 한 분도 여성 상담... 시에서 부녀... 여성 뭐... 지도이니... 그 전 7급...

Q: 순수하게 올라가신 건 아니시지요?

A: 그건 아니지. 뭐 순수하다고 해봐야... 이제 뭐... 91년부터 했다 아닙니까. 그 두 분은 다 연세가 다 50대죠. 바꾸어야 사회복지로 바뀌죠.

Q: 조금 있으면 이제 몇 년 안에 많이 나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서 일도 편히 할 수 있고, 서로들 다 아시기 때문에.

A: 그럼 좋은 점이 많죠. 나쁜 점도 있지만.

Q: 근로 능력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진단서?

A: 그렇죠.

Q: 그 수급자분들이 가지고 오신 진단서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대부분은 다 신뢰가 많이 가세요? 믿을 수...

A: 일단 뭐 의사 분을 믿어야지. 근데 저번에 한 번 가져온 사람이 진단서 위조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Q: 본인이요?

A: 아, 보통 아니고...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그게 잘 정리됐는데... 그거 빼면 저도 개인적으로 위의 형님이 의사인데... 그 저 내외과 의사가 개인적으로 다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요새 또 장애, 또 이런 건 기준이... 옛날에 그것

때문에... 근데 보니까 의사 분도 조금 후하게 해주는, 후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Q: 선생님 아시겠어요? 어떤 병원이 후하게 준다는 걸 좀 아시겠어요?

A: 소문이....

Q: 소문이... 아... 거기가면 좋다더라?

A: 조금 더 후하게 해주는... 개인병원이 있고... 좋은 데는... 조금 안동에는... 그렇다고 완전 터무니없이 하는 건 아니고....

Q: 근데 진단서하고 실제로 봤을 때는 진단서만큼 이렇게 심한 거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다시 한 번 의사한테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A: 근데 그걸 최근에는 의료보장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리다 보니까 전에는 뭐 단순하게 그냥 뭐... 힘들다 하면... 몇 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고... 그 정도 추가하고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그게 딱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거의 90%. 전에 어렴풋이 놓을 때랑은 틀려가지고.

Q: 그럼 진단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한 근거가 된다고?

A: 제가 봤을 때는 저는 99%... 제가 봐서는 사실 불과 작년만 해도 조금은 그런게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의료보장계에서 지침을...

Q: 의료급여 관리사도 있고?

A: 우리도 작년 한명이었는데 두 명 더 추가해서 세 명이나 돼요.

Q: 의료급여 관리사가 세 분이나 돼요? 꽤 크네요.

A: 안동은 또 전국에서 시설이 많다보니까.

Q: 시장님께서. 시설이 많아요, 안동이.

A: 시설이 제일 많아요. 그 동네가 보통 시설에서 의료급여를 관리하니까.

Q: 제도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A: 안동이 좀 복지에서는 옛날부터 이제 안동이 좀 큰 재단이, 사회복지 법인이 서너 개 있어가지고... 제가 봐서는, 사회복지 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안동이 병원도 많지.

Q: 수급자 분들이 정보도 빠르시겠네요. 뭐 이런 이런 정보 듣고 오셔가지고 갈등 일으킨 적은 없으세요? 누구네 집은 뭐 해줬다는데... 우리 집은 안 해주냐?

A: 지금 분들은 대부분 다 아니까.

Q: 주택가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지요?

A: 조금 갈 때 가지만 그 저도 본의 아니게 어떨 땐 좀 못되게 하는데 혜택 받으면 저도 사실 안 오고 싶은데... 내가 생각해도 정부 혜택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데... 어떨 때는 제가 좀 긴장을 했어야 하는데 긴장 좀 풀면 반발 해버리잖아. 혜택 받는 사람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수급 줄때도 나름대로 그 기준에 수급자 중에 독거노인, 소년가정. 수급자 중에 판별 기준을 해 놓고 저는 말 못해요. 어떤 때는 조금 그 사람, 조금 인력이 있을 때도 제가 상당히 위에서 얹어 빼는 형식으로, 그럼 안 되지만. 보내놓고 생각해보고, 안 그러면 일을 최대한 못 하니까. 어떨 땐... 저도 최대한 업무적으로 많이 고민이 되요. 그렇지만 나도 살아야 되니까.

Q: 아까 근로유지형에 8명에 참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조건부 수급자가 지금 20가구잖아요. 그 중 12가구가 시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거고, 8가구가 여기 참여하시고. 그럼 근로계층이 그렇게 많다는 거는 조건부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거

튼요.

A: 네, 그렇죠.

Q: 실제로 조건부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개 소수에 불과하다는 수치가 되겠네요.

A: 그렇죠, 어떻게 봐서는... 대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조건부 수급자 중에도 시에서 하는 분들은 모자 가정 분들이 많아요.

Q: 모자 가정 분들이요?

A: 거의 다 모자들이에요.

Q: 모자가정이 근로의지가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A: 거의 뭐 간병이나... 학교 독서도우미 나... 뭐 많더라고요. 거의 다... 12가구가 거의 다 뭐...

Q: 모자가정?

A: 그렇죠. 거의 다 90%는 아마 모자가정...

Q: 그러면 예를 들어 조건불이행 통보받고 그런 거 거의 없겠네요.

A: 그렇죠.

Q: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A: 시에서 하는 분들은 대부분 열심히.... 고 요만 일하면 단가도 조금씩...

Q: 그럼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까? 조건불이행...

A: 전에 한 건 있는데, 부자 가정인데 결국은 뭐 중지시킬 무렵에 또 주소를 달랑 옮겨버렸는데... 불이행되면 생계비를 안 주기 때문에... 거서 또 하겠지만...

Q: 그 다음엔 어떻게 된지 모르시고?

A: 네.

Q: 얼마 전에 자활지원 관련해서 자활급여 개별법으로도 지금 이제 분리해서 나가려고도 했다가.... 개조했다가 아직 통과가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딱 분리돼서 나가면 기초보장 제도 안에서 분리돼서 나간다면... 더 잘 되거나 탈수급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마 거기 보면 자활급여 관련해서 좀 더 강화시키고 급여가 올려지고, 뭐 제도가 더 만들어지겠죠.

A: 따로 한답니까? 일반하고 자활하고....

Q: 법안까지 만들어졌다가 이제.... 농친 결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런 것들이 다시 논의돼서 된다고 하면 그게 기초보장 수급자들 볼 때 탈수급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십니까?

A: 제가 봐서는 그 제도 내에서 하는 게...

Q: 기초보장 제도 내에서 하는 게 더 낫다?

A: 그게 맞을 것 같아요.

Q: 벗어나면 오히려 더...

A: 노력해야 되니까. 물론 그것도 자활 따로 분리해서 둔 채로 그 기법은 잘 모르겠지만...

Q: 선생님 일이 많아지시겠죠.

A: 현직에 있으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그건 모르는데... 하는 게 낫겠지. 그래도 뭐 일을 하면... 분리하면 안 되고... 우리도 전에 예를 들면... 업무를 이제.... 시에서 다 하는데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맞더라고요. 옛날에 사회복지사무소 때 사람들을 분리해 보니까... 관리측면에서도 안 되고.

Q: 그럼 지금 통합조사팀에서 올라가고 밑에서는 사례관리대로 실천 많이 하는데, 여기서 거의 많이 하지만 결국 주민생활보장 서비스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니겠네요?

A: 지금 시에서는 처음에 수급자 되고 안 되고 그건 체크해주니까... 처음엔 그건 좋아요. 전에는 여기서 하면 우리가 하면 힘들지만... 이게 결제라인에서 사고방식들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경주 김씨인데, 전혀 상관도 뭣도 몰랐는데 이제 결제 올리면 보통들 보면 그 사람이 수급자가 경주 김씨다 이사람 봐 준다, 집 안 봐야 된다... 황당해 가지고... 지금은 그리 안 합니다. 사고 마인드가 이게 그렇게 만드는 게 굉장하... 지금은 조사팀이 있으니까 좋은 게... 거기는 조사하는 게 전문이 되니까, 옛날에 동에서 수급자 결정할 때는 그게 피를 말리더라고요. 아예 인자 거기서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려니까 부담이 덜했죠.

Q: 그런 반면에 초기 상담 이런 걸 또 하셔야 되니까... 일이 준 건 아니잖아요?

A: 그렇지. 일은 사실... 옛날에 네 명 있었어요. 네 명 있다가 지금 둘 있는데...

Q: 아 두 명으로?

A: 그러니 두 명 뭉을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끼리도 이 센터가 사람이 너무 몰리면 안되는데... 저도 다 해야 되고... 열심히 하면 또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또 자기 뭉을 해줘야 되는데... 긴장을 하고... 한 번씩 뭐 이런 보고 내려올 때 마다 저도 이제 조금 고참이 되어 가지고 읍면동 대변할 일이 있고 하니까 긴장하고 그랬는데... 이러면 아니면 좀 반박도 해야 되고.. 우리끼리 사실. 뭐 그건 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Q: 그러면 반대로 실제로는 선생님이 보시기에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인데 증빙하실 서류 같은 걸 제출하지 못해서 조건부 수급자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알코올 있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진단서를 내야 되는데 진단서 못 내서 일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A: 그거는 뭐 알코올도 요새 말하는 완전 심한 사람은 못 하고.. 조금 있는 상태에

서 알코올리즘이 있는데다 허리도 아프고, 간염...그런데 알코올홀릭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 진단서가. 기타 다른 건 질병이 있으니까.

Q: 아까 말씀하셨던 조금씩 30만원 이내에서 일하는 분들은 뭐 걱정하실 게 없으신데. 물론 실제로 부정수급 찾아가서 파고,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A: 나을 틈이 없지. 나을 틈이 없지. 아예 그거는 저도 그런 좀 그런데. 저도 사실 나을 때는 편하죠, 나을 땐 최소한 1시간인데 그 사이에 전화민원이나 방문민원이 한 열 건 스무 건 있는데... 저도 일에 한계가 있지. 그걸 나와서 챙기지를 못해. 나오고 싶지만 못 나와요. 주로 밤에, 퇴근 후에는 전 남자니까 꼭 중요한 일 있으면 밤에 뭐 선물도, 쌀 배달이나 이런 거. 꼭 중요한 일 있으면 저는 남자니까 아무데나 갈 수 있으니까. 주로 밤에 처리하죠. 마음은 참 찾아가서 민원하고 싶죠. 근데 안 돼요. 우리가 보니까 서울에도... 큰 도시는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Q: 다른 공무원 분들도요?

A: 예.

Q: 여기 임대 아파트 있습니까?

A: 옥동에...

Q: 아 그래서 수급자가 많은 거구나.

A: 예.

Q: 그럼 실제로 수급자 그걸 하려면 사례관리가 되어야지 그걸 할 수 있는데 아예 사례관리 하시기 힘들니까, 그런 경우 발굴하기,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A: 그렇죠.

Q: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우연히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친구를 한다거나 뭐 이웃에서 저 사람 뭐 일을 하더라.

A: 그런 경우 얘기 들어오면 체크는 해보죠. 근데 그게 뭐 거의 듣고 하니까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반영하죠. 그러면 이제 별도 다... 뭐하고... 일단 양도 타당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Q: 그렇게 하면 보통 수궁을 잘 안할 거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 급여 깎이면 사람들이...

A: 근데 대부분 상담하면 자기 받는... 지역사회 대충 다 아니까 식당가면 보통 얼마 받는다 대충 거의 나오거든. 대충 다 인정해요.

Q: 주민들이 좀 장사 같은 것도 다들 양반도시라서 그런지 그런 특성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A: 다들 보면 중소도시는, 대부분 지역사회는... 대부분 그리 안 되면 알코올 중독 심하지 않는다 하면은... 조금 수궁을 하는 편이지. 어떨 때는 반발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Q: 아까 시설 복지가 많은데 그 분들이랑 서로 네트워크나 그런 거 쌓고 하시는 거 그러세요?

A: 네, 일단 시에서 장애인시설 업무를 봐 가지고... 안동시 사회복지사협회 제 개인적으로 다 알아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많으니까. 그냥 아는 게 좋은 게... 어떤 시에서 살려주고 여기서 배려해주고. 어떨 때는 저도 아니까 그냥 좀 결제 못해도 빨리 봐주는 것도 있고...

Q: 따로 모이면서 선생님들?

A: 안동 사회복지사협회를 해요, 공무원들하고... 안동이 시설이 제일 많잖아요. 어차피 병원도 그렇고... 안동에는 정신질환인 시설도 크고 노인도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으니까.

Q: 춘천 안 가십니까? 사회복지사 대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천에서 이번엔 대개 좋게 준비하셔서 가서 꼭 쉬고 오실 수 있을 텐데 아마...

A: 여기도, 이번에도... 내가 그리 안 합니다. 가면... 이번에 갔다 오니까 또 이틀만에 수급자 신청이 밀리는데...

Q: 신청하시는 분들 많습니까?

A: 요새 살기 힘들니까 많이 들어와요.

Q: 경기를 좀 많이 타죠. 젊은 사람들이 많겠네요.

A: 아니요. 어제든 88년생이 왔는데.

Q: 88년생이요?

A: 88년생이어도 좀 아프고, 고아이고, 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저는 지금 하나 있는데 그래도 뭐 일단 집값도 체크해 보고... 대부분 노인, 4~50대 한 50대이기 때문에 아픈 분들이...

Q: 그럼 이게 지금 경기를, 수급자들 증감도가 경기를 많이 타시겠네요?

A: 지금 와서는 우리가 인구도 많지만, 흐름봐서는 경기 때문이 아니고....

Q: 신청하는 만큼 선정되는 비율도 높습니까?

A: 이제 우리가 사실 수급자 숫자를 만들려면... 나름대로 그래도 시에서 후견을 만들어 놓겠지만... 최대한 내가 하는 건... 보통 한건에 나름대로 최소한 한 두 시간은 잡아... 정리하면... 근데 초기상담에서 아예 안 되면 걸러내야지. 안 그럼 일 못하죠. 상담해보면 대충 그 본인이 거짓말 안 한다면 거의 95%는 다 그런. 드문드문 열 건에 한두 번이면 거짓말 돌려서 했는데 나 혼자 해보니까 그런 경우는 올리면 주로 맞아요. 초기에 걸려줘야지. 서류 넣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충 힘들게 할 만하면 대충 거짓말 안 하잖아.

Q: 조절이 되겠네요, 수급 되고 안 되고가. 갑자기 늘어나고 이런 건 없겠습니까? 옛날 IMF같은 이렇게 큰 사건은 아닌 이상은....

A: 우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뭐, 근데 이번 주는 갑자기 교육을 들어갔는가... 갑자기 한...

Q: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A: 그런 건 아닌데... 대신 주로 통장님들이 가면... 60세에 하면 힘들다 그러면 안 내하고... 노인분들은 잘 모르니까.

Q: 이번에 부양모자 기준 조사하시면서 금융조회 일제하면서 혹시 문제 같은 게, 갑자기 없던 재산이 나오면서 탈락하거나?

A: 수급자 한 분은 그런 게 한 건이 있었는데... 그 분도 시계가 자기 게 아니고 죽은 남편이 그것도 물론 본인 거지만 그래도 한 건 있었어.

Q: 많지 않네요.

A: 그러니까 지금도 어차피 65세 넘으면 수급자들도 이제 기초노령연금 조사하니까... 대부분 다 맞아. 그게 완전... 저번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진짜 거의 뭐... 그게 마누라한테 떨어지는 건 없어.

Q: 어느 집 갔더니 그게 금융조회, 금융 동의서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시던데.

A: 제가 잘 모르니까. 이게 막 설명을 이게 좀 저는 조금만 그거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혜택을 받으니까 그런 것이다. 열에 아홉은 잘 넘어가는데... 한 두건은...

Q: 그런 것들이 문제죠. 선생님 지금 모부자 가정, 모자가정 46세대, 부자가정 8세대 그런데요. 그런 가구여건 곤란이나 그런 것 때문에 수급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거를 좀 국가에서 도와주면 이 분이 더 일할 의지가 있는

데, 돌봐야 될 아이가 있어서 일을 못한다거나 혹시 그런 분들도 계신가요?
아이를 누가 맡아서 키워주고 케어를 해준다 그러면 생계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지.

A: 여기 안동 같은 경우는 스물네시간 봐주는데 가 없으니깐...

Q: 그런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A: 우리 시에서도 순수하게 수급자 중에 모자가정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일반 모자
가정하고 수급자들 모자가정은 시에서 또 따로 여성복지계에서 따로 하고 있으
니까...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요.

Q: 그나마 아마 꽤 좋네요.

A: 고건 잘해요. 파트를 나누니깐...

**Q: 구민생활 지원, 사회복지과랑 주민생활 지원과랑? 처음에 연계가 잘 됩니
까?**

A: 지금 봐서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있었는데... 지금은 맞게끔 95%는 맞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이제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에 이리 엇갈리고... 어떤 때 일 많고
여기는...

Q: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에서는 경험이 되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A: 그것 때문에 우리끼리도 사업이 다가오면 파벌 생겨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는
데... 가을이 그친 다음에는...여는... 일이 맞게끔.

**Q: 좋은 경험. 솔직히 선생님 사회복지직. 근데 어떻게 네 분 중에 두 분이냐
그렇게 오셨습니까?**

A: 전반적으로 안동은 다 그래요. 시에서 다 하라고 가는 건데 사람 없으면 다 가
야 되는데. 일하는 데 많이 노력하더라고. 전반적으로 다 반으로 줄었어.

Q: 세 분이 있으면 두 분이 올라가고 네 분이 있으면 두 분이 올라가고.

A: 예.

Q: 업무가 반으로 줄지는 않았죠?

A: 실제로 사실 좀 버거워요. 우리끼리도 지금 대부분... 저도 시에서 일을 해봐서 쉬었다구요. 고생도 안하고... 그런데,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약간 일 적은 사람은 더 하고 이래야 하는데... 진급에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일은 안하려고 하고...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거 제가 괜한... 빨건 빼주세요.

Q: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선생님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전달 체계 부분 제가 조사했는데 제가 얻을 게 많아가지고 보고서 가져온다는 걸 깜빡했네요.

A: 저번에 왔대요. 저도 처음에도 그렇지 아직도 나름대로 복지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으로 하려고 그건 안 잊어 버릴려고 노력하는데... 어쩔 때는 못 되게 하거든요... 제가 그 사람 미워하는 건 아니니까... 좀 그러니까 항상 그 사고만 있으면 안 되겠나...

Q: 아까 조금 전에 수당 얘기, 최근에 이제 막 신문에도 나왔던 게 차등 고용 식으로 받는 수급자한테 월 30만원 그 동안에 이제 아이를 맡겼으니까 그 동안에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해서 추정소득을 부과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초보장 지침 이라기보다는 차등보육료, 이쪽 보육 쪽 같아서.

A: 보통 30%인데 반드시 그 얼마... 30이나 50% 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꾸 인센티브를 줘야 더 하니까.

Q: 자활공제 우리가 30%하고 있는데 별로 크게 도움 안 된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A: 지금 근로 유지 같은 경우도 한 달에...

Q: 폐지되었죠?

A: 네. 그것도 자활 작년에 도움이 되었는데 많이들 힘들어 하더라고. 돈 얼마 10만원 근로형 해봐야 한 달에 4~50만원 되는데... 잘했어도... 그거 받아가지고 사실 사는데 그것까지 빼 버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 하더라고...

Q: 만약에 있었다면 30%라고 어느 정도 가면 생활도 돕고?

A: 저 같으면 한 50% 정도. 그래야 좀 실제로. 저도 한 보통 5~60쓰고 하지만. 한 달에 4~5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나마 지방이니까 물가 좀 싸니까 하지, 물론 대도시는 더 할 끼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인센티브를 최대한 많이 주는게...

Q: 인센티브라는게 일 하시는 분들한테 공제를 올려주는 거 하나 있고, 아니면 수급자를 딱 벗어나거나 자활팀에서 벗어나고 그럴 때, 별로 아까 말씀하신 가족 중에 의료 급여 이런 것들이 다시 필요로 하니까 의료를 별도로 준다든지, 교육을 별도로 준다 이렇게 되면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A: 차상위 의료비 있긴 있지만... 사실 옛날에는... 이래... 수급자 지난 다음에는 탈피해버리면 뭐 아무것도... 경상북도에서는... 자활자립사업으로 그런걸로 한 백만원, 3백만원 돈도 주고 이랬는데... 사실 이게... 4인에 120만원인데 한 125만원 받았다고 잘라버리면... 그리 아픈사람은... 실제로는...

Q: 그렇죠. 마이너스죠.

A: 받았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자활에서도 확실히 서게끔 해주고 해야지. 그게 다 그런 책도 있지만... 반도 안 되게끔...

Q: 다시 안 들어오시죠.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별로 산업기관이라든가, 일자리가 사실은 또 없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좀 지역별로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A: 아까 얘기한, 그게 켈 크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특히 남자들은. 여자 분들 가사, 간병인 이런 건 여자 분한테 맞는 건 있는데 남자들은 마땅히 맞는 게 없어.

Q: 그냥 집수리 정리 정도 빼고 딱히 맞는 게...

A: 근로유지형이나.. 시에도 남자들 하는 건 집수리 밖에 없어요. 대부분 여자들이 나...

Q: 남자를 위한 일거리들이 별로...

A: 조건부 수급자 분 중에 모자가정 이런 분들이 여성분들은 대부분 이혼하시고 해도 애들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게 많고... 남자 분들은 가정 파탄....애들도 막...

Q: 작년에도 만나보면 모자가정, 부자가정 특징이 모자가정 어머니들은 진짜 악착같이 어떻게든 살려고 돈도 쪼개서, 그 와중에 저축도 하려고 그러시고 하는데, 부자가정들은 아저씨들이 아파서 운전도 못하고... 담배는 또 다 있고... 극단적인 케이스겠지만...

A: 부자가정도 보니까 부자가정도 조금 제 주변에 몇 분은 또 도와주니까 남자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단지 좀 책임성, 남자들도 알고 보면 약한 게 남자일 수 있는데... 조금 사기만 이렇게 해주면... 남자 분들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그분 본인 조금만 밀어주면 되는 경우도 몇 건 있거든요.

Q: 맞는 일자리들이?

A: 그게 제일...

Q: 다른 제 개인적인 질문, 최근에 보니까 지금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 이런 내용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달체계 관련해서. 일선 현장에서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일이 많으니까 사례관리가 실제로 어려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앙화로 가겠다고 그런 논의가 되고 있던데... 지

금 이제 시군구로 가지만 그런 뭐 조사라든가 선정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전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나머지... 지금 기존 인력들은 다 사례관리 쪽으로 충실하게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가.

A: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가야지. 중앙화 과정으로...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는게 저는 그렇게 안보거든요. 일선시군구에서는 그 지역 정서가.... 시도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있듯이 우리 안동 지역에 맞는 게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유두리 있게 하는거지. 정서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중앙에서 예를 들어 지금 금융조사 이런 거는 좋구요, 기계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예를 들어 수급자 계산하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할 일이 아니구요, 시군구에서 해 가지고 법적인거 95% 나머지 5%는 약간 그 사람. 전화로 사람 만나면 뭐합니까? 그게 전화로 됩니까? 사람을 만나보고 이야기하고 그래야지.

Q: 중앙에서 150만 명을 다?

A: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해요.

Q: 지금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이 부분은 고쳐야 되고 이 부분은 고치지 않아도 되고...인력을 늘리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일까요?

A: 그렇죠.

Q: 전담공무원?

A: 사실 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이 행정직 분들 이 분들 발판, 토대가 보니까 다 거의 데려와서 하는데 일반 행정직 분들이 실력도 있지만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고... 근데 이 분들은... 지금 우리가 하더라도 장애인 복지 잠깐 보다가, 왜? 골치 아프거든... 탄 업무는 쉬잖아요. 골치 아프니까 1~2년 일 하다가 자리 비우고 가버리고... 저도 지금 둘이나 있어 가지고, 기초보장 업무만 죽 봐왔기 때문에, 선임들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항상 공문 오면은 노인은 보면 되지만 장애인 이런 거는 제도가 자꾸 바뀌니까 저도 지금 고민이에요. 복지도우미 보

다가 혹시나 예전에 연가 이러면 대타로 하니까 많이 부담되는데. 제가 조금 컴퓨터를 못해서...그런 부담 때문에 항상 제 업무 하면서도 틈틈이 공문을 다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인원이 하는 일이 도와주긴 하지만... 한계 사고가 내가 무슨 사회복지여? 하나하나 알아야 되고... 뭐 신규들은 대다수가 뭐... 생계비도 안 되고. 만일 보더라도 이 사람한테 가면... 또 새로 가르쳐야 되고... 그게 공통사항이에요. 다 들어보면...

Q: 예를 들어 사회복지직이 승진이 좀 유리하다거나 예를 들어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좀 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A: 근데 사회복지 경우는 최소한 1년, 2년 반 가산제, 이번에 가니까 그런 말 나오는데 일반직들은 사회복지 업무를 보면 1년이면 예를 들어 가산점을 몇 년, 이런 식으로. 그것도 괜찮던데.

Q: 그건 지금 논의가 있다는...

A: 그러면 해도 뭐.

Q: 평가 같은 거 할 때, 평가가 다 없어지는 바람에.

A: 그래도 옛날보다 나아요. 나아졌는데 그런 거는...

Q: 선생님께서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근로하시는 분들도 한 소득이 30만 원 선까지는 보시고도 모른 척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좀 지침을 위반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A: 그거는 인자... 이미 넣었기 때문에 해당되는거... 예를 들면 자활 근로 일하는 게... 일용직이 뭐... 가끔씩 한두 번 처음 볼 때만....

Q: 가끔씩 한두 번?

A: 처음 볼 때만 보통 이 정도?

Q: 그런 걸 법적으로 아예 이분이 근로 의욕 있고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 정도 선까지는 소득으로 인정을 안 해서 급여를 공제 안 하는 걸로 인정해준다거나 그러면 더 좋다고 생각하신 적도 있으세요?

A: 저 아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근무시간 이외에 잠깐... 그런 거는 원래 밤에 쉬는건데... 주말에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더 한거니까... 최고한도는 보통 아픈 사람이니까 보통 3~4만원, 3만원 내외인데. 한 달 해도 30~40에, 보통 한 10~20 그 사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제 생각에 그 정도 하지 않겠나. 보통 10~20정도?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Q: 현재 취업창업자 가운데요, 달마다 소득이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A: 취업창업? 일단 본인이 원체 신규다 보니까, 그것도 업무. 그게 사실 저 사람이 사회복지 쉽지 않아요. 어떤 민원 들어오고, 약간 뭐 소문. 그냥 이렇게 되니까, 어느 날 한번 해보고 하는 거지. 말로는 공개 합니다 하지만 못 해요. 그냥 놔둬도 보는 것도 아닌데. 그냥 찾아오면 일단 주는데. 복지계에서는 중증관리 대상자 붙어 있으면 그것만 보고. 내가 따로 한다면 이런 소문 들어오면 한번 해 보고.

Q: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에 추정소득을 부과하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불만 사항 같은 걸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A: 그거는 최하가 27만 천원, 28만. 그러면 급여에 조금은 좋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안 오고.

Q: 아니면 최소수급 자체를 조금...

A: 최하가 그리 되니까 그렇게 해봐야 몇 만원 차인데.

Q: 크게 속이시는 분은 없으신 거 같네요. 하나 궁금했던 게 지침을 보면 조건 제시 유예자 같은 경우에 읍, 면, 동장이 사실 확인 조사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자활사업 안내책자 지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182 2008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장조사자료

A: 그거는 10월 달 정도.

Q: 읍, 면, 동에서 조사하지 않으시고 시에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A: 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

- 조사지역 : 농어촌
- 응답자 개인사항

성별	연령	학력	근속기간	자격증 여부
여	30대		약 4년	사회복지직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 2007년 조사 당시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및 횡성군에서 최근 행정감사 이후 나타나나 변화 등에 대해서도 응답

Q: 작년에 하셨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현황부터 여쭙볼게요.

A: 네.

Q: 지금은 수급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A: 지금 현재는 121가구 정도요.

Q: 121가구요. 네....그럼 여기는 특별하게 지역 특성이나 그런게 임대아파트나 그런거와 상관이 전혀 없는 지역이니까 수급자 구성이나 이런 것은 일반적인 농촌 특성일 것 같고, 지역적으로는 이쪽 면사무소 주변하고 많이 떨어진 지역하고 어떤가요? 주변지역이 더 많은가요?

A: 아. 수급자 비율수가?

Q: 네..

A: 주변 지역이 수급권자가 더 많으세요. 주변지역 인근의 쪼그만 그런데가 낙후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외곽지역의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적거든요.

Q: 워낙 가구 수가 적으니까요?

A: 이쪽에는 그나마 수급권자들이 집을 잘 구할 수 있는 월세방이나 그런 것이 좀 그나마 좀 있잖아요. 오히려 외지에서 전해져오는 수급자들도 주변에 터를 구하는 것이 더 쉬우니까...

Q: 지금 어쨌든 선생님 혼자서 다 보시는거죠? 아닌가요? 다른 분 또...

A: 지금은 국민기초랑 관련된 것은 제가 다 보고요. 지금 맞은 편에 계시는 분이 행정직이시거든요.

Q: 아...행정직이신데 주민생활지원업무를..... 그러면 일반 업무라는게 장애인... 뭐 여러 가지 쪽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아주 일부 하시는거고 선생님

이 대부분 다 하시는 건가요?

A: 그렇죠. 근데 또 저쪽에 주민생활체제개편 때문에 복지업무 외에 또 취사서비스라고 해서 업무들이 이관되서 왔잖아요. 지역경제라든가 위생이라든가 보건, 뭐 그런 것들이 업무가 다른 부서에 있던게 체제개편 때문에 오면서 관리직원 한 명을 받은거예요. 받는 조건으로 한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체감하기에는 크게 업무가 한 명이 더 왔다고 더 줄어든거는조금은 그렇겠죠.

Q: 그러면 여기 농촌 지역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은 어쨌든 기초지원연금 추가 신청하는 기간이니까 그게 지금은 제일 업무상으로 보면 그게 제일 많으실 텐데 전체적으로보면 기초보장쪽 관리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 업무 비중으로 보시면...

A: 보장업무는 계속 확인조사나 통계수급이라든가. 계속 끊이지가 않잖아요. 중간에 요구자료도 개선해야되고 생계비도 줘야하고 가장 크죠. 한 60%정도..

Q: 지금 신규 수급은 보통 월 어느 정도?

A: 면담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통합조사팀으로 저희가 해서 넘기잖아요. 면담해서 웬만큼 안 되실꺼 같은 분들은 초기면담에서 돌려보냈고 신규로 해서 책정되서 내려오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달에.. 국민기초만 따졌을 때, 국민기초만은 한 2-3건 정도밖에 안되고요.

Q: 이쪽은 거의 120 가구 정도에서 크게 변동 없이 그대로 그냥 가겠네요. 그럼 그 120 가구 중에서 지금 관리하시는 가구 중에 조건부 수급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이시고요. 3명이 실제 다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A: 네...근로유지형으로..

Q: 그러면 이분들이 조건부 수급자도 3분이고 실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3명이신거고요. 예,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대략 된 거 같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능력자 판정관련해서 주로 좀 여쭙 보려고 하는데요. 진

단서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근로능력 판정이나 조건부과와 관련해서 대상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 분들이 반응하시는 것이라든지 그런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신규수급 신청 오면 근로능력 판정하고 조건부과하는 그 절차대로 질문을 꼭 순서대로 진행하니까요. 그거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처음에 수급신청이 들어오면 초기상담을 하러 오시잖아요. 초기 상담하러 오시면 선생님은 기본적인 안내를 하실꺼고 기본적인 가구 상황이나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가구원들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 보실텐데 근로능력판정하고 관련해서.. 조건부과라든가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고 진단서 제출이라든지 이런것들 포함해서 근로능력 판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주로 상담을 하시면서 신청을 할 때 안내를 하시는지 주로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지침에 있는대로 다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초기에는 진단서나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시고 나중에 정 아파서 못하시겠다고 하면 그때가서 진단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거 같은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음에 오면 하시나요?

A: 저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활생계가 연계가 더 이상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이 처음에 초기 상담오셨을 때는 일단은 저 자신부터는 수용이 될지 안 될지부터 먼저 떠오르는게 솔직히 현실이에요.

Q: 조건 부과를 해도 안 될 것이다.

A: 네.. 조건 부과를 해도 어짜피 안될 것이다 생각이 드니까 일단은 면담을 해보고 그쪽 조건에 대해서 자꾸 맞춰본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Q: 지금 현재 운영기관이.....

A: 아...예... 아예 수용을 못하니까 진단서를 있으..제출하셔야 된다는 쪽으로 상담이 가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진단을 받게 되면 조건부과에서 제외가 되니까 수급자 책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만 엄연히 건강하시고 그러신 분이면 굳이 생활이 어렵다고 하시고 그러시면 조건 부과쪽으로 가야되잖아요. 그럴 경우

수용이 솔직히 어려워요. 그럴 경우에는 근로유지형이라든가 그나마 수급자 근로유지형에 대해 언급을 해요. 지금 특별히 아프신데도 없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수급권 책정이 되시면 조건부과라는 것을 할 것이다. 주로 일을 드리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게 될 것이다. 그 금액은 크게 많지 않다. 근로 유지형이기 때문에. 나가서 소위 말하는 농촌일, 품 파시는 것보다도 많지 않으실 건데 그것이라도 받고 수급권을 이제 신청하시면은 하셔야 되는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Q: 그럼 진단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처음에 하시거나 그런 것은 아닌거죠?

A: 네. 6개월 진단...뭐 그런...

Q: 네.. 그런 것이요.

A: 그런데 만일 진단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으면 진단서에 일반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진단서를 받지 않으시고 나와서 받아오셔야지 진단서가 유효하지, 젊으신 분인데 기타만성질환으로 근로 유지형으로 충분히 판정 가능하신데 그런 진단 정도는 되기 어렵다..그 정도 이야기 하지요.

Q: 그러면 선생님 지금 조건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에서의 수용 정도나 그런 것들이 자꾸 고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선생님 지금 이 지역에 근무하신지가

A: 햇수로는 3년됐고요. 만으로는 한 2년 반정도....

Q: 그럼 2년 반동안 점점점점 더 약간 그런 쪽을 신경쓰는 것이 느껴지는거죠?

A: 관리가 안 되면 그분들한테도 어차피 수급권 신청됐다가 조건 불이행이나 출퇴근거리의 부담으로 인해 어차피 근로포기각서내서 중지가 또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면 그분들한테도 수급권의 희망을 줬다가 또 다시 중지되면 더 불안할 것이고 또 추세를 보면 힘들 것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절차상의 반복만, 힘

들게 서류상만 왔다갔다 할뿐이지 실제 수급권자가 체감하는 것은 어짜피 참여
하지 못할 거란 생각도.....그러니까 애당초..

**Q: 그럼 선생님 예전에 근무하셨을 때는... 여기 처음 계신가요? 아니면 예전에
혹시**

A: 그때도 인터뷰할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촌...그니까 동해시라는 곳에 ??으로
왔어요. 그쪽에서 2년 근무를 하고 왔죠.

Q: 그럼 그쪽도 사실 여기랑 별반 차이는 없겠네요 상황이.

A: 그래도 그쪽은 시내다 보니까 자활후견기관쪽으로 의뢰를 하면.. 여기보다는 많
이 해서 정착되시고...

**Q: 상대적으로 그럼 예전에 근무하셨을 때랑 비교해서 보면 여기는 그런 여
건이 좀 안되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을 좀 하시는 거죠. 지금 어쨌든 선생님이
초기 상담 받으셔서 가지고 선생님이 딱 보면 신청하러..상담하러 오시는
분을 보거나 가구상황을 보면서 가구원을 보면 조건 부과가 필요하거나 조
건 부과 제의를 위해 진단서가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대략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진단서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는거죠. 그리고 진단서
안내를 하실 때 특별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좀 큰 병원
에 가서 해오시라 하거나 그런 내용이... 선생님 나름대로 있으신가요?**

A: 여기는 의원이 있어요. 여기는 의원이 있다보니까

Q: 면에 의원이 몇 개 있죠?

A: 저희가 한 3-4개 정도 있는데 솔직히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진단서를 의원에서
끊어오시는 거면 솔직히 말로 해도 조금만 해도 끊어 오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반영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휘문동에서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야
기 할 때도 5월 달에 중요한 감사가 있었거든요. 감사 때도 조건 부과 진단서
여부에 대해서 의원급에서 끊어오는 진단은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Q: 아.. 군 내에서 자체적으로...

A: 예.. 왜냐면 통합조사팀을 운영을 하면 저희가 내는 서류를 반영을 해서 나가는데 어느면은 의원급으로 해서 끌어오시고 어느면은 아니면은...하니까 아예 통일을 하고 의원에서는 솔직히 시골의원은 말만 하면 끌어준다 이러니까 안내를 할 때도 6개월 이상 진단 나오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횡성나가기거나 원주 나가셔서... 만약에..그런 경우 있어요 관절염. 척추가 아프시다 하면 의원에서 척추 디스크 진단서를 끌어주는데 그런 건 안 되신다. 그런 건 정형외과에 가서서 전문의에게 받아오셔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죠.

Q: 그럼 보통 횡성읍으로 가시거나 원주로 가시거나....

A: 대부분 치료가 열악하니까 진료를 다 멀리 가는... 그런 부분은 무리가 없으신데 분명 여기서 치료하시는 분들 상태면 살만하시니까 정말, 그러니까 여기서 치료받고 끊고 ... 정말 힘들어서 못 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치료받는데서 정말 척추도 그렇고

Q: 지금 3개월 이상이면 근로무능력자 되잖아요. 치료기관으로.. 근데 방금 말씀하신 6개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6개월로 높여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A: 3개월이면 솔직히 그..3개월 동안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이면 웬만한 진단이 다 되더라고요. 그러면 3개월 정도 진단이면 저희 쪽에서도 그 진단서를 반영을 해가지고 유예를 하거나 이정도가 아니고 근로유지형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병명정도라고 생각해요.

Q: 그러면 3개월 정도면 병명을 보시고..이렇게..쫓..

A: 병명이나 상담내용을 보고 ...이건 진짜 6개월인데 3개월짜리 끌어 오신거면 찾아보고, 이건 충분히 치료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면 조건부과제외를 하는데 어

느 정도 만성질환 가지고 3개월 끊어 오시면 제가 봐도 뒤로 일을 다 하고 계신 게 보이는데 그 정도 진단 가지고 끊어 오셔서 일 못하겠다하면 100% 반영을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걸 먼저 솔직히 이야기를 해요.

Q: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엄격하게 적용하시는 거네요.

A: 나이가 젊으신 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엄격하게 할 수 밖에 없는게요. 왜냐면 오래 보다보면은 수급권자분들이 복지병이라는게 생기는 거 같아요. 젊은 세대들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어찌피 하시다가 정말 자식한테 부양 못 받으시고 일도 힘드시면 수급권 보호를 받으시는 부분은 엄격하게 진단서 내세요라고 하진 않는데 젊은 분들은 일단 한 번 수급권이라는 보호를 받게 되면 만약에 3개월이란 진단서를 끊고 조건부과에서 제외되서, 아니 유예되서 일을 안하시고 수급권 4인 가족 한 달에 100만원씩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맛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준비도 힘들고 이쪽에 안주하려고 하고

Q: 초기에 엄격하게 조건부과를 하는 쪽으로 하던가 아니면 아예 진단서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지금 기준보다는 좀 더 길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어쨌든 그렇게 진단서가 첨부가 되면 선생님이 판정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상담기록이나 그런 것들 하고 진단서는 군으로 보내시기 전에 선생님이 일단 다취합을 하시는거죠? 그러면 취합해서 그걸 보내시면 군에서 판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A: 조건부과결정은 군에서 하죠.

Q: 수급결정 할 때 동시에 조건부과 결정하는건가요?

A: 네...

Q: 그럼 혹시 수급자들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조건부과 이렇게만 알게 되나요? 왜냐면 저희가 지침 상에 보면 조건부과제 외인 경우에 몇 가지 기준이, 범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건제시유예라는 기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통지를 받거나 그런 내용을 알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이나 조건부과나 이렇게만 알게 되나요?

A: 일반이나 조건부과나만..

Q: 그것만....아예 통지서자체에 그 내용이 명시가 안되는거죠. 그러면 그냥 관리상의 분류는 선생님이 외모를 보고 하시는건가요?

A: 분류...예..

Q: 그럼 일반 수급자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선 연령가지고 또는, 근로무능력에 들어가는 분들 근로무능력쪽으로 되는분들은 하고, 근로능력인데 조건부과제외나 그런 분들은 선생님이 상담하셨던 내용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범주에 그렇게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A: 조건 유예라든가 그런 것은 공문으로 해서 결정이 아예 내려오는 거고요. 대상자들에게 받는 것은 조건부과 ..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정도의 판정정도고요. 조건 유예나 이런 것은 군에서 다 결정이 돼서 전산에도 다 자활 상태 이행 등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긴 돼요.

Q: 그러면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로 선생님은 전산에서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A: 예. 그렇죠. 전산과 공문

Q: 아..전산과 공문으로요. 그러면 조건부과제외의 가구여건, 환경적응 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분류가 돼서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공문이나전산같은 것으로.

A: 전산으로는 관리를 하는데

Q: 전산에 조건부과제외라고만 되나요?

A: 아니요. 제외에도 여러 사유가 있잖아요. 그 사유별로

Q: 아. 그럼 그 부분까지도 군에서 다 분류해가지고 그러면 일단 그러면 근로능력 판정 관련해서 근로능력과 무능력을 구분하는것 부터 좀.. 단계별로 보면 지금 5가지 기준이 있어요 근로무능력 보면. 그 중에서 중증장애인이거나 임산부나 이런 경우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것이니깐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거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나 군 관련된 것도 그렇고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진단서 3개월 이상 그거 하고 기타에 보면 중증 장애인 아니면 4급 이내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34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통 이 기타 범주에 넣어서 근로무능력으로 하시는지 상황봐서 적극적으로 근로능력으로 분류하려고 의도하시는지..

A: 34급 정도 장애면 일단 면접할 때의 당시를 보고 다리로 인한 장애라든지 팔이라든지 아니면 안보이는 장애로 충분히 의사생활이 가능하시면 분류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4급인데 실제로 만나 보면은 장애가 더 등록이 되어 될 정도로진단을 안 받은 경우..

Q: 오히려 장애쪽에서 등급을 줌...

A: 그런 분들은 장애등급 더 받도록 유도를 하고

Q: 그러면 선생님 어차피 장애 없는 것도 같이 보시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해서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하는 쪽으로 하시고...지금 기초쪽에 근로능력판정보다는 장애등급이 조금 더 엄격한거죠?

A: 그거는 소관의가 내리는 거니까.... 판정지침에 의해서

Q: 그 정도로 선생님이 장애등급이 필요하다 판단을 내서 중증장애인으로 조정되는 분들은 사실상 기초쪽에선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의 장애 쪽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잘 못...?

A: 아니..추가진단은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정보가 없어서 안받고 있다거나 할

때..

Q: 그러면 지금 3개월 이상 진단기준이 제일 문제인데 우선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어쨌든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연령기준에 의하면 어쨌든 65세 이상이 넘어가면 진단서나 이런 거 전혀 필요없이 바로 근로무능력자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거의 수급자로 오시는 분들은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무능력자가 많으시겠네요?

A: 거의 80%정도 되는 거 같아요.

Q: 80%정도 되신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일을 하시잖아요. 농어촌 지역이란 그런....

A: 한 60.. 70세 전후까지는 많이들 하시죠.

Q: 그러면 사실 그게 소작일 수도 있고 품팔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침상에는 근로무능력자로 구분이 되더라도 소득파악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되면....(공급자 잠시 통화중)

Q: 이어서 진행하겠는데요. 그.. 연령관련된거에 관해서 아까 여쭙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한 80% 이상이 65세 이상 이셔서 근로무능력 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지침 상에 근로 무능력자면 소득에 대해서 신경을 안써도 된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죠?

A: 그 내용은 없죠.

Q: 어쨌든 근로 무능력이어도 활동을 한다 연령기준에 의해서 근로무능력이라면 그런 노인분들이 소득활동을 하는게 잘못된 건 아닌데, 어쨌든 소득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품팔이를 주로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저기(파악)를 하세요? 사실 농업 소득 같은 것은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품팔이 하는 경우에 소

득파악이라는게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부분인데...나름대로 원칙이나 방법이 있으신지?

A: 그것도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정리를 하자. 각 면에 그걸 적용하는 면이 있고 아닌 면이 있어서 좀 어렵다 해서, 저희가 ...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분들 있잖아요. 무조건 안 하시는 분들한테 일률적으로 매길 수는 없고 일을 한다고 이장님을 통해서 확인된 분들만..하지만 그것도 100%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확인이 소득확인이 되면 이장님한테 쫓아가서 돈이 생계비가 주니까(줄어드니까) 따진다고해서 100%로 솔직하게 얘기를 안해주시는 단점이 있어요.

Q: 대개는 이장님이 알려 주실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A: 그렇죠 뭐. 원망을 하고 이러니까.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저희가 생각한게, 요즘 노인분들이 6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까지는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를 어느 정도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둔다면 65세에서 70세, 그니까 70세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산정이라든가 하지 말되 65세부터 70세까지의 연령상에서 일을 한다고 추정되는 어르신에 대해서 일수를 정해서 최저 3만원을 최저 5일에서 며칠까지 잡자고.....

Q: 70세쯤 되시는 분들은, 70세 이상은 그냥 농업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넘어가고 65세에서 70세까지는 나이에 따라서 70세는 한 최소 5일 65세 바로 넘으신 분들은 좀 더 일하신 것으로 그러면 군 자체에서 나름대로 조정을 하신 거네요.

A: 그리고 그 65세에서 70세 어르신 중에서도 우리가 의료내역은 볼 수가 있잖아요. 치료받았던거..정말 일하시기 힘든 어르신들한테 무조건 일률적으로 매길순 없으니까 의료적으로 많이 아프신 분들은 내역을 보고 빼고..어느정도 정정하시다 이러면...

Q: 병원 기록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서 빼고 ... 그러면 그 부분이 어쨌든 올해

봄에 감사 이후에 군에서 나름대로 정하신 틀이잖아요. 그럼 기존에 카운트 안됐던 분들이 변경 시기에 조금 문제제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말하자면 이진 뒤쪽에서 말 할 추정소득 개념인데 이것을 농어촌에 계신 노인분들에게 붙이는 건데 그 변화되던 시기에 수급자분들 이야기 하셨던 거나 문제가 됐거나 그런경우 있나요?

A: 일단 대번에 돈이 주니까 바로 찾아오시죠. 그러면 설명을 드리죠. 아직은 어르신 정정하셔서 일을 다니시는 것을 안다. 그러면 일을 안다닌다고 그래요. 그럼 저희가 낮에도 전화드리고 며칠을 전화드렸는데 어디 계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또 순박하신 분들이라서 본인들도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하시고

Q: 근데 대개 일을 하러 다른 지역으로 멀리 다니시는 건 아니죠?

A: 아니예요.

Q: 다 이 근처에서 하시는 건가요?

A: 네....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또 쉽게 들어와요. 품파신다.. 아니면 저희가 난방유형 때문에 조사를 계속 하는데 낮에는 안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낮에 일을 하니까 낮에 전화를 하면 계속 안 계시는게 의심이 돼서 어르신 왜 안계세요 그러면 어제 일 좀 갔다 오느냐고 그랬다고..아 그러세요(웃음).이런식... 그 때 일 다니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저쪽 황성군에서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한거다 그런데 만약에 어르신께서 일거리가 없어서 동절기가 되서 없어지시고 그러면 일을 일률적으로 매길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Q: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 여기서 나름대로 조정을 해주셔야겠네요.

A: 그렇죠 . 동절기나 하절기....

Q: 예를 들어서 5일 정도를 적용을 한다 그러면 5일 적용하는 부분을 아까 2만원 3만원 얘기하면 10만원 15만원으로 잡힐 수도 있는거잖아요.

A: 그렇죠.

Q: 그럼 실제 그 분들한테는 꽤 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든지 연령은 65세 70세 사이인데 혼자계신다고 하면 급여의 상당 부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A: 5일까지는 저희가 못 잡고요. 너무 큰부분이... 어르신혼자 완액을 다 받으셔도 한 30만원 정도인데 반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많이는 못 잡고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저 한 다들 보통 잡으시는게 5만원에서 10만원 범위 내에서....정말 그야말로 용돈 받아 쓴다는 정도..

Q: 3-4일 정도 가끔씩 하되, 일이 있을 때는 그 정도 하고, 동절기때는 좀 조정하시겠네요. 지금 그 이야기가 놓여준 지역은 특히 더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근로능력에 관한 정의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거예요. 왜냐면 한쪽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이렇게 하면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 일하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쪽에서는 65세 이상 넘어가면 다른 거 전혀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근로무능력자로 판정을 해버리고 이후에 소득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령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든지, 군에서 하시는 것처럼, 연령대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 생각하신거 있으세요?

A: 65세 이상에서 70세까지는 노인이 아니신거 같아요. 충분히 활동하시고 ... 연령을 조금 상향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아요. 너무 65세 이상을 무능력자로 판단하는 것은 물의가 있는 거 같아요. 충분히 다 일들 하고 있고 이런거 알고 있고 이런데...

Q: 그러면 이제 그렇게 판정했을 때에는, 그 이후에는 근로무능력자가 아니면 65세에서 70되는 분들.. 만약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진단서라든지 아니면, 현재 일을 하고 계신거로 해가지고 그런 반영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거의 지금 무능력자로 돼서 2-3일 , 3-4일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건부과에서는 제외는 되되, 현재 일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변경이 되는건가요?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A: 저.. 다시한번...

Q: 연령기준을 상향하면, 예를 들어서, 65세에서 70세 같은 분들도 진단서가 없으면 근로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조건 부과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 이분들이 진단서 이런 부분을 안하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현재 3-4일 일하시는 것으로 어차피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현재 취업 내지는 취업은 아니지만 현재 일하고 계신 것으로 해서 조건부과제외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되는 건가요?

A: 그렇게 되는 거겠죠.(하하)

Q: 그러면.. 지금 여기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A: 지금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분이 10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황성군 거기 센터에서 쓰시는 분들은 황성군 전체로 해서 한 100명정도 쓰고 계세요.

Q: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A: 예. 둔내지역. 그리고 인근 안양이라든가 그런 지역으로

Q: 혹시 수급자분들 중에....?

A: 우리 대상은 없어요.

Q: 대상은 안되는데..

A: 오... 그런 분 있어요. 한 명 하고 싶으시다.

Q: 그 쪽 해보겠다 하고 싶어 하신다 그런 분들 있으세요?

A: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일을 다들 하는데 왜 내가 대상이 안되냐. 원래 대상으로는

수급권 보호 받고 계시는 분들은 제외대상으로 되어있다. 아니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영세민이면,,쉽게 말해 영세민이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요

Q: 그렇죠.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하고 기초쪽에 대상하고 연령이나 이런 거 가지고 안 맞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분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 사업해서 20만원 받는다면 그만큼 급여에서 줄어든다...

A: 얘기도 드렸어요. 만약에 제외대상이 아니어서 일을 하시게 되면 한 달에 20만원 받고 있는 거 다 파악이 될텐데 그만큼 제외를 하고 드릴 수 있다.

Q: 그 때 뭐라고 하세요?

A: 그러면 일도 하지 말고 한 달에 얼마준다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데 돈을 벌어보겠다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느냐.....

Q: 그러면 이제 취지는 그런거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사군요. 예.. 그 혹시 근로능력이나 조건부과에 관한 판정은 군에서 통지가 되는데 나중에 수급자분들이 책정된 것 보고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셨나요? 물론 조건부과제외로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 문제제기를 할 이유가 별로 없겠지만, 많지는 않았겠지만 지금까지 조건부과로 되었으신 분들 중에서 혹시 신규책정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러신 분이 있나요?

A: 그때 당시에 건강상태에서 초기..물어봤는데 이 정도 아프다. 한분은 관절염같은.. 허리도 안좋으시네요. 근데 진단서 제출하라는 얘기는 했는데 특별히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신거예요. 그래서 진단서를 끊어 오시지도 않으시고.. 어느 정도 일을 하시니까 저러시겠지... 어느 정도 걸어다니실만 하고 일 하실만 하니까 그러시겠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하니까 식당에 가서 며칠 일하시고 그러셨네요. 그정도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단을 안 받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조건부과 대상자가 돼서 내려갔죠. 그래서 분

인도 통지를 받고 와서 상담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이런 일들을 하시게 될꺼다 얘길 했더니, 막상 조건부과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해야된 다니까 아파서 실제로 이렇게는 매일 못나온다 이렇게 되는거예요.

Q: 그러니까 근로유지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일주일 내내 나와야 되니까 못 한다..

A: 네..못한다...급여도 작잖아요. 한 달에 40만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Q: 그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A: 그렇게 일을 못하신다 하시면 조건부과에 대한 불이행으로 수급권이 중지가 되 실꺼다 이야기 했더니 막 생각해보시더니 그 외에 받으시는게 없으시잖아요. 만약에 일을 안하게 되면 그냥 이야기 하다가 조건을 그냥 포기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겠다고 ... 어짜피 나가서 품과는게 여기서 근로유지형 하는 거보다 나으시니깐. 아무래도 생각을 하셨던 거 같아요. 예전에 식당일 하신걸 생각하신 거 같아요.

Q: 그 분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네요 정말.

A: 그렇죠. 생각해보고 이런 저런거 따져보니깐 그분은 수급쪽을 포기를 하신거고,

Q: 그러면 그분은 수급쪽을 포기를 하신거고... 혹시 인제 그런 분이 나중에 어디선가에서 진단서를 끊어오셨어요. 조건 부과로 어쨌든 내려왔는데 처음에는 그런거 계산 안하고 했다가 바로 진단서를 끊어오면 바로 군으로 올려서 바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최소한 일정기간동안 참여를 해야 한다던가 참여를 안 하면 불이행으로 갔다가 다시 진단서를 첨부해서 변경을 하거나 그런 규정은 어떻게 되었죠?

A: 일단 진단서를 끊어오면은 아까처럼 6개월 뒤 이렇게 끊어왔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거죠.

Q: 그러면 어쨌든 초기상담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안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조건 부과가 된 이후에 본인이 이게 싫으니까 어딘가에서 실제 아플 수도 있지만 진단서를 끊어왔다 그러면 바로 변경 절차에 들어가는건가요?

A: 일단 얘기는 하겠죠. 왜 처음에 얘기하실 때 말 안 하셨냐. 그러면 그때는 뭐 아픈 거 그런 거 뭐 구지 얘기 안했다. 실제로는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반영해서 그렇게 해야죠.

Q: 그럼 어쨌든 진단서 한 장이면 그냥 해결이 되는거네요.

A: 그리고 그대신 그 다음부터는 치료를 다 받으셔야되는 의료급여되기때문에 급여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의무가 있으신거다. 치료 꾸준히 받으시고 만약에...진단서는 매년에 갱신을 하셔야 되는거고 진단서를 미제출시는 다시 치료 부분에 대해서 안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다시 조건부과를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죠.

Q: 그게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의료급여 이야기 하셨는데 애를 들어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수급자가 되고 조건부과에서 제외됐다면 당연히 열심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의료급여로 치료를 받겠죠. 근데 만약에 그 진단서가 약간 신뢰할 수 없다. 그럼 그 분이 어쨌든 선생님 말씀을 듣고 치료를 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사실상 불필요하게 의료 급여 혜택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A: 허...참...치료수급자유형인데...(하하) 그..뭐..그렇게라도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해지시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자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취업되실수도 있고..그러니까 불필요할 정도면 진단서에 문제가 궁극적으로 있었겠죠.

Q: 네.... 결국은 그게 진단서의 문제...그런 케이스들이 많다면 진단서 때문에 의료급여비용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진단서 관리랑 관련된건데요. 지금 선생님이 관리하시는 수급 가구가 120가우고, 인원으로 하면 어느정도 되세요?

A: 214명정도..

Q: 그러면 그 중에서 근로 무능력자가 연령이나 장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로 무능력자로 배제되는 분들 말고, 연령도 그 범위안에 들어오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진단서로 인해서 무능력이나 조건 부과 제외나 이렇게 지금, 진단서를 내고 계신 분이 어느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유하고 계신 진단서겠죠 그게?

A: 인원으로보면.. 열 몇 명 정도...한 20명 안 쪽인거 같아요.

Q: 그러면 혹시 이백몇십명 중에서, 노인 장애인 그렇게 해서 진단서 내실 필요가 없는 수급자분들 대략 제외하면 그 연령대에 들어오고 장애도 없고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대략 정확한 숫자 아니더라도...능력자로 볼 수 있는...

A: 실제로 여기 농사짓는데 수급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60명...

Q: 말하자면 그 분들은 진단서를 내면 빠질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한 60명 중에서 진단서로 빠져 나가신 분이 열 몇 명정도...한 20% 족히 되시는 거네요. 여기는 수급가구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진단서 열 몇 명 관리하시는 거는 선생님 그냥 나름대로 치료기간이 있잖아요. 치료기간 지나면 제대로 치료 받아셨는지, 상태가 좋아지셨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다시 진단서 계속 갱신해야 유지되잖아요? 그럼 그거 관리는 따로 하세요?

A: 대장에 언제 제출..기간 이렇게 해놓고요. 때되면은 오래 받으셨던 분들은 진단서를 그때되면 끊어가지고 오세요 반복해서.

Q: 아... 선생님이 말씀 안하셔도

A: 예, 알아서...(하하) 그런 분들도 있고. 그게 처음 되셔서 적응이 안되신 분들은 제출요구 공문도 보내고, 아니면 모..미제출시에는 생계급여 정지될수 있다.

Q: 그러면 어쨌든 대장에 관리를 하시니까 진단서 관련해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을 놓치시거나 그런 것은 없으시겠네요.

A: 어휴... 몇 개월 차이는 나죠. 그래도...

Q: 간혹가다 빠지는 경우들...

A: 그렇죠.

Q: 갱신하는 시점에서 특별히 확인하시거나 치료 상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하세요? 구두로 하시나요, 아니면 해당의료기관에.....

A: 전화는 못해보고요. 진단서 상으로 보고.. 주로 끊어 오시는게 정신쪽으로 정신분열이라든가 장애등록은 안 된 정신분열 아니면 간질 등의 심각한 질환들이 주로 많으시고.. 그건 거의 1년간의 치료를 요함 이렇게 나오는데 그 외의 질환 경미해보이는 것들...그런것들은.

Q: 선생님이 말하시는 경미한게 주로 뭐죠?

A: 척추 수술 후 척추 디스크 장애나 질환이라든가..또 뭐가 있나요..... 만성질환에 포함되는데 6개월짜리로 끊어오시는... 당뇨, 고혈압 막 이런거 나이가 한 50대 60대 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시는 분들, 그런분들 진단서 보고..... 진단서를 100% 믿을수는 없는데 일단 진단서는 6개월 끊어오시면 반영은 하되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하는 추측을 해 보고...

Q: 선생님 그 진단서를 어느 정도 신뢰하세요? 이거는 다른 분들도 공통적으로 물어보는건데 100점, 100%중에 몇 프로... 10장 정도 들어오면 몇 장 진짜 신뢰한다 그런거...

A: 한..60%정도.. 저도 제차로 사고를 내봤는데 진단내는게,, 쉽게내더라고요. 의사 진단이라든가 하는게 경미하게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데 보험 문제에서 그랬었는지 말 조금만 하다보면 몇주 쭉나오는고 그러는데 진단서라는게...

Q: 저도 경험이 있는데 몇 주는 나오지만 여기서 기준이 되는 3개월, 6개월은 사실은 12주, 24주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운 수준인데 그래도 한 60% 정도 ... 그러면 나머지 40%는 말씀을 잘해서 진단서를 끊거나 그동안 다니시던 병원에서 기간을 좀 그렇게 해서 끊어오시거나 그런식으로 보시는건데, 실제로 그러면 진단서를 어쨌든 끊어서 제출하면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모든 것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근로 활동을 하시는 분 실제로 많이 보셨을 거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품팔고 이런 거 이외에도 그런 것들 이외에 또 근로활동하는거 확인한 적 있으신지?

A: 어..실제로 두 부부신데 다 진단서를 제출하셨어요.

Q: 아,, 두 분 다...

A: 예. 둘 다. 아주머니는 간질이였고 아저씨는 심장판막수술 이후에 인공심장 부착하고 계신데 진단서로 몇 년 나오시더라고요. 하니까 ... 근데 실제 일을 하고 계세요. 공업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분한테 소득신고 받아요. 엄연히 일을 하고 계신거니까. 어차피 근로무능력자이긴 하지만 그 진단으로 인해서도, 취업을 하신거잖아요. 취업이든 임시고용이시든...그렇게 젊은...아까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없는데 젊은 분들은 진단을 내시고 일을 하시는거 보면 소득 신고서를 같이 제출해가지고 매년 확인조사할 때 서류로 제출할 때 보내거든요. 소득신고를 보이시는 분은 받고

Q: 진단서나 질환이 있어서 내시더라도 그쪽 지역에서 명확하게 일 하시거나 하면 받으시고... 그러면 그 분은 근로무능력자.. 연령은 아니지만 진단서도 내고 근로무능력 상태라고 하더라도 본인도 일을 하고 명확한 부분을 잡으신다는거죠.

A: 그런데 치료를 한 달에 한 번만 하시면 되지 일은 또 하시거든요. 무리한 일을 못하실 뿐이지..

Q: 본인이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거네요.

A: 예. 그 분도 인정하시고 그렇게 된 경우는 저희도 문제가 없고 그 분도 인정하고 그 외에 부분만 생계비를 수령하시고...

Q: 그럼 다른 부분은 어떠세요? 선생님 정말 우연찮게 발견하시거나 그래서 불러다가 진단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이거 다시 철회해서 근로능력자로 다시 조건부과하거나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A: 그런 경험 있었어요. 진단서를 제출하셨는데 분명히 제 앞에서는 일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분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그것만으로는 살기 힘들어서 일을 했다 그래서 바로 반영을 했죠.

Q: 그 상태에서 그 분은 바로 수용을 하세요?

A: 아..... 힘들었어요. 얘기하는데.. 일을.. 아픈데 이정도가지고 살기 힘들어서 버는 건데 소득신고하라고 하면 그러면 일을 차라리 안하는게 낫겠다고...치료받는데 열중하시고 건강해지시면 일을 하던가 하tu야고 만약에 저희쪽에서 주변에 얘기가 들어오면 저희는 반영할 수밖에 없다. 젊은 분이면 반영을 했던것 같아요.....

Q: 그 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쪽 일을 하셨나요? 아니면 진단서를 다시 어떻게 내시거나 일을 그만 두시거나.

A: 정기적으로 일 하진 않으셔서 하다가 또 그만 두셨더라고요. 그만 두셨다길래 오셔서 고용주한테 일 안한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면 생계비 다시 나갈거다 해서 반영이 되셨죠.

Q: 그러면 그때 진단서도 다시 또...

A: 아니 그게 유효기간이 있다 보니까...

Q: 아.. 기간내에 .. 아 ...에...어쨌든 10명 중에 6명 정도 신뢰하신다고 보셨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으신 편이에요.(하하하) 도시지역은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 제가 갔던 지역 같은 경우는 ... 더 그러신 거 같아요. 진단서 혹시 받으신 다음에 약간 좀 의심가거나 이 분 상황과 관련해서 실제 병원이나 발급하신 의사에게 문의하셨던 경험있으세요?

A: 아뇨

Q: 없으세요?

A: 네

Q: 그럼 진단서 자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A: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우울증으로 진단서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정도가 심해서 과거에 자살을 했다거나 그러면 우울증으로 계속 갇히는데 이거 진짜 우울증인지... 약을 드시면 괜찮아지시면 일 할 수 있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거나 그래본적은 없는거 같아요.

Q: 특별히 어쨌든 진단서 발급하신 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사라고 하면 그 진단에 대한 권위나 그런 것 때문에 쉽게 그것에 대해 물어보거나 하기 어려워져서 물어보고 싶은데 안하신 경우는 없으세요?

A: 그런 경우는 초기 때, 사회복지분들이 초기때는 많이들 물어보고 싶어하는데, 이것도 점점 만성화되는거 같아요. 그냥 인정해버리자 이렇게 해서 그담부터 별로 문제제기 하지 않는데, 처음에는 1년간 무리한 운동을 할 수 없음. 근로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함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게 과연 진짜 그럴까? 이 분들은 일을 하시는데 무슨 기준으로 이런 말을 썼을까 의문은 가졌는데 전화는 해본적은 없는거 같아요.

Q: 올해부터 어쨌든 의원급에서 해온 거는 가능하면 인정 안해주는 것으로 군에서 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대부분 요 주변의 의원에서 끌어오신건가요?

A: 그때도 전 잘 반영 안 했어요.

Q: 아.... 예전에도 잘 반영안하신거예요? 의원급하고 2차기관하고 종합병원 보셨을 때 확실히 위로 갈수록 진단서에 대한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나요?

A: 전문의가 매기는 것은 아무래도 의원급보다는 ...아..그 일례로 한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약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지적 능력이 떨어져요. 지적 능력이 낮으시다는 느낌을 받아서 장애등록을 하실 것을 권유를 했어요. 그럼 이제 조건부과 제외가 되는데, 그..주변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고 조건부과 해봤자 도로 쓰레기 줍다가 차오는거 모르고 막 가는데 그러다 사고나면 큰일난다고 근데 저희도 뭔가 진단을 받아줘야지 조건부과 제외를 하던가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주변의 말로는 힘들다. 가다가도 도로에 뛰어들고 그정도로 인지 능력이 없다고,, 이런분을 일을 시키면 안 될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단을 일단 요구를 했죠. 가족들한테... 동생분이 인근에 살았어요. 끌어가지고 오시라... 모시고 농촌에 3차 종합병원에 갔어요. 그 분 처음부터 그러진 않으셨데요. 근데 뇌졸중같은.. 비슷하게 온 적이 있데요. 밖에서 주무셨다가...술을 먹고 밖에서 그때부터 저렇게 되셨다고..그래서 인제.. 아 그럼 장애진단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진단을 내서까지 끌어서 갔는데, 그쪽에서는 다 뭐 해보고 뭐 코드에 안 맞으시는거야. 안 된다고 보내신거예요. 그래서 가족하고 오신거야 ... 안된다고 병원에서 안된다고 그랬다고. 그럼 저도 조건부과 해야된다고 말로만은 할 수 없다. 아프시다고 하는데 저희쪽에서는 뭔가 준비서류가 있어야 해드리지 않냐, 그러면은 가까운 의원에 가서 진단서를 ... 내가 그랬어요. 장애등록이 안되면 의원에 가서 진단서라도 끌어 오시라 장애 등록이 안될 수 있으면 진단서라도 끌어오시라 그랬더니 의원에 가신거예요. 그래서 끌어가지고 오셨는데 뇌졸중으로 끌어오신거예요. 그때 와.....

Q: (하하하) 신뢰가...

A: 아니구나...

Q: 그냥 말씀하신거 듣고 그렇게 써주셨겠죠.

A: 그렇죠. 얘기하는거나 그런거 보고 써주셨겠죠...

Q: 그 지금 거기 기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 읍.면.동에서 사실 확인서 해가지고 군에서 판단하도록 올리는 절차들도 있잖아요.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를 하시지는 않고 이 사람 아프고 하니까 진단서쪽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A: 의료급여 2종 상태였는데 어짜피 병원도 다녀야 하니까 1종으로 변경을 원하셨어요. 진단서라도 있어야지 사실 전환 증명같은거....

Q: 아 그거가지고....조건부과 제외는 되도....진단서관련해서 수급자들이 불만을 가지거나 그런 것은 혹시 없나요? 예를 들면 비용부담이나...

A: 진단서는 의료급여되면, 진단서 끊어오시는건 돈은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Q: 기존 수급자 같은 경우에, 신규는 본인이..

A: 아..신규는...그렇죠. 본인이 돈 없다고. 당장 먹고 살 돈 만원도 없어서 신청을 하는데 진단서 이만원짜리 어떻게 끊냐 ... 실제로 돈이 있을 때는 돈도 쥐가면서 끊어오라고 한 적 있어요. 자비로 해서...하도 강압적으로 나오셔서.. 그럼 제가 돈 줄테니까 끊어가지고 오시라고...

Q: 그럼 계속 진단서를 갱신하시는 분들은 현재 수급권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면 진단서 비용 청구를 안 하나요? 병원에서...

A: 진단서 비용을 청구해도 군청으로 할꺼예요. 아마. 의료급여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Q: 아까 그 진단서 관리에 대한 것은 진단서는 치료기간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관리를 하시면 되잖아요. 상담 중에 조건부과제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유들 그것 때문에 조건부과 제외된 경우들, 진단서는 없는데.. 그런 경우는 상황이나 이런 것이 변경됐는지를 사실 계속 관리를 하셔야 적절한 시점에서 그것을 조건부과를 다시 하던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바꾸던가 하시는데... 진단서랑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조건부과에서 제외된 분들의 관리는 따로 또 어떻게 하시는지? 가구여건, 예를들면 뭐.. 환경적응 이렇게 해가지고 된 분들은 기간이 있는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 계속 조건부과제외가 되지만 선생님이 신경 못 쓰고 계시는 순간에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 혹시 어떠신지...?

A: 학교 졸업하고 난 후에도 졸업 후에도 3개월동안 환경적응기간이잖아요. 대학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진학을 안하는 경우... 3개월 이후에 전화해보면 집에서 다 놀고 있는거예요. 그 학생을 데려다가 여기서 근로유지형을 시키자니, 쓰레기 줍고 이런 일이니까, 저희 쪽은 아주머니들이나..솔직히 그런 아주머니 450대 분들이 많이 하는 일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취업을 하도록 권유를 해요. 차라리 취업을 하거나 타지에 가서 일을 하시는 쪽으로 하셔라. 아니면 그대로 여기 있으면 우리는 조건 부과를 해야 되고 그러면 세대 전체가 중지가 될 수도 있다. 그게 좀 그런거 같아요. 가족을 오히려 분리시키는 거 같아요. 여기서 취업을 해서 수용을 같이 해가면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식만은 떼놔서 아예 부양 의무자 전환시키는거죠.

Q: 그럼 아예 주민등록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A: 그렇게 할 수도 있을수 있겠죠. 아니면 취업을 해서아니면 수급권 자체를 포기할 준비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Q: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 노동부쪽 직업훈련이나 그런 쪽으로 연계하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는거죠?

A: 몇 번 의뢰를 한 적은 있는데 성공한 적은 없더라고요. 취업성공..

Q: 다니기는 해요? 여기서 원주까지.. 저도 오면서 보니까 여기서 원주까지 시간이 꽤

A: 차가 없으면 일단 버스타고 다녀야 하니까. 제가 있을 때는 안 해봤는데 그 전에 있었던 담당자분은 한 명 했었는데 교육받다가 받다가 지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수료를 못하고 딴 데 취업을 해서....

Q: 취업했어요? 다행히.

A: 알바나 이런 식으로 취업했겠죠.

Q: 그럼 불이행으로 되지는 않고 아예 그냥 취업으로.. 그것 말고 조건부과 제외 여러가지 유형 중에 선생님이 놓치기 쉬운거, 아니면 관리하기 어려운거, 예를 들면 부양, 보호....

A: 가사...간병과 양육으로 인해서....

Q: 뭐 그런 것들 이라든가 환경적응...아까 그...학생...

A: 교도소 출소...3개월이라던가... 그 간병이나 양육으로 인해서 뭐 그것 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간병하고 있는지 애가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양육으로 인해서 그런경우는 애가 학교들어가거나.....

Q: 가구 구성으로만 보시는거죠?

A: 그렇죠.

Q: 실제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제외가 된 상태에서 일 하고 있는지는 실제 확인하기 좀 어렵고... 여기는 재소자 환경적응사례는 없나요?

A: 한...제가 오고 나서는 한 분 오셨어요. 3개월 보호하고 3개월 이후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일일 고용...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응기간 이후에 취업을 하시면 수급권 제외 되실거다. 미취업시에

는 이쪽에 아예 오셨을 때 얘기 했어요. 미취업시에는 조건부과 할것이다. 그러니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Q: 아 그래서 그 분은 그냥 일 하는 것으로...

A: 소득으로...

Q: 근로 능력... 선생님이 보시면 있다고 보이는데 계속 떼쓰거나 아니면 모..아까 말씀하셨던 진단서 가지고 오는 분들 보거나 그러면 조금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까 복지병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지...

A: 그게 참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하시는 거 뻔히 얘기도 들었고 하는데 진단으로 내면 조건부과제외하고 그만큼 수급비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어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데 심증으로는 분명히 저사람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진단을 최대한 상위기관에서 받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래도 못하면 그거 진단이라도 반영을 해주긴 하는데 되도록 그런 수급자는 책정이 안되도록...

Q: 그럼 보통은 초기에 좀 더 엄격하게 보시는거죠? 아까 말씀하셨던것처럼 그런 분들이 수급자가 되면, 급여의 맛을 보거나 계속 의존하는 것들 때문에 아예 초기에 다른 거보다 강하게 보신다는거 같은데... 그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건부과제외의 구체적인 사유나 이런 것들은 수급자 본인들은 다 모르고 있는거고 선생님은 위에서 분류해가주구 오는데로 관리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조건부 수급자 3명이라고 하셨는데....아까 말씀하셨던 좀 구체적으로... 3분 참여하시는 유형하고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에 대한거... 자활원래 시장진입형으로 가셔야 되는데....

A: 지금 참여하시는 3분은 근로유지형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쪽에서 환경정리 사업으로 근로하고 계신 분들이고 이런데는 사실 40-50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Q: 아까 말씀하셨던 한 분은 원래는?

A: 원래는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Q: 그것도 선생님이 다 기준점수를..그것으로 했을 때 그 분은 거기에 해당이 되시는 건가요? 그건 선생님이 하시는 건가요?

A: 아니요..

Q: 아. 그것도 그냥 군에서

A: 시장진입형으로 유형이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이쪽에 와서 이런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아..처음에 자활후견기관쪽으로 의뢰가 됐는데 그쪽 센터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길..출퇴근 문제도 있고 힘드니까 우리 쪽에서 수용을 하시라. 유형은 시장진입형으로 그래서 공공기관 관리라든가 행정센터에서 관리를 하시라고 수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안내를 드렸어요. 이제 그런 일을 하시게 될 거다. 급여는 이 정도고 무슨 일을 하시게 될 거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참여를 못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수급권을 포기하셨어요.

Q: 지금 그러면 어쨌든 자활프로그램 선정하는 수급자에 대해서,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직접 여기서 관여하지는 않고 군에서 조건부과 지정되면서 아예 그 분류가 다 돼서 관리가 되시는건가요?

A: 연초에..그 신규는 그렇구요. 연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치료가 끝났다면가 학교를 졸업했다던가...

Q: 새롭게 조건부과 지정하는....

A: 그런 건 연초에 자활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제가 선정하죠.

Q: 그럼 그 부분에서 아까 좀 관리가 어렵다고 하셨던 조건부과제외자들의 각종 사유에 대한 체크나 관리를 또 하셔야 되는거네요.

A: 그렇죠. 알고 있어야 되는거죠. 이걸 왜 제외고, 진단서는 뭐..어떻고..

Q: 그거 별도로 따로 신경써서 관리하시나요?

A: 전 대상에다가 사유를 다 적어놔요. 노인분들 빼고 젊은 세대는 양육, 간병.....

Q: 그 외에 제외되어 있는지 나름대로 써 놓으시고.....

A: 아니면 다 기록하기가 힘드니까...

Q: 거기에 기간이 없는거는 그냥 일제조사나 확인하실 때 그냥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보시는 가시는거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 상태에서 제외됐다가 조건 부과 되거나 자활프로그램 다시 해야 되는 경우는 선생님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다시 불러서 자활 상담쪽을 다시 하시는거죠.

A: 그렇죠.

Q: 그래서 합의가 되는 쪽으로... 하시는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 좀 미비한거 있으면 고려가 많이 되시는거고요. 특별하게 이쪽에 조건부수급자가 많지 않고 다 근로유지형으로 하고 계시니까 프로그램에 대한건 특별히 그런건 없을 것 같고 지금 세분은 조건이행을 다 잘 하시고 계시는거고요?

A: 지금은 사업비가 종결되서 다 종료가 됐고요. 그 전까지는 뭐 열심히 참여하셨죠.

Q: 그러면 사업비가 다 소진돼서 종료되면 지정만 되었으신 건가요?

A: 인제 조건부수급자로 지정만 되고..

Q: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만 되고 근로 유지형 부분을 이행하고 계신 것으로 인정이 되는거죠?

A: 그렇죠. 사업비가 없으면 책임은 행정기관에 있는거니까요.

Q: 그러면 실질적으로 출근하고 하신 거는 전혀 아니시고 ?

A: 네.. 사업비 종결이 됐으니까.

Q: 사업비 관련된 거는 군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면 단위로 해서 몇 명 그렇게...

A: 배정해서 내려주긴 하는데요. 우리는 좀 일찍 끝나는....

Q: 일찍 끝나는 편인가요? 지금. 그러면 조건이행관계나 그런 것은 선생님이 체크하시는 것은 아니죠?

A: 근로 유지형이요? 제가 체크해요. 근처에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작업일지 다 쓰고

Q: 그럼 근로 유지형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계신거네요? 일을...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이지요.

A: 네 그렇죠.

Q: 센터에서 어차피 하시니까. 다른 지역보니까 그렇게 규모가 크게 하는 경우는 그쪽에서 출결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A: 자활후견기관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근로유지형같이 행정기관으로 배치되면 자활사업대상도 저희가 체크를 하죠.

Q: 지금 조건 불이행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개인급여중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수급중지시키거나 법적으로 문제시 되거나 그랬던 케이스 혹시 담당하신거 있으신가요?

A: 조건 불이행 중에서도요?

Q: 아니면 본인 개인급여 중지라든지 그런 경우...

A: 그런 적 있죠.

Q: 그러면 그 부분만 조금 말씀해주시고 추정소득 관련된 거 몇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조건 불이행 관련해가지고 수급중지 시키시거나 직접, 아니

면 본인 급여 중지 시키시거나 그런 케이스 있으시면 어떤 식으로 잘 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계속 문제가 됐던건지...

A: 수급자로 책정되신 분들이 일을 며칠 나오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을 안 나오시더라고요. 작년부터 하셨었는데 일을 안나오셔가지고 왜 일을 안 나오시냐 ?? 드렸더니 이러면 조건 불이행으로 수급권이 중지된다 그랬더니 그.. 세대에 아저씨도 농사를 지으시고 아주머니도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로 책정을 해 드렸어요. 농사철이라 일이 많아서 못 나오신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러시면 지금 그쪽에는 저희가 탈농업으로 농업소득 산정을 또 하시면...

Q: 그럼 그렇게는 가능하죠? 두 분 다 그냥 농업소득 관련 없는 것으로..

A: 그럼 수급권이 중지될 정도의 소득도... 간당 간당하셨었나봐요. 중지되어야 되는 상황이였어요.. 중지해야된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알겠다고 일 나오시겠다고 하고 계속 일을 안 나오시는거예요. 한 번 불렀어요. 찾아오시라고 애길해서 수급권 중단을 해야될 것 같다. 지금 농사를 지으시면 농사 쪽으로 해서 일을 하시고 이미 농업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못 해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농사라는 것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어떻게 사냐고 해서 크게 역정을 내시고 많이 싸우셨죠. 일을 하셔라 나가서 일을 하셔라 정기적으로 일을 하시랬더니 그건 또 못 하시겠다는거예요. 근로유지형이라서 근로하는 시간이 긴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사정을 봐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시고 나서도, 일 하시겠다고 하고 결국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건불이행으로 정지됐죠.

Q: 아예 그럼 전체가 중지가 되신건가요?

A: 세대 전체가..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지가 되고 의료급여 끊기고 그나마 들어가던것도 안나오니깐 아저씨가 찾아 오시더라고요. 그리고나서 또 싸움이 시작되고 아주머니가 못하셔서, 일을 안하셔서 그렇게 됐다 했더니 또 뭐 한참 얘기 하셨는데.....

Q: 그 분은 결국 어떻게?

A: 조건부과에 대한 것만, 그게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거니깐 얘기를 해드렸죠. 형 평성 얘기도 하고 농사짓고 일도 하시는데 다른 수급 보호 받으시는 분들은 일도 못하시고 해서 중지해야 될 것 같다 했더니 한참 얘기하시더니 수급하시고 돌아가시긴 했는데..

Q: 아... 그래요.. 그 분같은 경우는 처음에 본인만 중지가 아니고 가구 전체가 중지가 된 건가요?

A: 그렇..그럴 경우에는 농업소득 산정을 해서 세대소득인정 초과로 세대 전체를 정지를 했던 경우였는데, 주변에 얘기를 듣기로는 그 아주머니가 실제로는 집에 농사일을 돕는게 아니라 품을 팔러 아예 나가신다고 하시는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신거예요. 농사짓는거면 아침저녁으로 하면 부지런하게 하면 다 하시죠.

Q: 그렇죠. 본인 일....

A: 주 4일인데...

Q: 그래도 다행히 그분은 수급을 하셔서 워낙 농사지으시는 것도 있고 다른 일 하시는게 있으니까 아마 그러신거 같네요. 여기는 추정소득 관련된 거는 아까 어르신들 군에서 하기로 한 거가 추정소득 개념에 유사하긴 한데 그거 외에 따로 추정소득 부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현재 취업자라든지 조건부과 제외자 중에서 추정소득 관련해가지고 문제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추정소득 부과하는것에 대해....

A: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Q: 지금 추정소득 부과하고 계신 케이스가 어느 정도 되세요?

A: 지금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3개월 지났는데 취업도 안하고 이럴 경우는 부과를 해놔야되잖아요. 근로 능력이 있는 아이인데 일은 안하고 있는거고, 조건부과를 해서 중지를 시키자니 일단은 상태를 좀.. 당장 칼같이 준비하기는 어려우니까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을 주자해서 일단 추정소득만 부과해 놓고 조건부과는 안 하고 일단 취업하도록 유도를 하는 기간 동안에 추정소득을 배제해 놓아야 하는데 대번에 생계비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Q: 그때는 부모님이 오시나요?

A: 오시죠. 오셔서 왜 갑자기 줄었냐... 그때는 취업상담으로 들어가서 취업하게 하라 아니면 세대급여 중지되고 이것 받는 것도 올해까지는...몇 개월까지만 해드리고 아니면 중지돼야 될 것 같다고....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Q: 그 때 그 몇 개월 그렇게 선생님이 상황을 고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몇 개월동안은 추정소득 부과하고 지켜본다든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는거죠?

A: 원래 없는거죠. 원래 원칙은 조정기간 끝나면 바로 조건부과 해야되는데..

Q: 조금 상황을 보는 대신에 추정소득을 부과를 했던 케이스 인거죠? 그분같은 경우는 추정소득에 대해서

A: 인지는 하시는데 ...

Q: 더 이상 문제제기는 안하시고....

A: 예....얘기는 안하시는데 돈이 줄으니까 계속 아이를 취업시키거나 그러케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Q: 그런데 여전히 취업 못하고 있나요?

A: 아.. 지금 2월달에 졸업하고 5월 달에 적응기간 끝나잖아요. 6월부터 지금까지 봐주곤 있는데 ...

Q: 아..지금 여전히 추정소득부과하고 있는 상태로?

A: 저희도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야 될게, 대도시같은 경우는 바로 반영을 해서 고

용지원센터로 연계를 하거나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게 여건은 안되면서 칼같이 행정을 적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외에 또 사유들이 가족 여건들이 아프신 분들은 너무 아프시고 그러니까 자식땀에 세대부과 중지시키면 너무 그러니까 봐주긴 하는데 지금 아직 취업을 못하고 그렇게 있어요.

Q: 추정소득 관련해서 여기 지금 보육료 지원 대상자들 많이 있나요?

A: 예... 많지 않으니깐요 대도시보다는...

Q: 혹시 그러면 전업주부 추정소득 부과하는 거 있잖아요.

A: 네. 매겨요.

Q: 그럼 여기 지금 그 대상도 있지 않아요? 분명히 ... 그 분들은 올해 초에 전업주부 추정소득 부과할 때 작년하고 좀 말하자면 층이 달라지거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A: 그렇죠. 그것으로 추정소득으로 층이 달라지는 경우

Q: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용하세요?

A: 아..그거 항의가 많죠. 아줌마들인데... 요즘은 다 하시잖아요. 자기가 몇층 몇층 다 계산까지 다 해서 오시는데, 한명이 남편의 원천징수만으로는 3층 해야되는데, 막상 나온거 보니까 4층이다. 추정소득에 대해서는 일단은 언급은 몰리니까 안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내가 부산에 있을 때는 3층이었는데 왜 4층이 나왔나하면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세대 내 어린아이 외 밑에 둘째 동생 갓난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될 때는 추정소득을 안 매기지만, 왜냐면 양육에 대해서 책임을... 근데 이럴 경우에는 아예 동생도 없고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도 아니고, 한 세대로 살고 있는 경우는 추정소득을 매기게끔 되어있다. 애길했더니 아니 일도 안하는데 무슨 추정소득이나 소득이라는 것은 일을 해야지 발생이 되는 것인데 .. 그러면 일률적으로 얘기하죠. 지침평계밖에는 델 게 없죠. 얘기하고 일률적으로 다 매기고 있다고 가족이 이렇게 전업주

부고 밑에 동생 양육이라든가 할 경우에는 그런게 있다고 감안하셔야 된다고..

Q: 그래도 따지시긴 하는데 수용정도는 어때요? 수급자쪽에서 추정소득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거 하고, 그래도 보육료지원에서 3층에서 4층가고 이런 분들은 그래도 수급자랑은 생활 수준이 차이가 있는 분이잖아요.

A: 수급권자는 당장 내 생계비에서 그만큼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뭐 인제 보육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5층 같은 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높잖아요. 소득 높으신 분들이 다 해당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크게 비교했을때는 수급권이 훨씬 크죠. 추정소득 받아들이는 그 임팩트가 훨씬 크죠 ...

Q: 다른 지역가봐도 좀 그런 거 같더라고요. 좀 이해정도가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거에 비해서... 장시간 계속 해주셨는데 근로능력 판정이나 진단서 관련해서 혹시 좀 그냥 말씀해 주실 거...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라는 거.. 제도적으로.. 복지부에서 좀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있는거 같은데, 선생님 그동안에 분명히 스트레스 받고 하신 거 중에 꽤 큰 비중일텐데 그거 관련해서 좀...어떻게 바뀌면 진단서에 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지겠다라든가...

A: 근로기준 판정에 관한 진단을 내리는 의료기관이 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예 지정기관에 지침규정 마련을 해서, 그 기관에서 받는 진단만...조건부과 제외 할 때는, 일반진단서 구비는 상관없는데, 조건부과 제외할때는 그 진단 기관에서만 한 건 100% 믿을 수 있는 좀 그런.. 우리가 판단을 하기 보다는 의사가 판단을 신뢰성 있는 지정병원이 생겼으면 시, 군, 별로 하나 정도 생긴다면...

Q: 그럼 그 부분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접근성이나 수급자 불편이나 비용부담이나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A: 행정 군에 하나만 생겨도 일단 생계 수급권을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진단에 관한 것은 감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젊은 분이니까. 노인분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황성까지 가서 떼오시라고 하면 무리가 있지만 젊은 분이면

어느 정도 그런 것은 감안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해요.

Q: 어쨌든 선생님은 지자체별로 지정된 곳에서 발급하시면 좋겠다. 그게 신규 수급자든 누구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거죠? 근로능력 판정 자체에 대한 생각은 없으세요? 진단서 자체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거나? 지금 장애 쪽에서 등급 판정할 때 하시는 부분은 아시잖아요. 보통 장애 개념에서 볼 때는 조금 다르잖아요. 지금 장애쪽에서 지금 바꾸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정말 그 기능, 질병이나 치료기관이 아니라 기능이나 정말 근로 능력가지고 판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생각 안 해보셨어요?

A: 그게 뭐가 생겨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진단만으로는 근로능력 판정을 하는 게 좀 아닌 거 같아요. 어떤 식으로 내려야될지 모르겠지만 근로의욕이나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프지만 일할 수 있는, 또 그..약으로 조절된다거나 희망한다거나 하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로능력을 판정해주는 전문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Q: 아까 진단서에 대한 신뢰정도를 한 60정도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0정도는 진단서라는 그늘 아래 숨어있는 분들이라고 선생님 나름 판단 하시는거죠? 진단서에 대한 신뢰정도...

A: 그렇죠.

Q: 예.. 이 정도 하시면 될 거 같고 장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사례도 많이 말씀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